

수출지원사업 매트릭스

구분	운영 기관	사업명	수출 준비								시장 개척							수출 이행						기타	지원자격 (기업규모별)	지원자격 (매출 / 수출 금액별)	
			수출 컨설팅	교육	광고 / 홍보 콘텐츠 제작	통번역	R&D	해외 규격 인증	성능시험 실증	특허 지재권	시장조사	신용조사	현지 바이어 매칭	바이어 상담회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입찰 지원	온라인 쇼핑몰 판로	현지 수출 실무 지원	보증	보험	융자	HS 원산지 관세	물류 (보험/ 운송)				해외 원조 기부
1	KOTRA/중진공	수출바우처	공통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상세자료 참조	상세자료 참조	
2	중진공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공통																				1월		수출 중소		
3	KOTRA/중진공/OKTA	해외지사화	공통														수시								중소중견		
4	KOTRA	수출형 소상공인 육성	초	12월	12월							12월													소상공인		
5	KOTR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초	12월		12월						12월													중소중견	수출<10만불	
6	KOTRA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초 유 성							12월		12월				12월		12월							중소중견		
7	KOTRA	KOTRA 글로벌 ESG+	초 유																				1월/6월				
8	KOTRA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	공통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경기도 소재기업	수출<2천만불	
9	KOTRA	해외시장조사(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초 유								상시		상시				상시										
10	KOTRA / 지자체	무역사절단	초 유										수시												중소중견		
11	중진공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수출플랫폼															5월								중소		
12	중진공	고비즈코리아 글로벌쇼핑몰 입점	유														3월								중소		
13	중진공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전시회	유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중소		
14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유 성																	상시					중소	상세자료 참조	
15	중진공	글로벌조달마케터	유	3월	3월																				중소		
16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유 성														상시								중소		
17	중진공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성	1월	1월	1월									1월										중소	100억 <매출 <1000 억 수출>500만불	
18	기정원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공통					1월																	중소		
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초			1월								1월		1월									소상공인		
2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공통						5월/8월/11월	5월/8월/11월															중소	수출<5천만불	
21	중소기업중앙회	K-BUSINESS DAY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	초 유										10월												수출 중소		
22	한국전산업진흥회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공통			12월								12월											중소중견		
23	무역협회	KITA 수출상담회	초 유										수시												중소중견		
24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공통						상시																신재생에너지 중소중견		
25	조달청	G-PASS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유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나라장터 중소중견		
26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직접입찰 지원	유													상시									나라장터 중소중견, GPASS		
27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유 성	1월	1월						1월		1월												나라장터 중소중견, GPASS		
28	조달청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지원	공통											1월											경쟁입찰유자격 중소, GPASS		
29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수출상담회	유 성		2월								2월												상세자료 참조		
30	조달청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GPPM)	공통																						중소중견 조달기업, 혁신기업		
31	조달청/기정원	혁신제품 조달시장개척단	공통										4월/7월	4월/7월											혁신조달기업		
32	조달청/KOTRA	UN 조달플라자	공통										4월	4월											상세자료 참조		
33	무역협회	FTA 일일방문 컨설팅	초 유																			상시			중소중견		
34	무역협회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초 유																			상시			중소중견		
35	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초 유																			상시			중소중견		
36	무역협회	비관세장벽 컨설팅	초 유	상시																					중소중견		
37	무역협회	무역현장 컨설팅	초 유	상시																					중소중견		
38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공통															상시							상세자료 참조		
39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공통																상시						상세자료 참조		
40	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공통								상시																
41	무역보험공사	TRADE-SURE 컨설팅	초 유	상시																					중소중견	수출<천만불	
4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시장개척지원(조사 및 입찰지원)	초 유									3월/10월					3월/10월								중소중견 고객사		
43	한국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성																			5월			중소중견	400억원<매출 <1조, 수출>20억원	
44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보증	공통															상시							상세자료 참조		
45	한국국제협력단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초 유		6월			6월		6월															업력 10년 이내 기업		
4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	초 유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환경분야 중소중견		
4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초 유												2월										환경기업		
48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유 성			3월		3월	3월	3월				3월											업력 2년 이상 물분야 중소	최근 2년 매출 대비 수출 5% 이상	
49	한국물산업협의회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현지 기술검증	초 유	7월						7월															물분야 법인		
50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입찰 컨설팅 지원사업	초 유	1월								1월			1월		1월								의료보건산업체		
51	보건산업진흥원	Arab Health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공통												10월										의료기기 제조기업		
52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초 유					3월			3월		3월		3월								3월		의료기기 기업		
53	NIPA	SW 산업 글로벌 현지화·마케팅 진출지원	초 유	3월				3월			3월		3월		3월										SW/ICT 중소중견		
5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초 유	2월/7월		2월/7월						2월/7월		2월/7월											중소중견		
55	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공통												1월										기상분야 중소		
56	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초 유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기상분야 중소	수출<100만불	
57	수자원공사	K-테스트베드	초 유					4월/9월		4월/9월																	
58	신용보증기금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공통															상시									
59	대중소협력재단	대·중소기업 동반지출 지원	초 유	2월/5월	2월/5월	2월/5월		2월/5월				2월/5월		2월/5월	2월/5월	2월/5월									상세자료 참조		
60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초								3월														중소 스타트업 기업	매출<100억	

■ 혁신조달기업 우대 사업 초 수출 초보기업 적합 유 수출 유망기업 적합 성 수수료 성장기업 적합 공통 전체 기업 공통 적합 상반기 모집업 상반기/하반기 모집 하반기 모집 상시 모집 수시 모집(모집시 공고)

수출지원사업 매트릭스

구분	모집 시기													
	연중상시	연중수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출준비	수출 컨설팅	[25] G-PASS 기업 지정 [36] 비관세장벽 컨설팅 [37] 무역현장 컨설팅 [41] TRADE-SURE 컨설팅		[8] 경기도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13]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전시회 [17]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27] 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 [50] 보건산업 국제입찰컨설팅	[54] 글로벌 기술사업화(1차)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1차)	[15] 글로벌 조달마케터 [53] SW산업 글로벌마케팅/현지화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2차)		[49] 해외물시장 현지 기술검증 [54] 글로벌 기술사업화(2차)				[1] 수출바우처 [4] 수출형 소상공인 육성 [5]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46] 환경기업 해외벤처등록 지원
	교육	[25] G-PASS 기업 지정		[8] 경기도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17]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27] 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1차) [29] 나라장터엑스포 수출상담회	[15] 글로벌 조달마케터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2차)	[45]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1] 수출바우처 [4] 수출형 소상공인 육성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8] 경기도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13]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전시회 [17]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19]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56] 가상기후산업 수출 지원	[54] 글로벌 기술사업화(1차)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1차)	[48] 혁신형 물기업 지원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2차)		[54] 글로벌 기술사업화(2차)				[1] 수출바우처 [5]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2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46] 환경기업 해외벤처등록 지원
	통번역			[8] 경기도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56] 가상기후산업 수출 지원										[1] 수출바우처 [46] 환경기업 해외벤처등록 지원
	R&D			[18]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R&D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1차)	[53] SW산업 글로벌마케팅/현지화 [48] 혁신형 물기업 지원 [52]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57] K-테스트베드(1차)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2차)	[45]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57] K-테스트베드(2차)			[46] 환경기업 해외벤처등록 지원
	해외규격인증	[24] 신재생설비 해외인증 지원		[8] 경기도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56] 가상기후산업 수출 지원		[48] 혁신형 물기업 지원		[2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2차)			[2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3차)		[2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1차)	[1] 수출바우처 [46] 환경기업 해외벤처등록 지원
	성능 시험/실증			[56] 가상기후산업 수출 지원		[48] 혁신형 물기업 지원	[57] K-테스트베드(1차)	[2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2차)	[45]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49] 해외물시장 현지 기술검증	[2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3차)	[57] K-테스트베드(2차)	[2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1차)	[46] 환경기업 해외벤처등록 지원
	특허/지재권					[52]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60]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46] 환경기업 해외벤처등록 지원
시장개척	시장조사	[9] 해외시장조사(수출24) [25] G-PASS 기업 지정 [40]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8] 경기도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27] 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 [50] 보건산업 국제입찰컨설팅 [56] 가상기후산업 수출 지원	[54] 글로벌 기술사업화(1차)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1차)	[42] 해외시장개척(조사/입찰지원) [53] SW산업 글로벌마케팅/현지화 [52]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2차)		[54] 글로벌 기술사업화(2차)		[42] 해외시장개척(조사/입찰지원)		[1] 수출바우처 [6]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46] 환경기업 해외벤처등록 지원
	신용조사			[8] 경기도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1] 수출바우처
	현지 바이어 매칭	[9] 해외시장조사(수출24) [25] G-PASS 기업 지정		[8] 경기도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13]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전시회 [27] 해외조달 수출전략기업 육성 [56] 가상기후산업 수출 지원	[54] 글로벌 기술사업화(1차)	[53] SW산업 글로벌마케팅/현지화 [52]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31] 혁신조달제품 시가단(1차) [32] UN조달플라자			[31] 혁신조달제품 시가단(2차) [54] 글로벌 기술사업화(2차)				[1] 수출바우처 [4] 수출형 소상공인 육성 [5]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6]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46] 환경기업 해외벤처등록 지원
	바이어 상담회	[25] G-PASS 기업 지정	[10] 무역사절단(KOTRA/지자체) [23] KITA 수출상담회	[8] 경기도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13]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전시회 [50] 보건산업 국제입찰컨설팅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1차) [29] 나라장터엑스포 수출상담회		[31] 혁신조달제품 시가단(1차) [32] UN조달플라자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2차)		[31] 혁신조달제품 시가단(2차)		[30]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21] K-BUSINESS DAY 수출상담회	[1]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 참가	[25] G-PASS 기업 지정		[8] 경기도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13]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전시회 [17]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19]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28]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지원 [55] 가상기후 국제전시회 지원 [56] 가상기후산업 수출 지원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1차)	[53] SW산업 글로벌마케팅/현지화 [48] 혁신형 물기업 지원 [52]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2차)				[51] Arab Health 의료기기 전시		[1] 수출바우처 [2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입찰 지원	[25] G-PASS 기업 지정 [26] 해외조달시장 직접입찰 지원		[50] 보건산업 국제입찰컨설팅	[47] 해외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15] 글로벌 조달마케터 [42] 해외시장개척(조사/입찰지원)						[42] 해외시장개척(조사/입찰지원)		[6]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온라인/홍소평 판로			[13]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전시회 [19]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1차)	[12] 고비즈코리아 글로벌소평물 입점		[11]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수출 플랫폼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2차)						
	현지수출 실무지원	[9] 해외시장조사(수출24) [16] 수출인큐베이터	[3] 해외지사화											[46] 환경기업 해외벤처등록 지원
수출이행	보증	[38] 수출신용보증(무보) [44] 수출금융보증(수출입은행) [58]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신보)												[6]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보험	[39] 단기수출보험(무보)												
	융자	[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43] 히든챔피언 육성						
	HS, 원산지, 관세	[33] FTA 일일방문 컨설팅 [34]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35]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물류 [보험/운송]			[2]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8] 경기도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52]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49] 해외물시장 현지 기술검증				[1] 수출바우처
	해외원조/기부			[7] KOTRA 글로벌 ESG 사업(1차)				[7] KOTRA 글로벌 ESG 사업(2차)						

혁신조달 기업을 위한

주요 수출 지원사업



혁신조달 기업을 위한
주요 수출 지원사업

차 례

(※ ‘★’ 표시된 사업은 혁신조달기업 가점 혹은 우대)

1. 수출바우처★	6
1-1 내수기업★	6
1-2 수출초보기업★	12
1-3 수출유망기업★	19
1-4 수출성장기업★	26
1-5 수출강소기업★	33
1-6 그린 선도기업 육성★	40
1-7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44
1-8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49
1-9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53
1-10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57
2.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일반물류 지원)	61
3. 해외지사화사업	68
4. 수출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72
5.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74
6.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77
7. KOTRA 글로벌 ESG+ 사업	80
8.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84
9. 해외시장조사(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88
10. 무역사절단 외부협력사업	92
11.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수출플랫폼	95
12. 고비즈코리아 글로벌쇼핑몰 입점판매	98
13.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전시회	102
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106
14-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106
14-2 수출기업 글로벌화	111
14-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16

15. 글로벌조달마케터	119
16. 수출인큐베이터	123
17.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127
18.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133
19.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139
2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144
21. K-BUSINESS DAY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	150
2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153
23. KITA 수출상담회	157
24.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159
25. G-PASS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제도★	161
26. 해외조달시장 직접입찰 지원사업	165
27.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168
28.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172
29.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수출상담회	174
30.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GPPM)	178
31. 혁신조달기업 조달시장 개척단	181
32. UN 조달플라자	183
33. FTA 일일방문 컨설팅	186
34.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188
35.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190
36. 비관세장벽 컨설팅	192
37. 무역현장 컨설팅	194
38. 수출신용보증★	196
38-1 선적전★	197
38-2 선적후★	201

38-3 매입★	206
38-4 포괄매입★	210
39.단기수출보험	214
39-1 선적후★	214
39-2 중소중견Plus+★	218
40.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221
41. TRADE-SURE 컨설팅(수출 컨설팅 서비스)	225
42. 해외시장개척지원제도(조사·입찰지원)	228
43.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231
44. 수출금융보증	235
45.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238
46.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241
47.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47
48.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251
49.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현지 기술검증 사업	256
50. 국제입찰 컨설팅 지원사업	259
51. Arab Health 연계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264
52.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	267
53. SW산업 글로벌 현지화 마케팅 진출지원	273
54.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276
55.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280
56.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282
57. K-테스트베드	285
58.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288
59.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291
60.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	296

01 수출바우처*

■ 수출바우처사업은 신청자격에 따라 10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 지원내용이 상이함

주관부처 (운영기관)	유형	신청자격 (매출/수출 요건)	지원내용	쪽
수출 바우처	내수기업★	중소중견 (수출=0)	바우처(국고보조 30백만원까지, 매 출규모별 보조율 50~70%)	6
	수출초보기업★	중소 (수출<10만불)	바우처(국고보조 30백만원까지, 매 출규모별 보조율 50~70%)	12
	수출유망기업★	중소 (10만불<수출<100만불)	바우처(국고보조 50백만원까지, 매 출규모별 보조율 50~70%)	19
	수출성장기업★	중소 (100만불<수출<500만불)	바우처(국고보조 80백만원까지, 매 출규모별 보조율 50~70%)	26
	수출강소기업★	중소 (수출>500만불)	바우처(국고보조 100백만원까지, 매 출규모별 보조율 50~70%)	33
	그린 선도기업 육성★	그린분야 제조/서비스 (매출)5억원 또는 수출)5만불)	바우처(매출, 수출액별 국고보조 15 백만원~70백만원, 보조율 50~70%)	40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중견/중견후보/예비중견 (없음)	바우처(기업유형별 국고보조 60백만 원~100백만원, 보조율 30~50%)	44
	소재·부품·장비 선도 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 (수출)10만불)	바우처(수출액별 국고보조 25백만원 ~42백만원, 보조율 50~70%)	53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소비재 제조 중소중견 (매출)100억원 및 수출)50만불)	바우처(기업유형별 국고보조 27백만 원~39백만원, 보조율 50~70%)	53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중소중견 (매출)1조원)	바우처(기업유형별 국고보조 25백만 원~35백만원)	57

※ '★' 표시된 사업은 선정시 혁신조달기업에 가점 부여

1-1 내수기업★

■ 사업명

· 수출바우처-내수기업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목적

- (공통)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 * 각 사업 별로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임.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 가능함.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되어있음
- 내수기업 사업은 바우처 발급을 위해 신청 가능한 사업 중 하나로,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덧붙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역규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또한 지원

□ 신청자격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각 세부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 신청 단계는 직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3년 연속)은 평가 시 우대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 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인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 수출실적 직접수출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증명서
- (보조율 차등)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억원 미만(70%), 10~50억원 미만(60%), 50억원 이상(50%)
 - ※ 단, 전년도 결산 미완료 기업(개인기업 등)은 전전년도 재무제표 적용
- (내수기업 사업 지원요건)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 (공통_가점 사항) 세부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업체별 총 5점까지 가점부여
 - 가점항목은 현장평가시 별도 요청

구 분	가점항목	점 수
1	도심융합특구기업	1
2	메인비즈기업	1
3	명문장수기업	1
4	벤처인증기업	1
5	사업전환 우수기업	1
6	사회적경제기업	1
7	수위탁 우수기업	1
8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1
9	여성기업	1
10	이노비즈기업	1
11	장애인기업	1
12	지역특구입주기업	1
13	지역혁신 선도(스타)기업	1
14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최근 3년 이내)	1
15	혁신조달기업	1
16	R&D 우수기업	1
17	TPS-R 졸업기업	1
18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3년 연속)	2
19	수출유망중소기업(20년 이후 지정)	2
20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3
21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3
22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3
23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 · K-bio 대상기업 (전년도 혁신바우처 대상기업)	3

■ 지원내용

- (공통)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 서비스 메뉴'에 있는 13개 분야(예: 홍보 · 광고, 온 · 오프라인전시회, 통 · 번역, 해외규격인증, 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총, 7,500여개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음
-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활용 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 개발 등 일부 분야는 단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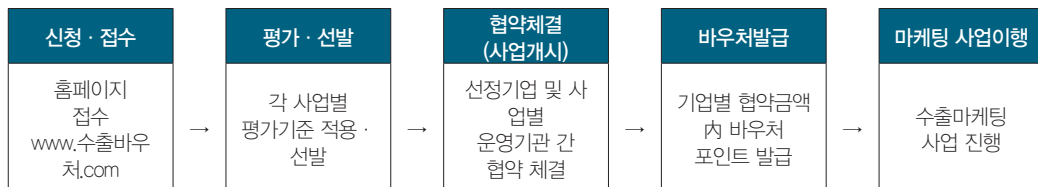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 · 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 · 세무 · 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파트너 · 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 · 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 · 지재권 · 시험	특허 · 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 · 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 · 현지등록 · 환보험	무역 · 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 · 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 · PPL, 신문 · 잡지 홍보/광고, SNS · 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 · 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 · 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 · 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 · 행사 ·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 · 세미나 · 시연회 및 해외전시회 · 행사 · 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 · 세무 ·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 · 세무 · 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 · 세무 · 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 온라인물 페이지, 제품디자인, CI · 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 · 심사 · 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내수기업 사업의 지원 규모(국고 지원한도 및 보조율)은 다음과 같음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보조율 차등 관련하여선 상단의 신청 자격란 참조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국고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

· 진행절차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전년 12월

■ 신청방법

- (공통 1) 수출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함
 - 단, 선정기준과 바우처 발급액이 사업별로 상이함으로, 각 회사들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사업별로 최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 사업별 모집공고는 수출바우처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연중 발표)
- (공통 2)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용 공인인증서 안내는 다음과 같음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연번	구분	서식명	내용
①	필수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내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첨부 및 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③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⑤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⑦		최근 3개년 직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⑧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서 발급
⑨	선택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⑩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발급본)
⑪		전년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직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선정제외

※ 수출바우처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수출실적 추가 요청 가능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①) 참가신청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②~③)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첨부파일 내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④~⑥) 각종 민원증명 서류: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민원증명서류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가능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각종 민원 증명 및 직수출실적증명 서류의 발급과 제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수출실적증명: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또는 스캔본 첨부
 -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中 선택해서 제출 가능하나, 무역통계진흥원 활용 시에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요망
- (⑧)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⑨~⑩)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무역협회 및 KTNET 수출실적은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수집이 불가하여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업로드
 - 최근 3개년 연속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접속 URL

종류	시스템 URL
민원 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195&pdt_seq=1
수출입증명 (직수출증명)	https://minwon.dataline.co.kr/kosme.nice

- 평가절차: “서류심사 → 현장평가” 2단계 평가 실시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 글로벌강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의 경우 쿼터를 두고 선발
 - ※ 단,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지정 유효기업만 해당

■ 문의처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커뮤니티)문의하기’ > “해당 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 안내 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예: 사업자등록 · 재무제표 · 4대보험 · 수출실적증명 발급)
 - ☎ 02-3771-1100, 1155

1-2 수출초보기업*

■ 사업명

· 수출바우처-수출초보기업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목적

·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
도기업 육성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수출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 시 우대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 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수출실적: 직접수출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 (공통 가점사항) 세부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업체별 총 5점까지 가점부여

– 가점항목은 현장평가시 별도 요청(단, 전년도 라-우-벨 직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제출 필요)

구 분	가점항목	점 수
1	도심융합특구기업	1
2	메인비즈기업	1
3	명문장수기업	1
4	벤처인증기업	1
5	사업전환 우수기업	1
6	사회적경제기업	1
7	수위탁 우수기업	1
8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1
9	여성기업	1
10	이노비즈기업	1
11	장애인기업	1
12	지역특구입주기업	1
13	지역혁신 선도(스타)기업	1
14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최근 3년 이내)	1
15	혁신조달기업	1
16	R&D 우수기업	1
17	TIPS-R 졸업기업	1
18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3년 연속)	2
19	수출유망중소기업(20년 이후 지정)	2
20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3
21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3
22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3
23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 · K-bio 대상기업 (전년도 혁신바우처 대상기업)	3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본담금(50~30%)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통합형) 발급 및 사용 방법: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 바우처(가상의 쿠폰)을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 사업기간

– 사업기간: 사업 개시로부터 약 10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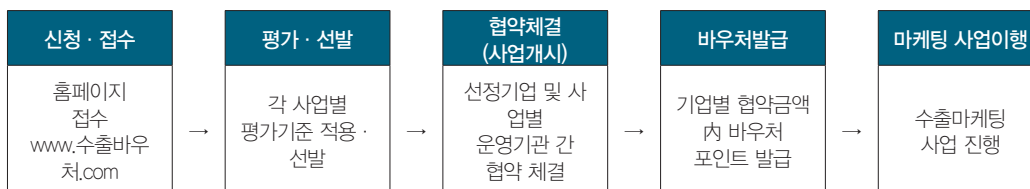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서비스 수행 완료**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완료 인정 기준은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완료 확인요청”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필수

2)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내 접수 완료 필수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 진행절차



· 유의사항

– 중기부, 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 자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예)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 · 신청하는 경우 등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사항

종류	시스템 URL
민원 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d=195&pdt_seq=1
수출입증명 (직수출증명)	https://minwon.dataline.co.kr/kosme,nice

– 전년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전년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중, 당해년 1월 31일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률*이 저조한 경우 감점 또는 선정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에 의거, '사용률 = (바우처 사용액) ÷ (운영기관과의 협약액)'
 - ※ 사용률 58% 미만: 참여금지, 사용률 58% 이상 70% 미만: 선정 심사시 5점 감점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처리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내 수출바우처사업 공통사항

-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바우처의 구성
 -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
 -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를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며,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
 - 수출바우처를 지급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직접 선택해서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김.
 - ※ 연중 한 번 바우처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사업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바우처로 구매가능 서비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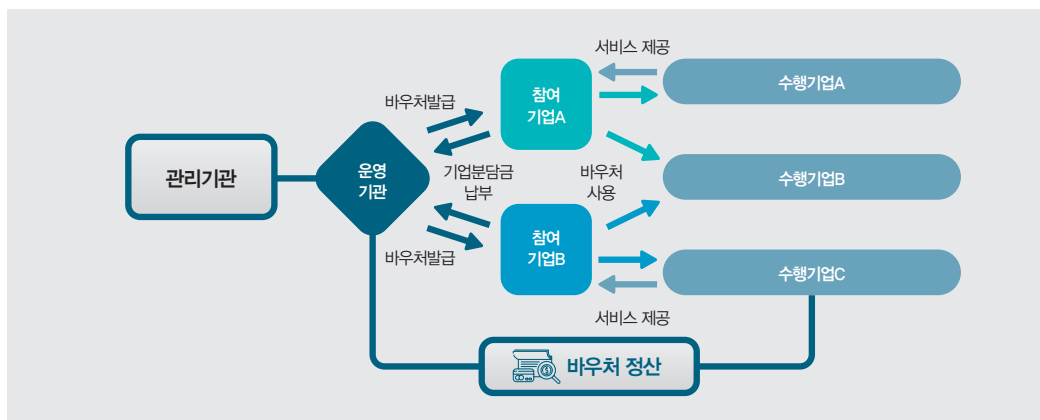
구 분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13개 서비스 분야
1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2	조사/일반 컨설팅
3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4	특허/지재권/시험
5	해외규격인증
6	홍보/광고
7	브랜드개발/관리
8	디자인 개발
9	홍보동영상
10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11	역량강화 교육
12	통번역
13	국제 운송

-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아래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예시)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 서비스 메뉴판(예시)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 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 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 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 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 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정,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 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클레임 해결지 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웹, 해외 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 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 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 규격인증 관련 유사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진행절차

- 수출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수출바우처포털 공지사
항에 올라오는 각 세부사업별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됨. 사업공고는 수출기업의 역량, 업종별
로 구분된 다양한 사업유형이 연중 발표됨.
- 바우처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 신청기간

· 전년 12월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시스템(www.exportvoucher.com)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중기부 물류전용 바우처(일반물류지원 유형)와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기부 수출바우처(통합형) 선정 시 물류전용 바우처 지원 불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신청절차

- [공고] → [신청 · 접수] → [(1차)서류 심사] → [(2차)현장 평가] → [최종선발] → [분담금 납부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 현장평가의 경우, 수출역량(수출실적) 및 업종 특성(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식명	내용
①	필수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내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첨부 및 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③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⑤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⑦		최근 3개년 직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⑧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⑨	선택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⑩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발급본)
⑪		전년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직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선정제외
- ※ 수출바우처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수출실적(최근 3개년) 추가 요청 가능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① 참가신청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②~③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첨부파일 내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④~⑥ 각종 민원증명 서류: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민원증명서류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가능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각종 민원 증명 및 직수출실적증명 서류의 발급과 제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사용자 메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수출실적증명: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또는 스캔본 첨부
-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중 선택해서 제출 가능하나, 무역통계진흥원 활용 시에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요망
- ⑧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⑨~⑩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무역협회 및 KTNET 수출실적은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수집이 불가하여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업로드
- 최근 3개년 연속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접속 URL

종류	시스템 URL
민원 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195&pd_t_seq=1
수출입증명 (직수출증명)	https://minwon.dataline.co.kr/kosme,nice

- 평가절차: “서류심사 → 현장평가” 2단계 평가 실시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 글로벌강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의 경우 쿼터를 두고 선발
 - ※ 단,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지정 유효기업만 해당

■ 문의처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 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 안내 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예: 사업자등록 · 재무제표 · 4대보험 · 수출실적증명 발급)
 - ☎ 02-3771-1100, 1155

1-3 수출유망기업*

□ 사업명

- 수출바우처-수출유망기업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목적

- 내수 · 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 시 우대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 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 수출실적: 직접수출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 (공통 가점사항) 세부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업체별 총 5점까지 가점부여
- 가점항목은 현장평가시 별도 요청(단, 전년도 러-우-벨 직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제출 필요)

구 분	가점항목	점 수
1	도심융합특구기업	1
2	메인비즈기업	1
3	명문장수기업	1
4	벤처인증기업	1
5	사업전환 우수기업	1
6	사회적경제기업	1
7	수위탁 우수기업	1
8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1
9	여성기업	1
10	이노비즈기업	1
11	장애인기업	1
12	지역특구입주기업	1
13	지역혁신 선도(스타)기업	1
14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최근 3년 이내)	1
15	혁신조달기업	1
16	R&D 우수기업	1
17	TIPS-R 졸업기업	1
18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3년 연속)	2
19	수출유망중소기업(20년 이후 지정)	2
20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3
21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3
22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3
23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 · K-bio 대상기업 (전년도 혁신바우처 대상기업)	3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부담금(50~30%)으로 구성
 - ※ 수출바우처(통합형) 발급 및 사용 방법: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 바우처(가상의 쿠폰)을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 사업기간

– 사업기간: 사업 개시로부터 약 10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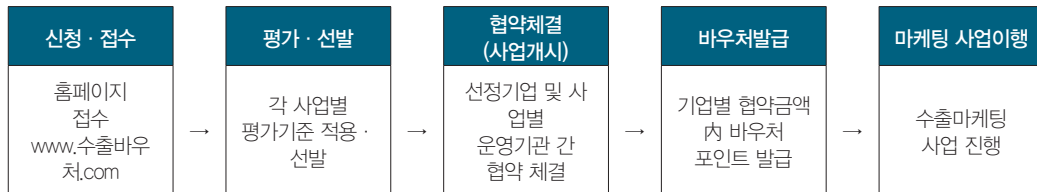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서비스 수행 완료**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완료 인정 기준은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완료 확인요청”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필수

2)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내 접수 완료 필수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 진행절차



· 유의사항

– 중기부, 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예)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 · 신청하는 경우 등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사항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초과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15%초과 ~ 30%이하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15%이하	– 제재 없음

– 전년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전년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중, 당해년 1월 31일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률*이 저조한 경우 감점 또는 선정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에 의거, '사용률 = (바우처 사용액) ÷ (운영기관과의 협약액)'

※ 사용률 58% 미만: 참여금지, 사용률 58% 이상 70% 미만: 선정 심사시 5점 감점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처리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내 수출바우처사업 공통사항

-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바우처의 구성

-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
-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를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며,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
- 수출바우처를 지급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직접 선택해서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김.

※ 연중 한 번 바우처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사업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바우처로 구매가능 서비스 분야

구 분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13개 서비스 분야
1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2	조사/일반 컨설팅
3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4	특허/지재권/시험
5	해외규격인증
6	홍보/광고
7	브랜드개발/관리
8	디자인 개발
9	홍보동영상
10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11	역량강화 교육
12	통번역
13	국제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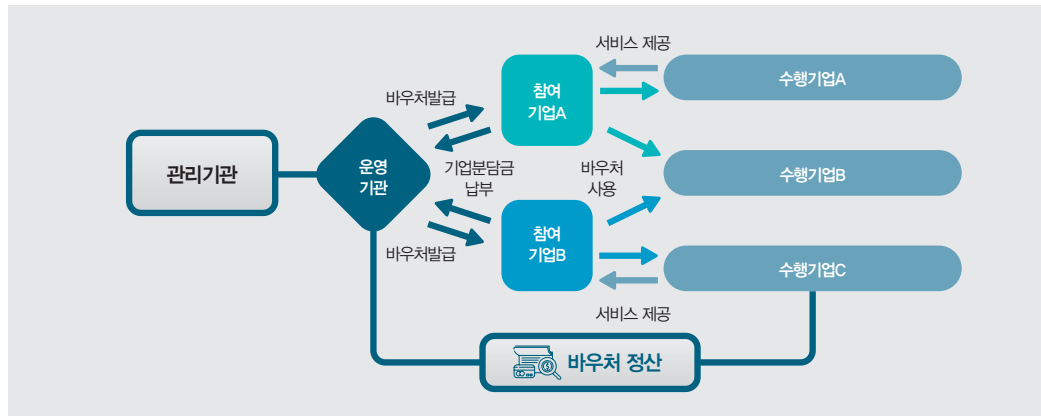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아래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예시)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 서비스 메뉴판(예시)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 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 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 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 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 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 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클레임 해결지 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 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 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 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 규격인증 관련 유사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진행절차

- 수출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수출바우처포털 공지사
항에 올라오는 각 세부사업별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됨. 사업공고는 수출기업의 역량, 업종별
로 구분된 다양한 사업유형이 연중 발표됨.
- 바우처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 신청기간

· 전년 12월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시스템(www.exportvoucher.com)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중기부 물류전용 바우처(일반물류지원 유형)와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기부 수출바우처(통합형) 선정 시 물류전용 바우처 지원 불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신청절차

- [공고] → [신청 · 접수] → [(1차)서류 심사] → [(2차)현장 평가] → [최종선발] → [분담금 납부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 현장평가의 경우, 수출역량(수출실적) 및 업종 특성(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식명	내용
①	필수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내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첨부 및 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③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⑤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⑦		최근 3개년 직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⑧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⑨	선택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⑩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발급본)
⑪		전년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직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선정제외

※ 수출바우처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수출실적(최근 3개년) 추가 요청 가능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①) 참가신청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②~③)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첨부파일 내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④~⑥) 각종 민원증명 서류: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민원증명서류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가능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각종 민원 증명 및 직수출실적증명 서류의 발급과 제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수출실적증명: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또는 스캔본 첨부
-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중 선택해서 제출 가능하나, 무역통계진흥원 활용 시에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요망
- (⑧)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⑨~⑩)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무역협회 및 KTNET 수출실적은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수집이 불가하여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업로드
- 최근 3개년 연속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접속 URL

종류	시스템 URL
민원 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195&pdt_seq=1
수출입증명 (직수출증명)	https://minwon.dataline.co.kr/kosme.nice

· 평가절차: “서류심사 → 현장평가” 2단계 평가 실시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 글로벌강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의 경우 쿼터를 두고 선발
 - ※ 단,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지정 유효기업만 해당

□ 문의처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 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 안내 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예: 사업자등록 · 재무제표 · 4대보험 · 수출실적증명 발급)
 - ☎ 02-3771-1100, 1155

1-4 수출성장기업*

■ 사업명

- 수출바우처-수출성장기업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목적

- 내수 · 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 시 우대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 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 수출실적: 직접수출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증명서

- (공통 가점사항) 세부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업체별 총 5점까지 가점부여
- 가점항목은 현장평가시 별도 요청(단, 전년도 라-우-벨 직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제출 필요)

구분	가점항목	점수
1	도심융합특구기업	1
2	메인비즈기업	1
3	명문장수기업	1
4	벤처인증기업	1
5	사업전환 우수기업	1
6	사회적경제기업	1
7	수위탁 우수기업	1
8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1
9	여성기업	1
10	이노비즈기업	1
11	장애인기업	1
12	지역특구입주기업	1
13	지역혁신 선도(스타)기업	1
14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최근 3년 이내)	1
15	혁신조달기업	1
16	R&D 우수기업	1
17	TIPS-R 졸업기업	1
18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3년 연속)	2
19	수출유망중소기업(20년 이후 지정)	2
20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3
21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3
22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3
23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대상기업 (전년도 혁신바우처 대상기업)	3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 수출바우처(통합형) 발급 및 사용 방법: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 바우처(가상의 쿠폰)을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 사업기간

– 사업기간: 사업 개시로부터 약 10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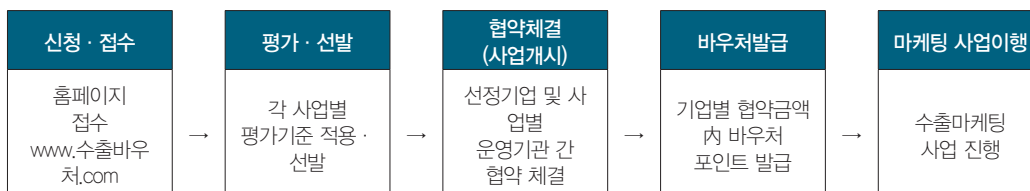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서비스 수행 완료**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완료 인정 기준은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완료 확인요청”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필수

2)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내 접수 완료 필수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 진행절차



· 유의사항

– 중기부, 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 자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예)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 · 신청하는 경우 등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사항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초과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15%초과 ~ 30%이하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15%이하	– 제재 없음

– 전년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전년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중, 당해년 1월 31일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률*이 저조한 경우 감점 또는 선정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에 의거, '사용률 = (바우처 사용액) ÷ (운영기관과의 협약액)'

※ 사용률 58% 미만: 참여금지, 사용률 58% 이상 70% 미만: 선정 심사시 5점 감점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처리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내 수출바우처사업 공통사항

-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바우처의 구성

-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
-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를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며,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
- 수출바우처를 지급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직접 선택해서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김.

※ 연중 한 번 바우처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사업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바우처로 구매가능 서비스 분야

구 분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13개 서비스 분야
1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2	조사/일반 컨설팅
3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4	특허/지재권/시험
5	해외규격인증
6	홍보/광고
7	브랜드개발/관리
8	디자인 개발
9	홍보동영상
10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11	역량강화 교육
12	통번역
13	국제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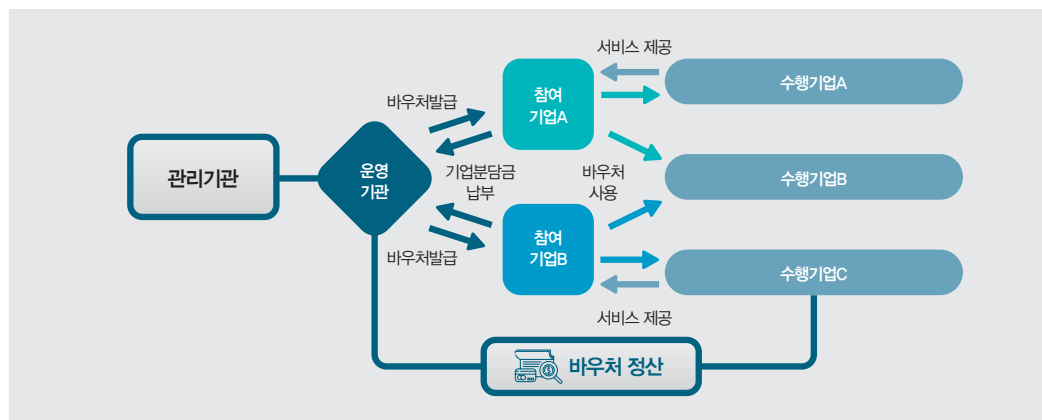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아래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예시)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 서비스 메뉴판(예시)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 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 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산· 시험	특허·지재산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 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산 분쟁 지원 및 특 허/지재산/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 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정,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 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클레임 해결지 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 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 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 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 규격인증 관련 유사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진행절차

- 수출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수출바우처포털 공지사
항에 올라오는 각 세부사업별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됨. 사업공고는 수출기업의 역량, 업종별
로 구분된 다양한 사업유형이 연중 발표됨.
- 바우처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 신청기간

· 전년 12월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시스템(www.exportvoucher.com)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중기부 물류전용 바우처(일반물류지원 유형)와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기부 수출바우처(통합형) 선정 시 물류전용 바우처 지원 불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신청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1차)서류 심사] → [(2차)현장 평가] → [최종선발] → [분담금 납부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 현장평가의 경우, 수출역량(수출실적) 및 업종 특성(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식명	내용
①	필수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내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첨부 및 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③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⑤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⑦		최근 3개년 직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⑧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⑨	선택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⑩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발급본)
⑪		전년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직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선정제외
- ※ 수출바우처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수출실적(최근 3개년) 추가 요청 가능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① 참가신청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②~③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첨부파일 내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④~⑥ 각종 민원증명 서류: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민원증명서류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가능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각종 민원 증명 및 직수출실적증명 서류의 발급과 제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사용자 메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수출실적증명: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또는 스캔본 첨부
-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중 선택해서 제출 가능하나, 무역통계진흥원 활용 시에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요망
- ⑧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⑨~⑩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무역협회 및 KTNET 수출실적은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수집이 불가하여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업로드
- 최근 3개년 연속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접속 URL

종류	시스템 URL
민원 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195&pd_t_seq=1
수출입증명 (직수출증명)	https://minwon.dataline.co.kr/kosme.nice

- 평가절차: “서류심사 → 현장평가” 2단계 평가 실시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 글로벌강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의 경우 쿼터를 두고 선발
 - ※ 단,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지정 유효기업만 해당

■ 문의처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 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 안내 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예: 사업자등록 · 재무제표 · 4대보험 · 수출실적증명 발급)
 - ☎ 02-3771-1100, 1155

1-5 수출강소기업*

□ 사업명

- 수출바우처-수출강소기업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목적

- 내수 · 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 시 우대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 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 수출실적: 직접수출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 (공통 가점사항) 세부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업체별 총 5점까지 가점부여
- 가점항목은 현장평가시 별도 요청(단, 전년도 러-우-벨 직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제출 필요)

구 분	가점항목	점 수
1	도심융합특구기업	1
2	메인비즈기업	1
3	명문장수기업	1
4	벤처인증기업	1
5	사업전환 우수기업	1
6	사회적경제기업	1
7	수위탁 우수기업	1
8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1
9	여성기업	1
10	이노비즈기업	1
11	장애인기업	1
12	지역특구입주기업	1
13	지역혁신 선도(스타)기업	1
14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최근 3년 이내)	1
15	혁신조달기업	1
16	R&D 우수기업	1
17	TIPS-R 졸업기업	1
18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3년 연속)	2
19	수출유망중소기업(20년 이후 지정)	2
20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3
21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3
22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3
23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 · K-bio 대상기업 (전년도 혁신바우처 대상기업)	3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부담금(50~30%)으로 구성
 - ※ 수출바우처(통합형) 발급 및 사용 방법: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 바우처(가상의 쿠폰)을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 사업기간

– 사업기간: 사업 개시로부터 약 10개월

※ 평가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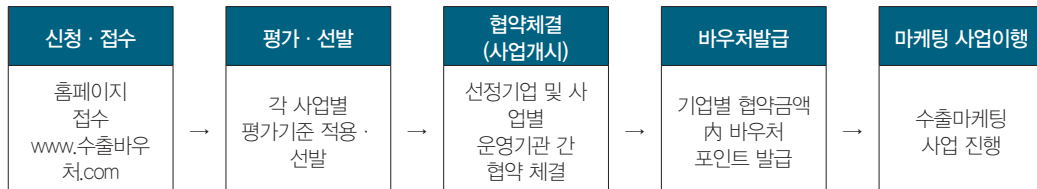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서비스 수행 완료**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완료 인정 기준은 아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완료 확인요청”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필수

2)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내 접수 완료 필수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 진행절차



· 유의사항

– 중기부, 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예)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 · 신청하는 경우 등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사항

바우처 잔액	제재사항
30%초과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15%초과 ~ 30%이하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15%이하	– 제재 없음

– 전년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전년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중, 당해년 1월 31일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률*이 저조한 경우 감점 또는 선정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에 의거, '사용률 = (바우처 사용액) ÷ (운영기관과의 협약액)'

※ 사용률 58% 미만: 참여금지, 사용률 58% 이상 70% 미만: 선정 심사시 5점 감점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처리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내 수출바우처사업 공통사항

-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바우처의 구성

-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
-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를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며,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
- 수출바우처를 지급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음.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직접 선택해서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김.

※ 연중 한 번 바우처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사업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바우처로 구매가능 서비스 분야

구 분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13개 서비스 분야
1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2	조사/일반 컨설팅
3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4	특허/지재권/시험
5	해외규격인증
6	홍보/광고
7	브랜드개발/관리
8	디자인 개발
9	홍보동영상
10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11	역량강화 교육
12	통번역
13	국제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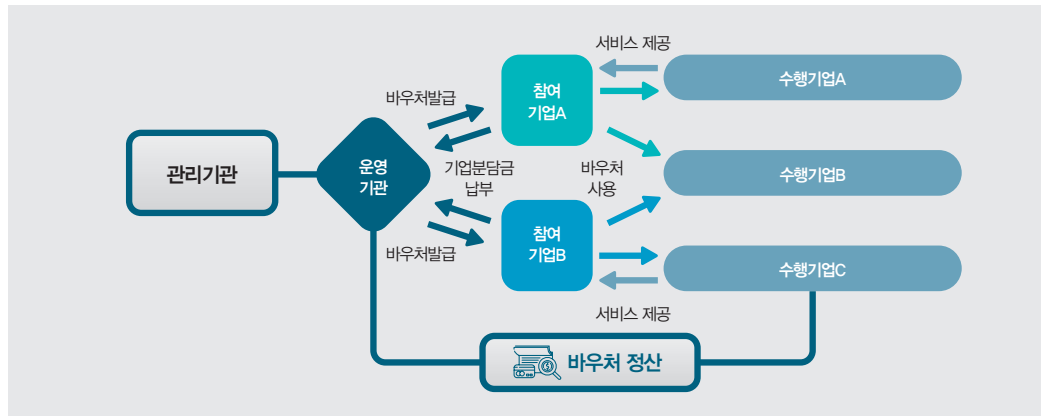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아래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예시)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 서비스 메뉴판(예시)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 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 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 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 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 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 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클레임 해결지 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 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 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 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 규격인증 관련 유사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진행절차

- 수출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수출바우처포털 공지사
항에 올라오는 각 세부사업별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됨. 사업공고는 수출기업의 역량, 업종별
로 구분된 다양한 사업유형이 연중 발표됨.
- 바우처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 신청기간

· 전년 12월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시스템(www.exportvoucher.com)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중기부 물류전용 바우처(일반물류지원 유형)와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기부 수출바우처(통합형) 선정 시 물류전용 바우처 지원 불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신청절차

- [공고] → [신청 · 접수] → [(1차)서류 심사] → [(2차)현장 평가] → [최종선발] → [분담금 납부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 현장평가의 경우, 수출역량(수출실적) 및 업종 특성(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식명	내용
①	필수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내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첨부 및 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③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⑤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⑦		최근 3개년 직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⑧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⑨	선택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⑩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발급본)
⑪		전년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직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선정제외

※ 수출바우처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수출실적(최근 3개년) 추가 요청 가능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중요)

- (①) 참가신청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②~③)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첨부파일 내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현장평가 시 원본 제출)
- (④~⑥) 각종 민원증명 서류: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민원증명서류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가능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각종 민원 증명 및 직수출실적증명 서류의 발급과 제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수출실적증명: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또는 스캔본 첨부
-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중 선택해서 제출 가능하나, 무역통계진흥원 활용 시에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요망
- (⑧)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⑨~⑩)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실적증명(KTNET):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무역협회 및 KTNET 수출실적은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수집이 불가하여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업로드
- 최근 3개년 연속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접속 URL

종류	시스템 URL
민원 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195&pdt_seq=1
수출입증명 (직수출증명)	https://minwon.dataline.co.kr/kosme.nice

· 평가절차: “서류심사 → 현장평가” 2단계 평가 실시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 글로벌강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의 경우 쿼터를 두고 선발
 - ※ 단,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지정 유효기업만 해당

□ 문의처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 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 안내 센터: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예: 사업자등록 · 재무제표 · 4대보험 · 수출실적증명 발급)
 - ☎ 02-3771-1100, 1155

1-6 그린 선도기업 육성*

■ 사업명

- 수출바우처-그린 선도기업 육성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목적

- (공통)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 * 각 사업 별로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임.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 가능함.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되어있음
-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바우처 발급을 위해 신청 가능한 사업 중 하나로, 그린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신청자격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 · 중견기업 중 각 세부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세부 신청 자격)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 · 중견기업* 중 상기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 i) 재생에너지, ii) 수소, iii) 모빌리티, iv) 온실가스 배출 저감, v) 에너지효율, vi) 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 vii)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등 그린 분야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 (단,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 제외)

- i)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 ii) 수소: 수전해기술, 수소 생산, 저장, 유통 및 활용 등
- iii)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충전 설비, 배터리, 친환경 선박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iv)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 v) 에너지효율: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솔루션 등
- vi) 환경: 수처리, 폐기물 처리, 오염·배출 저감 등
- vii)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재활용·저탄소 기술 활용 제품, IT·서비스 등

· (지원요건) (1)확대, (2)발전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1)확대	(2)발전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 확대 단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발전 단계 지원
지원요건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5억원 또는 최근 3개년 평균 수출액 5만불 이상	최근 3개년 평균 수출액 10만불 이상

·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및 제출 필요함

- ※ 동일 사업에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이미 타 세부사업에 2회 이상 선정(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 이 외 신청 시 유의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자료 참고

- 그린 관련 인증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기업
- 산업융합선도기업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혁신조달기업
- K-ESG 시범평가 우수기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청일 기준 유효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 지원내용

· (공통)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 서비스 메뉴'에 있는 13개 분야(예: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권·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 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 규격인증 관련 유사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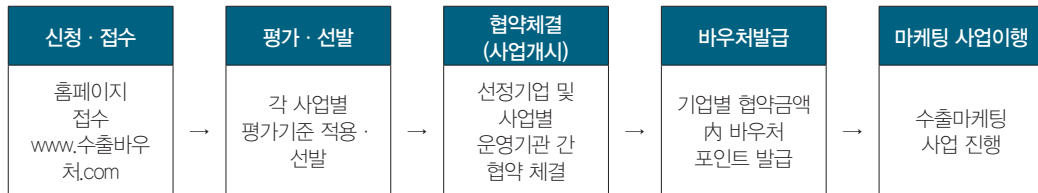
·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세부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는 다음과 같음

구분	(1)확대		(2)발전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 확대 단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발전 단계 지원	
지원요건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5억원 또는 최근 3개년 평균 수출액 5만불 이상		최근 3개년 평균 수출액 10만불 이상	
지원규모	OO개사 내외		OO개사 내외	
지원내용	-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3개 분야 수출 지원 서비스 이용 - 전담 전문위원 배정, 바우처 활용 컨설팅 및 마케팅 활동 지원			
바우처 총액(최대)	3,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1억원
국고 보조율 및 금액	(중소)70%/2,100만원 (중견)50%/1,500만원	(중소)70%/3,500만원 (중견)50%/2,500만원	(중소)70%/4,200만원 (중견)50%/3,000만원	(중소)70%/7,000만원 (중견)50%/5,000만원
자비 부담율 및 금액	(중소)30%/900만원 (중견)50%/1,500만원	(중소)30%/1,500만원 (중견)50%/2,500만원	(중소)30%/1,800만원 (중견)50%/3,000만원	(중소)30%/3,000만원 (중견)50%/5,000만원

· 이 외, 광범위한 해외네트워크(84개국 127개 무역관)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 서비스가 제공됨

■ 신청방법

- (공통 1) 수출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함
 - 단, 선정기준과 바우처 발급액이 사업별로 상이함으로, 각 회사들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사업별로 최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 사업별 모집공고는 수출바우처포털 공지사항에서 참고 가능함(연중 발표)
- (공통 2)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용 공인인증서 안내는 다음과 같음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인증서 발급 기관: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 사업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제출서류	구분	발급방법
사업계획서	필수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 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	필수	–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	필수	– 홈텍스 출력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필수	– 국민연금공단
수출실적증명원(최근 3개년)	필수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직접수출액만 인정)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 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회사소개서 및 제품/ 기술 카탈로그(혹은 브로슈어)	필수	– 국문 및 영문 모두 제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실적증명서(최근 3개년)	선택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www.kita.net)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최근 3개년)	선택	–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입금증빙 * 위의 무역협회 무체물수출실적증명서 없을 시

제출서류	구분	발급방법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선택	-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1) 그린 관련 인증 2)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기업 3) 산업융합선도기업 4)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5) 혁신조달기업 6) K-ESG 시범평가 우수기업 7) 고용창출 우수기업 8)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 신청일 기준 유효 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문의처

- 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커뮤니티)문의하기' > "해당 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 안내 센터: ☎ 1533-4323 또는 ☎ 070-4866-3082
- 시스템 이용 문의
 - KOTRA: ☎ 02-3460-3427(원격지원 가능)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예: 사업자등록 · 재무제표 · 4대보험 · 수출실적증명 발급)
 - ☎ 02-3771-1100, 1155

1-7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사업명

- 수출바우처-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목적

- (공동)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 각 사업 별로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임.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 가능함.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되어있음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은 바우처 발급을 위해 신청 가능한 사업 중 하나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함

■ 신청자격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중 상기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 1) [내수중견] 수출비중 10% 미만 또는 수출액 1천만불 미만의 중견·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2) [Jumping] 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3) [중견글로벌] 중견기업·WC300/WCPlus선정기업

4) [Post]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 단, 가입 시점 기준 모든 지원요건에 대해 매출액 1조 이상의 기업은 지원 불가

※ 연중 한 번 바우처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사업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모집단계별로 신청 자격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통해 재확인 요망

-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가 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음

- 1)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 2) ATQ(산업부 우수기업연구소) 선정기업
- 3)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 4)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선정기업
- 5)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 6) 그린관련 인증
- 7)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재, 지정산업 관계기업

지정지역	지정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시 동구	조선업	'18년 5월

- 8) 전년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수출액 비중 30% 이상 차지 기업

※ 해당 기업 개별 요청 예정

- 또한, 아래 그린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이 부여됨(공통요건)

인증명	주관기관	세부내용
녹색인증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1)녹색기술 인증, 2)녹색기술제품 확인, 3)녹색사업 인증, 4)녹색전문기업
수소전문기업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 에너지 전문기업 (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수소, 수전해 등)
녹색혁신기업	환경부	5대 선도 녹색산업 1)청정대기, 2)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3)스마트 물, 4)탄소저감, 5)녹색 융복합 등
친환경 경영시스템	국제표준화기구(ISO)	ISO 14001(환경경영체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녹색경영시스템	한국품질재단	(KS7001, 7002) 에너지, 자원, 온실가스 관리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성과 관리
로하스(LOHAS)	한국표준협회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태양열 전력, 친환경 제품
저탄소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실가스 감축 달성 생활용품 및 가정용 전기기기
환경표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절약 소비재, 기자재, 서비스

- 기업 상황 및 수요에 맞게 해외시장에서의 다양한 마케팅사업 전개
 - 참가기업-수출전문위원(KOTRA본사)-무역관(KOTRA해외) 등 3각 지원체계를 통해 타겟 해외시장을 설정하고 동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마케팅에 대한 연간 계획(로드맵) 수립·추진을 지원
- 전담위원 배정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출전략 수립, 목표시장 선정 등) 지원
- 광범위한 해외네트워크(84개국 127개 무역관)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마케팅서비스 제공 등
- (공통)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 서비스 메뉴'에 있는 13개 분야(예: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전시회 · 행사 ·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 · 세미나 · 시연회 및 해외전시회 · 행사 · 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 · 세무 ·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 · 세무 · 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 · 세무 · 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 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 · 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 · 심사 · 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 규격인증 관련 유사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는 다음과 같음

구분	중견글로벌	Post중견글로벌
사업목적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지원요건	중견기업	'중견글로벌' 단계 졸업기업
지원기간	최대 5회	최대 3회
지원규모	25개사 내외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공통) 홍보 · 광고, 온 · 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3개 분야 수출 지원서비스 - 전담위원 배정 및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출전략 수립, 목표시장 선정 등) 지원 - 광범위한 해외네트워크(84개국 127개 무역관)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	
바우처 발급액* (㉠+㉡)	2억원	
국고보조율 /금액㉠	50% / 1억원	30% / 6,000만원
자비분담율 /금액㉡	50% / 1억원	70% / 1.4억원

*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 가능한 최대 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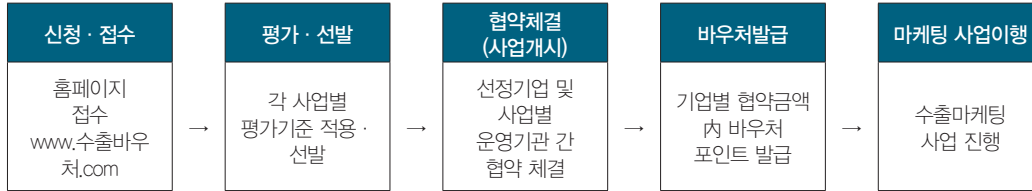
□ 신청기간

· 전년 12월

□ 신청방법

- (공통) 수출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함
 - 단, 선정기준과 바우처 발급액이 사업별로 상이함으로, 각 회사들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사업별로 최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 사업별 모집공고는 수출바우처포털 공지사항에서 참고 가능함(연중 발표)

· 사업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동일 공고 내에서 최대 2개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선순위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우선순위 순으로 지망을 선택한 후, 각 사업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한 서류와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평가가 진행됨
- 신청한 사업의 운영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별 지원자격(수출규모, 매출규모, 사업분야 등)을 평가 후 최종 선정

※ 세부 사업 내용 혹은 제출 자료 등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세부 내용을 통해 확인 요망

제출서류	구분	발급방법
사업계획서	필수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 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	필수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	필수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혹은 DART 공시 재무제표 인정)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3개년) * 기준일 당해연도 12월 설정	필수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혹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가입자명부 인정)
수출실적증명원(최근 3개년)	필수	-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필수	-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실적증명서(최근 3개년)	선택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www.kita.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최근 3개년)	선택	- Utrade Hub(www.ktnet.com) 확인서 발급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 신청일 기준 유효 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선택	-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02-3460-7238, 7247

· 시스템 이용 관련

- KOTRA 수출바우처팀: ☎ 02-3460-3427(원격지원 가능)

1-8

소재 · 부품 · 장비 선도기업 육성

■ 사업명

· 수출바우처-소재 · 부품 · 장비 선도기업 육성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목적

· (공통)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 각 사업 별로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임.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 가능함.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되어있음

· 소재 · 부품 · 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바우처 발급을 위해 신청 가능한 사업 중 하나로,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해 해외 파트너십 발굴, 글로벌 공급망 확대 발전 지원을 목표로 함

■ 신청자격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 · 중견기업 중 각 세부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소재 · 부품 · 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세부 신청 자격) 소재 · 부품 · 장비* 업종의 중소 · 중견기업 중 상기 사업 내용에 동의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 소재 · 부품 업종 구분은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지원요건) (1)확대, (2)발전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분	(1)확대	(2)발전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 확대 단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발전 단계 지원
지원요건	1) 소부장 중소 · 중견기업 2) 최근 3개년 중 1개년 평균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1) 소부장 중소 · 중견기업 2) 최근 3개년* 평균 수출액 100만불 이상 * 기업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내 평균 수출액 적용

·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및 제출 필요함

※ 동일 사업 내 단계별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발전) 단계는 신규 신청 또는 (확대) 단계 2회 선정(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이 신청 가능

※ 이 외, 신청 시 유의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자료 참고

- 국제공동 R&D 수행기업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소부장경쟁력위원회 협력모델 지정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발급)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발급)
- K-ESG 시범평가 우수기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공통) 그린 관련 인증
-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재, 지정산업 관계기업

지정지역	지정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 고성군, 전남 영암 · 목포 · 해남, 울산시 동구	조선업	'18년 5월

■ 지원내용

· (공통)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 서비스 메뉴'에 있는 13개 분야(예: 홍보 · 광고, 온 · 오프라인전시회, 통 · 번역, 해외규격인증, 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 · 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 · 세무 · 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파트너 · 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 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산용 · 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 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 · 지재권 · 시험	특허 · 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 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 · 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 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 · 현지등록 · 환보험	무역 · 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 · 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 · PPL, 신문 · 잡지 홍보/광고, SNS · 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 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 · 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 · 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 · 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료, 법률자료, 법인설립, 해외발생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 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 규격인증 관련 유사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세부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는 다음과 같음

구분	(1)확대	(2)발전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 확대 단계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발전 단계 지원
지원요건	1)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2) 최근 3개년 중 1개년 평균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1)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2) 최근 3개년* 평균 수출액 100만불 이상 * 기업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내 평균 수출액 적용
지원규모	OO개사 내외	
지원내용	- 홍보·광고, 온오프라인 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3개 분야 수출 지원 서비스 이용 - 전담 전문위원 배정,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 진출전략 수립 및 타겟 국가 선정 지원 등 - 디지털 현장실사 등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대응 신규 서비스 지원	
바우처 총액(최대)	5,000만원 (최대 10,000만원)**	6,000만원 (최대 10,000만원)**
국고 보조율 및 금액	(중소기업) 70% / 3,500만원 (중견기업) 50% / 2,500만원	(중소기업) 70% / 4,200만원 (중견기업) 50% / 3,000만원
자비 부담율 및 금액	(중소기업) 30% / 1,500만원 (중견기업) 50% / 2,500만원	(중소기업) 30% / 1,800만원 (중견기업) 50% / 3,000만원

** 상반기 바우처 조기 소진기업 중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별도 조사) 누계 1억 원까지 증액 지원(미소진 시 제재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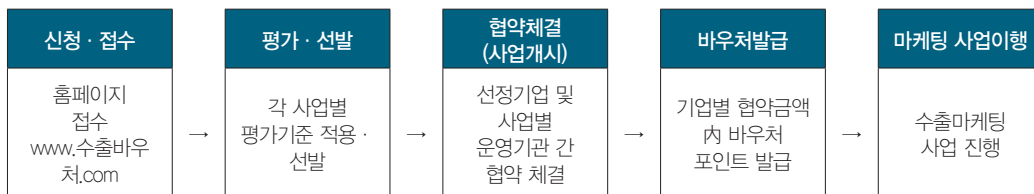
■ 신청기간

· 전년 12월

■ 신청방법

- (공통 1) 수출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함
 - 단, 선정기준과 바우처 발급액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각 회사들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사업별로 최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 사업별 모집공고는 수출바우처포털 공지사항에서 참고 가능함(연중 발표)
- (공통 2)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용 공인인증서 안내는 다음과 같음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인증서 발급 기관: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 사업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	발급방법								
사업계획서	필수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 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	필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제출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원클릭 시스템 ** 신청화면(1단계)에 생성된 버튼 클릭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수출실적증명원(최근 3개년)	필수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필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 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회사소개서 및 제품/ 기술 카탈로그(혹은 브로슈어)	선택	- 국문 및 영문 모두 제출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선택	-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1) 국제공동 R&D 수행기업 2)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3) 소부장경쟁력위원회 협력모델 지정기업 4) 뿌리기업 확인서(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 발급) 5)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서(국가 뿌리산업진흥 센터 발급) 6) K-ESG 시범평가 우수기업 7) 고용창출 우수기업 8) 그린 관련 인증 9)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재, 지정산업 관계기업								
		지정지역	지정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 고성군, 전남 영암 · 목포 · 해남, 울산시 동구	조선업	'18년 5월
		지정지역	지정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 고성군, 전남 영암 · 목포 · 해남, 울산시 동구	조선업	'18년 5월								
*신청일 기준 유효 증서, 발급2년 이내 서류만 인정										

*신청일 기준 유효 증서, 발급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문의처

- 소재 · 부품 · 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 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 안내 센터: ☎ 1533-4323 또는 ☎ 070-4866-5288~9
- 시스템 이용 문의
 - KOTRA: ☎ 02-3460-3427(원격지원 가능)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예: 사업자등록 · 재무제표 · 4대보험 · 수출실적증명 발급)
 - ☎ 02-3771-1100, 1155

1-9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사업명

- 수출바우처-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목적

- (공통)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 * 각 사업 별로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인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 가능함.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되어있음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바우처 발급을 위해 신청 가능한 사업 중 하나로, 소비재 산업을 이끄는 대표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 발전 지원을 목표로 함

■ 사업목적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각 세부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세부 신청 자격) 소비자* 제조, 중소·중견기업
 - * 소비자: 화장품·뷰티, 가공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 ※ 제외 대상: 무역상사
- (지원요건) 아래 2개 요건 모두 충족
 - 1)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 2) 최근 3개년 평균 수출액 50만불 이상
 - ※ 자사 브랜드 보유기업 우대
 - ※ 유의사항: 동일 사업에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이미 2회 이상 선정(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및 제출 필요함
 - 고용창출 우수기업(중앙·지방정부 선정 고용우수 인증 증빙)
 -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한국디자인진흥원 선정증 사본 또는 선정 확인서)
 -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수상기업(한국디자인진흥원 상장 사본 또는 수상 확인서)
 - 산업융합선도기업(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선도기업 선정서)
 - 사회적기업(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발급 증빙서류)
 - 규제샌드박스
 - (공통) 그린 관련 인증
 - ※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유효 증서,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

■ 지원내용

- (공통)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 서비스 메뉴'에 있는 13개 분야(예: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 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 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 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 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홍보 · 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 · PPL, 신문 · 잡지 홍보/광고, SNS · 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 · 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 · 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 · 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 · 행사 ·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 · 세미나 · 시연회 및 해외전시회 · 행사 · 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 · 세무 ·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 · 세무 · 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 · 세무 · 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웹, 해외 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 · 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 · 심사 · 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소비자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세부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사업목적	소비재 산업을 이끄는 대표기업 육성
지원규모	OO개사 내외
지원내용	- 홍보 · 광고, 온오프라인 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디자인 개발(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 등 13개 분야 수출 지원 서비스 이용 - 전담 전문위원 배정,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 진출전략 수립 및 타겟 국가 선정 지원 등 - 디지털 현장실사 등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대응 신규 서비스 지원
바우처 총액(최대)	5,500만원**
국고 보조율 및 금액	(중소기업) 70% / 3,850만원, (중견기업) 50% / 2,750만원
자비 부담율 및 금액	(중소기업) 30% / 1,650만원, (중견기업) 50% / 2,750만원

** 상반기 바우처 조기 소진기업 중 희망기업을 대상으로(별도 조사) 누계 1억원까지 증액 지원(미소진 시 제재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

□ 신청기간

· 전년 12월

□ 신청방법

- (공통 1) 수출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함
- 단, 선정기준과 바우처 발급액이 사업별로 상이함으로, 각 회사들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사업

별로 최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 사업별 모집공고는 수출바우처포털 공지사항에서 참고 가능함(연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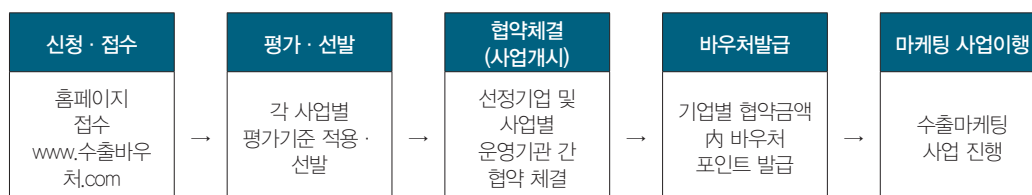
· (공통 2)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용 공인인증서 안내는 다음과 같음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
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
급 가능

- 인증서 발급 기관: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 사업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제출서류	구분	발급방법
사업계획서	필수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 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	필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제출 *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원클릭 시 스템
재무제표증명원(최근 3개년)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수출실적증명원(최근 3개년)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필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 기업정보마당 (mme.or.kr) 확인서 발급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선택	Utrade Hub(www.ktnet.com) 확인서 발급
영문 / 외국어 제품 카탈로그	선택	-
인증 / 수상 증빙서류	선택	-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선택	-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1) 고용창출 우수기업(중앙 · 지방정부 선정 고용우수 인증 증빙) 2)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한국디자인진흥원 선정증 사본 또는 선정 확인서) 3)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수상기업(한국디자인진흥원 상장 사본 또는 수 상 확인서) 4) 산업융합선도기업(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선도 기업 선정서) 5) 사회적기업(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발급 증빙서류) 6) 규제샌드박스 7) 그린 관련 인증

■ 문의처

- 소재 · 부품 · 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커뮤니티)문의하기' "해당 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 안내 센터: ☎ 1533-4323 또는 ☎ 070-4866-5288~9
- 시스템 이용 문의
 - KOTRA: ☎ 02-3460-3427(원격지원 가능)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예: 사업자등록 · 재무제표 · 4대보험 · 수출실적증명 발급)
 - ☎ 02-3771-1100, 1155

1-10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사업명

- 수출바우처-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 코트라 수출바우처센터

■ 사업목적

- (공통)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 * 각 사업 별로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임.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 가능함. 수출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되어있음
-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바우처 발급을 위해 신청 가능한 사업 중 하나로, 국내 유망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신청자격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각 세부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 세부 신청 자격) 서비스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 (지원요건)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조원 이하의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 유의사항: 동일 사업에 최대 2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이미 2회 이상 선정(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우대사항)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 및 제출 필요함

※ 이 외, 신청 시 유의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자료 참고

– 용역 및 전자적무채물 수출기업(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 사회적경제기업(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발급 증빙서류)

– 소상공인(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발급 증빙서류)

– 고용창출 우수기업(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발급 증빙서류)

– 산업융합선도기업(산업부 산업융합선도기업 선정서 제출)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별도 증빙 서류 없음)

– (공통) 그린 관련 인증

■ 지원내용

· (공통)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 서비스 메뉴’에 있는 13개 분야(예: 홍보·광고, 온·오프라인전시회, 통·번역, 해외규격인증, 홈페이지 구축, 카탈로그 디자인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 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 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권· 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 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 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 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 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 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클레임 해결지 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대분류	정 의	내 용(예시)
디자인개발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 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및 도착국 비용 제외)

·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세부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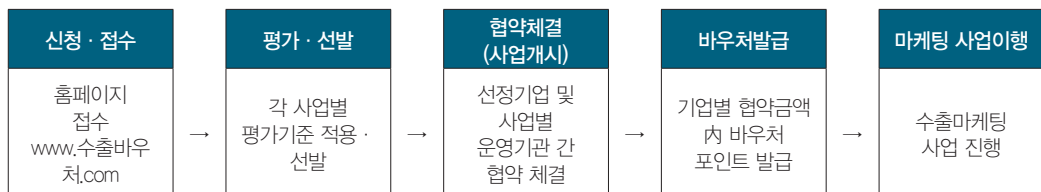
구분	바우처 발행액	국고지원	기업분담금	국고보조율
중소기업	5,000만원	3,500만원	1,500만원	70%
중견기업	5,0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50%

□ 신청기간

· 전년 12월

□ 신청방법

- (공통 1) 수출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함
 - 단, 선정기준과 바우처 발급액이 사업별로 상이함으로, 각 회사들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사업별로 최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 요망
 - 사업별 모집공고는 수출바우처포털 공지사항에서 참고 가능함(연중 발표)
- (공통 2)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용 공인인증서 안내는 다음과 같음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인증서 발급 기관: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 사업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제출서류	구분	발급방법
사업계획서	필수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산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 스캔본 첨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필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 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회사소개서 및 제품/ 기술 카탈로그 (브로슈어)	필수	- 국문 및 영문 모두 제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 실적증명서(최근 3개년)	선택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www.kita.net)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최근 3개년)	선택	-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입금증빙 * 위의 무역협회 무체물수출 실적증명서 없을 시
기타: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선택	1)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기업(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2) 사회적경제기업(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발급 증빙서류) 3) 소상공인(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발급 증빙서류) 4) 고용창출 우수기업(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발급 증빙서류) 5) 산업융합선도기업(산업부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 제출) 6)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사업자등록 증 기준, 별도 증빙서류 없음) 7) (공동) 그린 관련 인증

■ 문의처

- 소재 · 부품 · 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커뮤니티)문의하기' > "해당 사업" 선택 후 작성
 - 통합 안내 센터: ☎ 1533-4323 또는 ☎ 070-4866-5288~9
- 시스템 이용 문의
 - KOTRA: ☎ 02-3460-3427(원격지원 가능)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예: 사업자등록 · 재무제표 · 4대보험 · 수출실적증명 발급)
 - ☎ 02-3771-1100, 1155

02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일반물류 지원)

■ 사업명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일반물류 지원)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목적

· 국제 해상 및 항공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 애로 완화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재기업)는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 발급액으로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당해년도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중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중	-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 주류, 담배 도매업
	4722중	-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중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 gambling 및 베팅업

■ 지원내용

- 사업기간: 모집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 사업내용: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정부보조금 70% 지원(기업당 최대 1,400만 원)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
- 선정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서비스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 비용 정산
* 바우처는 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기업분담금 유무 및 비율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지원항목
 -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기업이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정산 가능/불가 항목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세부내용
필수 충족요건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 · CIF · CPT · CIP), D조건(DAP · DPU · DDP)에 한해 지원
정산 가능항목	① 항공 · 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④ 현지 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⑤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⑥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 ①+②+③+④+⑤ ※ (참고) 최종정산예정금액 = ⑥ × 70%

구 분	세부내용
정산 불가항목 예시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프리미엄, 기업화물 서비스 등) - 풀필먼트 서비스: 수입대행, 입출고, 창고지원, 배송 등 ※ 단,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활용한 국내→해외 해상 또는 항공 운송,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에 한해 정산가능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 무상거래 샘플운송 -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 (유의) 상기 정산불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가능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산항목 확대

- 대상품목

- 1)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 러시아 · 벨라루스로 운송 중(바이어 최종인도 前)인 수출품
- 2)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한국으로의 반송(Ship-back) 또는 대체 목적지로 우회할 필요가 필요한 수출품
 - ※ 수출자가 국제운송비, 국제복합운송비, 지체료 등 정산지원범위 확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정산범위: 현행 정산 범위에서 다음 항목을 추가적으로 정산 지원

- 1) 우크라이나 · 러시아 · 벨라루스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국제운송비(해상 및 항공 운임)
- 2) 우크라이나 · 러시아 · 벨라루스에서 대체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해상 및 항공 운임), 국제복합운송비*
 - * 국제복합운송비는 1차 도착지에서 창고 보관 등 없이 최종목적지로 바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함
- 3) 최종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우크라이나 · 러시아 · 벨라루스인 수출품의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 Demurrage Charge)

- 정산 증빙서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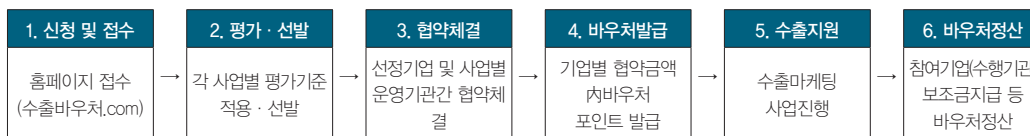
기업별 공통증빙	① 일반물류 지원 신청서(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사업신청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수출신고필증(최초 한국→해외목적지 운송물품) ③ 수출·반송·우회 증빙자료 - 활용 물류사(포워더사) 발행 인보이스(세부 지출항목 명시) ※ 최초 수출, 반송 또는 우회로 인한 세부내역사항이 인보이스 상에서 확인될 경우에만 정산 지원 가능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①한국→해외(수출) / ②해외→한국(반송) 또는 해외→해 외(우회) 2부 제출) - 패킹리스트(P/L) ④ 활용 물류사(포워더사) 등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 참여기업의 소요비용 선집행 증빙자료(이체 증빙자료) (참여기업 → 선사/항공사 or 참여기업 → 포워더사 이체 증빙) ※ 국제운송비, 지체료 등 정산대상 항목의 선집행 여부 확인 ⑤ 적하보험 가입 증서(수출자가 보험료 부담시에만)
국제운송 추가증빙	· 지체 증빙(지체료 발생기업 해당) · 선사 또는 항공사에서 포워더사 또는 화주기업에 청구한 지체료 관련 인보이스 또는 청구서

- 지원한도: 20만원 이상 물류비 발생액의 70%, 최대 1,400만원
- 정산가능 물류비 항목 합산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위의 '정산 가능/불가 항목' 참고
- 기존, 1회 신청시 물류비 최대 5건까지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 합산건수 제한(최대 5건)**
- 삭제**
- 합산 신청 가능 사례는 다음 표와 같음

구분		한 회차 물류비 집행액	총 신청액	지원금액
지원 가능	사례1	20만원	20만원	14만원
	사례2	5만원 + 3만원 + 5만원 + 2만원 + 5만원 +...+ α	20만원 + α	14만원 + α
지원 불가	사례1	1만원+2만원+5만원+3만원+2만원	13만원	물류비 20만원
	사례2	10만원(인코텀즈 D)+ 10만원(인코텀즈 F → 신청불가)*	10만원	미만으로 요건탈락

※ 지원 불가 '사례2' 기업은 10만원 집행액을 지원가능한 인코텀즈 조건에 해당하는 물류비 집행액과 합산하여 새로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확인 후 지원 가능

· 사업진행절차



1) 사업 신청

2) 지원대상 확인

- 지원신청 제외 대상여부, 지원가능 항목 여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 여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 ※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휴대폰 문자알림 및 이메일 등 개별안내 예정

3)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4) 정산 신청

-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물류비 세부내역서 상 물류비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물류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정산 신청

* 물류비 세부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물류비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산서류는 정산불가

5) 정산금 지급

- 기업 정산신청 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산 검수 후 정산금 지급

·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산업부/중기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신청하여 선정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기업은 중기부/산업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교차 신청 불가
-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 ①일반물류지원, ②장기운송계약(HMM) 지원 중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
-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
- 정산신청시,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
-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예정이오니 유의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해당 등으로 탈락한 경우,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별도신청이 가능. 단, 상시신청접수 및 순차 지원에 따라 기존에 탈락처리된 신청건의 신청일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신청기업의 심사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여 기업을 선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필요에 따라 추가모집을 할 수 있으나, 사업 기간의 과도한 지연을 막기 위해 바우처 협약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함

■ 지원내용

· 1월

■ 신청방법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상시 신청
 -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www.exportvoucher.com/shipping
 -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일반물류 지원' 유형 선택하여 신청
 -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 관련 세부내용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 - 자료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포털 기업인증서 안내(21.8.2) 게시글' 참고

■ 신청서류

연번	서식명	내용
①	사업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스캔본 첨부
②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원본(엑셀) 첨부
③	기업 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개인 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④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⑤	사업자 등록증명원	– 국세청(홈택스) 확인본
⑥	입금계좌 통장사본	– 물류비 입금받을 사업자 명의 계좌 사본

※ 사전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매우 중요, 필독)

- ① 사업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인감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 ※ 법인기업: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 개인인감 날인 원칙
- ②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물류비 건별 정산 가능 항목 금액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작성 및 엑셀파일 제출(스캔본 제출 금지)
 - ※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물류비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신청시 물류비 내역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정산 신청 절차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

-
- ③ 각종 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스캔본을 홈페이지에 첨부하여 제출
※ 법인기업: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 개인인감 날인 원칙(단, 개인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한해서만 대표자 개인 서명 날인 가능)
 - ④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내 국세청 확인본(홈택스)으로 제출
 - ⑥ 입금계좌 통장사본: 물류비를 입금 받을 사업자 명의 계좌 사본

■ 문의처

- 사업 문의: 055-752-8580 (수출바우처안내센터)
- 시스템 문의: 02-3460-3427 (KOTRA IT헬프데스크)
- 온라인 문의: <https://www.exportvoucher.com/shipping/portal/svcenter/qna/list>

03 해외지사화사업

■ 사업명

· 해외지사화사업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사업목적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3개 기관의 유사사업(KOTRA-지사화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글로벌 마케터**)을 통합하여 사업 참여기업 선택의 폭 확대

*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https://www.okta.net/site/okta/page/major_project/localize/

■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제외대상

-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20만원	KOTRA
		1년	300~40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665~840만원** (지역별차등)	중진공 OKTA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 확장 단계 참가비는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진입 단계의 경우 6개월 지원)

※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 지원품목

－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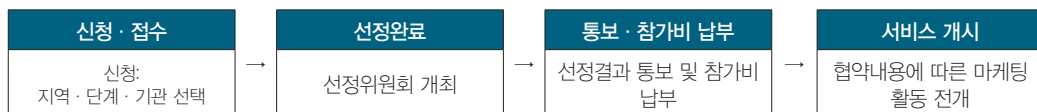
· 신청지역

－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참여지역 제한없이 신청(10건 이상 선정 가능)

· 사업진행절차



· 사업진행절차

1월	2월	3월	4월
1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1차 서비스 개시 2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2차 서비스 개시	3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5월	6월	7월	8월
3차 서비스 개시	4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4차 서비스 개시	5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9월	10월	11월	12월
5차 서비스 개시	6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6차 서비스 개시	

· 모집기관 및 단계

구분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KTA
1차	발전	발전	—
2차	발전	발전	진입, 발전, 확장
3차	발전	발전	진입, 발전, 확장
4차	발전	발전	진입, 발전, 확장
5차	발전	발전	진입, 발전, 확장
6차	발전	발전	—

■ 신청기간

- KOTRA: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중진공 및 OKTA: 1, 2, 4, 6, 8, 10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exportvoucher.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 참고사항

○ '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회원가입 기업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아이디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 기업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회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기업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가능한 인증서는 범용인증서(110,000원)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11,000원) 2가지만 가능합니다.
- 금융결제원 간이 기업인증서, 은행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전자서명법 제23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인증서 관리규정)

○ 인증서가 없는 기업은 아래 정부인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발급가능 기관(콜센터번호/신청사이트)

- 한국전자인증 : 1566-0566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kotra/index.html>
- 한국무역정보통신 : 1566-2119 / www.tradesign.net/ra/kotra

— 한국정보인증 : 1577-8787 / <https://exportvoucher.signra.com:4433/web-signra/main.sg>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의 경우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한국정보인증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 or 기업은행 or 상공회의소 직접방문 시 즉시 발급,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시 최소 5일에서 7일 소요

■ 신청서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문의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9, 7441, 744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팀: 055-751-9676, 9679, 9680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해외지사화사업팀: 031-927-9218

04 수출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 사업명

· 수출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 주관부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담당부서: 수출기업화팀

■ 사업목적

· 수출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해 1년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
임.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멘토, 멘티로 지정하여 수출 전 과정 컨설팅해줌.

*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

■ 신청자격

· 당해년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중, 수출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두드림기업' 우대

■ 지원내용

· 지원사항

수출역량강화	수출 실무 교육과정 운영, 우수기업 대상 다국어 동영상, 웹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수출멘토링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1:1 매칭하여, 수출 로드맵 작성,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 등 수출 성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수출마케팅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한 제품 홍보,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샘플 무료배송 및 피드백 조사 등 수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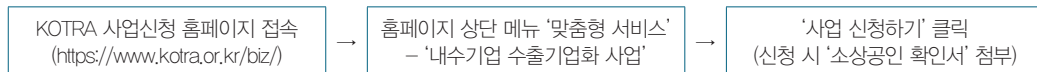
– 제출한 신청 양식, 제품 설명서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선정 결과 통보 예

■ 신청기간

· 전년 12월

■ 신청방법

- 당해년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신청하면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행방법 문의 등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
 - ※ 이미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2022export@kotra.or.kr)로 기업명과 함께 제출
- 신청절차



■ 신청서류

- 사업신청 링크 내 신청 양식, 제품설명서(자유양식)

■ 문의처

- 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41, 7567 / es_micro@kotra.or.kr

05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사업명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주관부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담당부서: 수출기업화팀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위주 중소·중견기업에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 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전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기준, 1)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2) 10만불 미만 기업
 - ※ 단, 전년도 직수출액 10만불 초과 기업 중 아래의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 선정
 - 소부장 등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1회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을 초과한 경우
 - 대량수출로 이어질 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2) 휴·폐업 중인 기업, 3) 비영리법인, 4) 외국 법인의 본·지점, 5) 국가, 지자체 등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수출 멘토링)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초보기업과 무역전문가인 수출 전문위원을 매칭하여, 수출

- 로드맵 작성,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 등 수출 성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 (온라인마케팅 지원) 내수 · 초보기업 대상 온라인마케팅 기반 지원, 화상상담 지원(바이어 수요 발굴시 연간 상시 지원) 등
 - ※ e-카달로그 제작 지원, 중국 위챗 미니프로그램 활용 온라인 마케팅 연중 실시 등
- (바이어 발굴) KOTRA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유망 내수 · 초보기업 제품 홍보, TriBig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통한 바이어 발굴 등
 - * 600만개 해외기업 DB에서 기업에게 적합한 잠재 바이어 추천
- (테스트마케팅) 현지 시장에서 제품 테스트를 희망하는 바이어 대상, 샘플 배송료 지원 및 현지 테스트 마케팅 수행, 후속관리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지원)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
 - ※ 예)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무보), 수출계약서 검토(법무부), 물류비 할인(FEDEX) 등
- 사업기간: 참여 기업 선정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 선정기준 및 방법
 -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서류 제출 여부, 글로벌 역량진단(GCL) 테스트* 40점 이상, 우대조건 여부 확인
 - * GCL은 1년에 1회 응시 가능
 - (현장평가) 신청서 기반, 수출 전문위원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
 - 단, 3연속 사업 참여 기업 중, 전전년~전년도 수출실적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초보기업의 경우 추후 선정 예정
 - 상기 평가 내용을 토대로 최종 선정 통보를 기업별로 안내 예정(전년도 관세청 수출통계 확정 이후 순차적으로 선정 통보)

■ 신청기간

- 전년 12월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 KOTRA, 무역협회 중,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 1)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접속 및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2) 맞춤형 서비스 →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GCL)' 테스트 참여
- 3) 맞춤형 서비스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류

· 신청서류

- (필수)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필수) KOTRA '글로벌 역량 자가진단' 온라인 실시
- (선택) 수출희망 제품 or 서비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 사업자등록증(업태 '제조'로 명시된 기업), 2) 공장등록증, 3) 공장임대계약서, 4) 물품납품계약서, 발주서 등 상기 명시된 서류 중 1부

- (선택) 영문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 문의처

· 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45, 3236, 3237 / 2022export@kotra.or.kr

06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 사업명

·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 주관부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담당부서: 기후변화대응팀

■ 사업목적

- 무역관별 조달 타겟시장에 맞는 품목 선정 후, 참여기업 대상 공공조달 벤더 및 바이어와의 거래알선,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입찰 수주, 지사화사업 등 지원
- ☞ 기업 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마케팅 비용 지원

■ 신청자격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
- 해외 직/간접조달 목표시장에 맞는 품목 보유 기업
- 본 제도는 선정시, 혁신조달기업에 가점을 부여함

■ 지원내용

- 사업기간: 약 1년
- 운영방식: 맞춤형 기간제 사업
- 기업부담금(신청비용): 3,000,000원(VAT 포함)

· 지원내용

- 1천만 원 한도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시장조사, 로드쇼 개최, 입찰 수주지원, 지사화사업 등)
- 참가국 조달시장 조사 및 추진 방향 수립
- 1천만 원 내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사업비용 지원
 - ※ 현지 조달벤더 및 정부 발주기관 초청 제품홍보 세미나, 시연회, 정부 조달벤더 방한 초청 등
- 조달 벤더와의 상담 주선, 동행상 담 및 현장지원, 입찰 참여 지원

· 모집/진행절차

- 사업 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업체 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 선정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기관 전문가, KOTRA(본사담당자/진출 희망지역 무역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
- 참고사항: 혁신제품 조달기업 평가 가점, 동 사업에 5년 이상 연속 참가한 국내기업은 지원 불가능



- 선정기준: 제품 시장성, 해외공공조달 품목 적합도 등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선정
- 해외조달 시장성, 해외영업 역량, 조달시장 진출준비 · 경험 노력, 과거 수출이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 신청기간

- 전년 12월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하단 문의처 참고)

■ 신청서류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해외마케팅로드맵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소개 자료 1부(브로셔 또는 자유양식)
 - 해외마케팅 희망 제품 국/영문 카탈로그 각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문의처

· KOTRA 기후변화대응팀: 02-3460-7494, 7492, 7499

chyeonjun@kotra.or.kr, ykoh@@kotra.or.kr, leegm98@kotra.or.kr

07 KOTRA 글로벌 ESG+ 사업

■ 사업명

· KOTRA 글로벌 ESG+ 사업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담당부서: 개발협력실

■ 사업목적

· 기업의 ESG 활동 지원을 통한, 현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및 현지 수혜처와 상생협력 구축으로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현지 수출 기반 확보

■ 신청자격

· 해외 ESG 활동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 벤처기업 등
· 위와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 대기업 및 협회: 동반성장형 사업 지원(중소·중견기업 제품 구매 시 사업비 지원)
※ 공공기관 및 공기업: 현지 기부 행사만 지원(사업비 미지원)

■ 지원내용

1. 사업 유형 및 방식

· 사업 유형

사업구분	사업내용
㊸ 형 (그린 이니셔티브)	· (글로벌 녹색협력) 저탄소·친환경 소재 제품, 교육, 기술·경영 지원 활동을 통해 친환경 가치소비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 기부,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활동 등
㊹ 형 (인도적 상생지원)	· (상생협력) 현지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UN이 지정한 지속 가능발전 17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기부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활동 등

사업구분	사업내용
© 형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영 기반 구축)	· (글로벌 사회책임경영 이행 확대) - 국내 기업 · 기관 대상 ESG인지도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국내외 구직자 대상, 대내외 ESG 유망기업 채용상담회 개최 - 글로벌 ESG 활동이 우수한 기업 포상 지원 등
+ 형 (맞춤형 재난, 보건 · 의료, ODA 연계 프로젝트 사업)	· (재난 및 보건의료) 기후변화, 코로나19 심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요청받은 의료물품, 의료장비 등을 기부 · (프로젝트 연계) 개발협력사업(ODA, KSP, EIPP 등), 공공조달, 방산 (G2G) 등 프로젝트 연계 글로벌 ESG 활동 지원

· 수행 방식(G형의 경우, KOTRA 측에서 별도 상세 공고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예정)

사업구분	사업방식	세부내용	최대 지원 한도
© 형 ⑤ 형	(유형) 제품 · 장비 · 기자재 기부사업	우리 기업이 자사 제품 · 서비스를 현지에 기부 하여, 녹색 협력을 구축 하고, 현지 정부 · 바이어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	1,500만원 限
	(무형) 기술 ·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사업	우리기관 · 기업이 현지 정부, 발주처 등을 대상으로 기술 · 서비스 경험 전수 또는 교육을 제공하여 현지 전문 인력 양성을 돕고, 현지 정부, 발주처와 유대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구축	
	유휴장비 이전 및 기증	유휴 · 저활용 · 불용장비를 수리해 신흥국에 기증하고 산업표준 및 운영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신흥국의 산업 발전, 공공서비스 개선, 생산기술 혁신에 기여	5,000만원 限
+ 형	일반 구호 및 의료물품 기부사업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요청받은 긴급 구호 및 의료용품 기부 * 마스크, 손세정제, 진단키트 등	500만원 限
	의료기기 기부사업	코로나19 심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요청받은 의료기기 기부 * 산소호흡기, 의료 특수기기, 방역복 등	1,500만원 限

2. 지원 내용

· 기업지원금: 글로벌 ESG+ 사업 추진을 위한 선정기업에 직접 지원금 지원

- 기부 제품 운반 보관비 및 소요 기자재, 외부 강사 항공임/체재비/강의료, 교재제작비 등의 비용
 - ※ 회계법인을 통하여 기부 가치 평가, 사후 원가 정산 검토, 지원금 정산 진행(참가기업이 선 집행한 후 사업 종료 2주 이내 증빙 제출 시 외부 회계법인 검토 결과에 따라 KOTRA가 사후 정산하여 지급)
 - ※ 참가기업의 기부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하되, 제품 · 장비 · 기자재(유형) 기부 및 기술 · 서비스(무형) 교육 프로그램은 1,500만원 한도 내, 유휴장비 기부 및 지원사업은 5,000만원 한도 내 지원

· 현지 행사지원: 무역관을 통한 현지 글로벌 ESG 활동 지원

- 제품 기부 행사개최 지원(행사 대리 수행), 현지 언론홍보 등

· 미지원 사항: 사업 참가기업 직원의 출장 경비(유휴장비 이전 및 기증 방식 제외), 부가가치세 및 관련 세금

■ 신청기간

- (상반기) 1~2월
- (하반기) 6~7월

■ 신청방법

- KOTRA 웹사이트 내 회원 가입 및 글로벌 역량진단을 완료한 이후,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를 'csr@kotra.or.kr' 메일로 발송

■ 신청서류

- 제출서류

내용	공통 필수 서류	
	글로벌 역량진단 완료(KOTRA홈페이지- 지원서비스안내-검색창: 글로벌 역량진단)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1, ESG + 사업공동) ② 이전대상 장비 세부정보 (첨부 2, 유희장비 이전 · 기부형만 해당)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 3) ⑤ 최근 3개년도(2019~2021)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KOTRA경비 신청 내역에 따른 제출서류	
	운반보관비	운송비 복수견적
	소요기자재	기자재 사양 기재 및 복수 견적
	콘텐츠제작비	교재 · 콘텐츠제작 업체 복수 견적 (제품 단순 홍보 브로셔/영상 제작 불인정)
	외부강사 체제지원비	외부강사 강의계획서, 외부강사 이력서
	외부강사 강의료	(강의 시간 및 일수 기재 必)
	외부강사 항공임	항공임 복수견적
	수리비	수리비 복수 견적
	기부 내역 기재에 따른 제출 서류	
	기부제품	① 제품판매 단가표 ② 제조원가 명세서 ③ 제품/기술의 카탈로그 ④ 제품 장부가 증빙서류 (공문형식)
	내부직원 인력투입	항공임 복수견적
	그 외 참가기업 직접 부담비용	견적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가점에 따른 제출 서류	
	친환경 인증 보유 기업	보유 친환경 인증서

내용	공통 필수 서류	
	ESG 경영 기업	ESG 경영 공시 등 ESG 수행기업
	지방소재기업	참가기업 본사 소재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업 공모 마감일 이전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문의처

· KOTRA 개발협력실: 02-3460-7532, 7525 / csr@kotra.or.kr

08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 사업명

·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 주관부처

· 경기도

■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담당부서: 경기지원단

■ 사업목적

· 경기도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1:1 전담 수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히트상품을 창출토록 육성

■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액 2천만불 미만인 기업(분야 무관)

* 관세청 집계 직접수출(KITA 발행본) 증빙제출만 인정

우대 사항

- ①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 경기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필수) 및 공장등록증(공장만 경기도 소재인 경우 추가 제출))
- ② 혁신 기술/제품 보유 경우
 - 해외특허 등 증빙서류 제출
- ③ 고용우수기업 및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증빙서류 제출

③ 고용우수기업 및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증빙서류 제출

④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가 전체 매출액 50% 이상인 기업으로, 인증제출 필요(www.mctnet.org)

⑤ 신남방·신북방 정책연계(아세안·인도·CS등) 사업 계획 보유 기업

– 별도 증빙서류 불요, 사업신청시 계획서상 목표시장으로 판단

· 신남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부르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

· 신북방: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터키 등

** 소재, 부품, 장비 업종

– (소재, 부품)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 (장비) 소재, 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 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 유의사항: 당해연도 산업부 또는 중기부 수출바우처 '선정' 기업은 자동 탈락 예정(바우처 사업 중복 선정 불가, 先발표 바우처 사업 우선 선정권 인정)

※ KOTRA에서 자체적으로 NICE 신용평가정보를 통해 기업(신용)정보 조회 및 선정평가에 반영(조회정보: 신용등급)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수출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KOTRA 및 민간 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경기도 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수출바우처 통합 메뉴판에서 선택

·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 내 기업분담금(70만원) 미납부시 선정 취소

단,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사업 당해년도 12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
우에 한하여 지원

※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수출바우처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행완료 확인 요청"등록

2) 총괄수행기관(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간 내 접수완료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완료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 지원한도(바우처 매칭펀드 총액)

– 기업당 2,357만원(현지 원금: 1,650만원(70%) + 기업부담금: 707만원(30%))

■ 신청기간

· 1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globalhit22@gmail.com

* 이메일 신청시,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pdf 및 엑셀로 저장한 후, 하나의 첨부파일로 압축해 송부(첨부파일명은 기업명으로 저장)

■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제출서류(활동계획서 등) 업로드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필수	해당시	비고
신청기업 제출서류	①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		이메일 접수처로 신청 양식 제출
	② 기업 기본정보 입력폼(엑셀)	○		반드시 입력 및 제출 필요
	③ 2022 참가 신청서 양식 묶음	첨부1. 참가신청서	○	직인란에 직인 날인 및 스캔본 송부 필수
		첨부2. 개인/기업 정보제공 이용동의서 및 법위반 부 존재 사실여부 확인서	○	
		첨부3. 해외진출계획서 및 활동계획서	○	
	※ 외부기 관 발급 서 류는 제출 일 3개월 이내분 발 급 요망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임을 증명해야 함	○	소재지가 경기도임을 증명 하는 서류
		최근 3개년 수출액 및 매출액 증빙 * 수출액: KITA 발행본(직접수출) 인정-관세청 집계 * 매출액: 홈텍스 재무재표증명원	○	수출액은 관세청 집계 및 KITA 발행본(직 접수출) 인정
		회사 소개 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	
		해외 인증 또는 특허 보유시 관련 증빙		○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인증서		○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
		소재 · 부품 · 장비 전문기업 인증 (소재 · 부품 · 장비가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www.mctnet.org'에서 인증 발급

☐ 전화번호

- KOTRA 경기지원단: 031-206-5904, 5107 / 031-273-6908, 6038, 6903, 6037
- 수출바우처 웹사이트 온라인 문의: 수출바우처 웹사이트 → 커뮤니티 → 문의하기 → 새 문의 등록 → 문의유형 선택(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09 해외시장조사(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 사업명

· 해외시장조사(수출24 글로벌 대행 서비스)

■ 주관부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 담당부서: 해외진출상담센터

■ 사업목적

· KOTRA 127개 무역관을 통해 우리 기업에 해외 현장 및 시장 정보, 현지 마케팅 지원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기업

■ 지원내용

· 상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수수료(VAT 별도)
시장 알기	1.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 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150,000원/항목 (예:수요동향+ 경쟁동향 =300,000원)
	2. 맞춤형 해외시장 조사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섭외한 현지 전문가(또는 전문인력)를 활용, 고객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 조사 서비스	조사내용 및 조사 방법에 따라 개별 협의 통해 책정
	3. 현지 매장 방문 조사	국내기업이 희망하는 유사 제품군 판매 매장을 대리로 방문 하여 고객 요청사항 대리로 수행 ※ 판매자 혹은 방문 소비자 인터뷰, 유사제품군 display 현장 사진, 경쟁사 제품 포장 방식 등	450,000원 최대 2개 매장 방문 최소 인터뷰 3건 문항 최대 5개
	4.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되, 고객의 설문 타겟군 대상 (성별, 연령 등)으로 고객이 설계한 문항으로 설문 조사 수행	450,000원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구분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수수료(VAT 별도)
	5. *샘플 테스트 조사	설문(온라인, 유선, 방문 등) 방식으로 고객이 등록한 질문을 국내기업이 희망하는 설문 대상군에 샘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해 그 결과를 제공	450,000원 최대 10문항 최소 10개 회신 결과 제공
잠재 파트너 조사	6. 사업파트너 연결 지원	1.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업체 조사 2.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0,000원 (2~3개사 발굴 및 교신 지원)
	7. 거래선 관심도 조사	신청 고객이 보유한 해외 바이어리스트에서 귀사 제품 수입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	바이어 1개사당 50,000원
	8.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00,000원(3개사)
	9. 바이어 구매성향 조사	국내기업의 수출 희망 제품 취급 바이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구매 성향 및 제품의 현지 경쟁력 등 바이어 설문 조사 결과 제공	300,000원 최대 17문항 구성 5개사 회신결과 제공
글로벌 마케팅 대행	10.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1. 해외 세일즈출장 - 해외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3~4개사) 2. 해외 투자환경 조사출장 - 해외 투자 유관기관 상담주선(2개사 내외, 현지 한국 투자 업체, 투자 유관기관, 투자 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등 상담주선)	500,000원~700,000원 (일반) 1,000,000원~1,400,000원 (프리미엄) ※ 프리미엄: 직원 동행하여 통역 및 차량 지원 (KOTRA 주선 상담의 경우)
	11. 거래 교신 지원	초기 교신이 진행되고 있는 바이어와의 거래 교신에 회신 독려, 취지 전달, 부연 설명, 의사 확인 등이 일정기간 필요한 경우 지원 ※ 아프리카 등 대금결제 지연 등 애로 지원을 위해 현지 은행 거래교신 지원 포함	150,000원
	12. 샘플 대리 전달	국내기업 고객이 특정 대상의 주소지로 직접 샘플 발송시 오배송 및 지연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현지 무역관에서 샘플을 수령하여 해당 대상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 ※ 필요시 체험 피드백 확인 진행	150,000원 무역관까지 배송은 실비 부담
	13. *대리 면담 지원	국내기업이 희망하는 대상자를 무역관이 대리 면담 진행 ※ 면담 내용: 심층 면담 문항 등 고객사에서 제공	450,000원 기권택종인 바이어에 한함
	14. 바이어 실태조사	국내기업이 기접촉중인 바이어의 주소지로 현지 무역관이 직접 방문하여 간단한 현장조사를 수행하며, 고객 요청시 가능 여부에 따라 간단한 바이어(관계자) 인터뷰를 수행	450,000원 인터뷰 가능시 진행
	15. 전시회 대리 참관	국내기업이 희망하는 현지 전시회를 대리로 방문하여 고객 요청사항 대리로 수행 * 요청 아이템 카탈로그, 팸플렛 등의 정보 수집, 현장 분위기 파악을 위한 촬영, 참가 바이어 교신동의 바이어 명함 5매 확보 등	450,000원 100\$ 이상 입장료 실비 부담

* 표시된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샘플 테스트 조사, 대리 면담 지원 서비스는 신청 기업이 직접 설문 문항과 인터뷰 문항을 설계

·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함(증빙서류 제출 필요)

대상기업	적용 서비스	할인률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우수고용창출	15종 전체	20%	①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혹은 - 국민연금 홈페이지(minwon.nps.or.kr)에서 발급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발급
사회적경제기업	15종 전체	20%	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 발급주체: 고용노동부장관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800-2012) ② 소셜벤처: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등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소셜벤처 인증서류 - 발급주체: 기술보증기금 등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1544-1120) ③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경우 해당 기관 및 지자체에 제출서류 문의
우수방산	15종 전체	20%	· 방사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에서발급하는 사업 참여 실적 확인서 제출 (단, 대기업 제외)
소상공인	15종 전체	20%	①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 발급주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국번없이 136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

·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온라인 접수로만 신청 가능함(방문/전화/대리신청 불가)- 글로벌 역량진단(GCL test) 요청 팝업 창이 뜨면, 반드시 시행해야 본 서비스 이용 가능 (진단일 기준으로 연 1회 시행필수)
- 바우처로 이용시, 본 사이트 및 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으로 접속하여 두 사이트 모두 신청 필수
※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명 검색후 바우처로 구매
- 공정거래 위원회가 발표한 30대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2배 적용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KOTRA 웹사이트 내 해당 공고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해당 공고 세부사업보기 웹페이지 접속 후 세부사업별 사업신청 페이지 접속(지원사업에 따라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등의 작업 수반)
※ 바우처로 이용시, 해당 공고 세부사업보기 웹페이지 및 바우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두 사이트 모두 신청 필수(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명 검색후 바우처로 구매)

■ 신청서류

- 각 세부사업별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기타 요구 서류 등
 - ※ 해당 공고 세부사업보기 웹페이지 접속 후 세부사업별 사업신청 페이지 참고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해당 사업 신청시, 영문 혹은 한지어로 작성된 카탈로그 첨부(필수)
 - ※ 영문 카탈로그 미 보유시 접수 불가능(해외 현지업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 카탈로그 필수)
 - ※ 카탈로그가 없는 업체는 아래기관의 도움을 받아 카탈로그 제작을 선행 후 서비스 신청 요망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지원바우처 서비스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 온라인수출지원사업
- 각 지방자치단체(도청, 시청, 테크노파크 등)

■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34, 7346, 7337 /
na218@kotra.or.kr, byun@kotra.or.kr, ahhyun.lee@kotra.or.kr
- 증빙서류 제출: ob_josa@kotra.or.kr

10 무역사절단 외부협력사업

■ 사업명

· 무역사절단 외부협력사업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 코트라 및 시도, 지자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 사업목적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신청자격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 등 파견기관과 협업하여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 파견 또는 화상상담을 통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지원 및 마케팅 지원
- 신청비용
 - 개인 여행경비(숙박비, 항공임 등): 참가기업 자체 부담
 - 해외 사업비 예산: 파견기관 부담
- 지원사항
 - 수출 상품에 대한 관심국가별 시장동향 보고서 및 유망 바이어 발굴
 - 목표시장 잠재 바이어와 온·오프라인 상담회 개최
 - 수출상담 후속 지원
 - ※ e커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긴급지사화 등 사절단 상담 전·후 세부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진행절차

- 1) KOTRA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연간계획 확인
- 2) 사절단 파견기관(지자체 · 유관기관)에 참가 신청
- 3) 해외무역관 사전 상담주선 가능성 평가
- 4) 파견기관에서 참가업체 선정 및 사절단 파견
- 5) 해외무역관에서 1:1 수출상담회 개최
- 6) 해외무역관 후속지원

· 참고사항

- KOTRA가 정한 소정의 신청 절차와 참가업체 선정 절차 준수
- 참가기업으로 선정 15일 이후 참가 취소 금지 및 취소에 따른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소지 발생
- 현지 활동 기간 중 해외무역관의 지원 지침 준수 및 상담주선활동에 성실하게 참여 요망
- 제품의 홍보 및 상담 활동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 소지 발생

■ 신청기간

- 연중 수시(개별사업 일정에 따름)

■ 신청방법

- 기업 소재지에 위치한 KOTRA 지원단 또는 수출기업화팀(서울 · 전국대상 사업)으로 문의 요망

- 신청창구: 지자체, 유관기관 등 사절단 파견 기관 및 KOTRA 주관 부서

※ 지원단별 사이트

- 경기: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899?tabid=62>
- 경남: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899?tabid=1100>
- 전북: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899?tabid=1101>
- 인천: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899?tabid=1102>
- 광주 · 전남: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899?tabid=1103>
- 경기북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899?tabid=1104>
- 대전 · 세종 · 충남: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899?tabid=1105>
- 충북: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899?tabid=1112>
- 울산: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899?tabid=1111>
- 강원: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899?tabid=1110>
- 대구 · 경북: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899?tabid=1109>
- 부산: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899?tabid=1108>

■ 신청서류

- 신청서 양식도 각 무역사절단 사업에 따라 상이

■ 문의처

- KOTRA 사업 관련 문의: 1600-7119
- 무역사절단 관련 문의: 02-3460-7327(수출기업화팀)

11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수출플랫폼

■ 사업명

·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수출플랫폼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운영기관

· 고비즈코리아

■ 사업목적

·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마케팅, 해외바
이어 구매오퍼 사후관리 등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 지원

■ 신청자격

· 온라인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
확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
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가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2) 휴·폐업중인 기업

3)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4)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5)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기업별 수요 및 수출단계에 따라 공동 서비스 및 세분화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사업유형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한도
고비즈코리아수출지원 (온라인수출원스톱서비스)	· 고비즈코리아 플랫폼 입점 지원(공동) - 온라인 상품 홍보페이지 제작 - 기업 미니홈페이지(2차도메인부여) 제작 - 진성바이어 발굴 및 검색엔진마케팅 · 온라인마케팅 지원(기업의 수출단계별 세분화된 지원) - (1단계) 온라인 수출기반 지원(수출전략 컨설팅, 영문 카탈로그 제작, 제품리뷰 동영상 제작 등) - (2단계) 고도화된 마케팅 지원(해외전시회 대행 참가, 방한바이어 지원, 소셜마케팅 등) ※ 1단계: 첫수출 및 수출초보(직전년도 수출액 0~10만불 미만) ※ 2단계: 수출유망 ~ 수출강소(직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상) ※ 상기 내용은 예시로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이후, 세부내역 재공지 및 안내 예정	300개사	기업당 650만원 (자부담금 포함)
온라인구매오퍼사후관리	·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대응 · 인콰이어리 검증부터 수출 계약 후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의 무역업무 단계별 지원 ※ 고비즈코리아 상품 입점 필수 ※ '고비즈코리아수출지원' 선정기업은 '온라인 구매오퍼 사후관리' 자동 지원(기업 희망시) ※ '온라인 구매오퍼 사후관리'의 경우, 고비즈코리아(한글) 페이지 내 별도 바이어 오퍼 페이지를 통한 적합 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 예정이며, 거래 진행사항에 따라 별도 선정 예정	1,700개사 내외	무료

■ 신청기간

· 5~6월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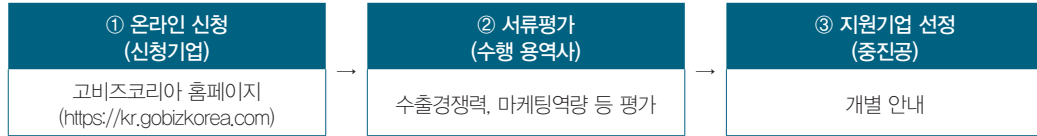
· 해당 공고 웹페이지 내에서 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 기업 공동인증서 필요(아래 그림 참고)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됨

- 사용 가능 인증사: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할인서비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이용 가능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사: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 추진절차: 신청기업의 온라인신청 이후, 수행 용역사의 평가를 거쳐 중진공에서 최종 선정



· 우대사항

- 수출첫걸음 기업
 -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내 수출지원사업 이력 없는 기업
- 사회경제적기업 및 소셜벤처
 -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 명문장수기업,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용기업 등
- 일자리평가(환경개선) 해당 기업(별도안내, 증빙서류 필요)

■ 신청서류

- ① 사업 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 ② 기업(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동의서*
- ④ 직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⑤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재작년 12월, 작년 12월 또는 작년 자료)
 - 단, 사업 당해년도 이후 창업기업은 직전달 기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⑥ 한글, 영문 카탈로그 및 기타 서류
- ⑦ 국내외 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등)
- ⑧ 일자리평가(환경개선) 증빙서류*
- ⑨ 사업자등록증명원
- 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①~⑤, ⑨, ⑩은 필수 제출 / ⑥~⑧은 보유(해당)시 제출

■ 문의처

· 고비즈코리아 고객센터: 1588-6234 / gobiz@gobizkorea.or.kr

12 고비즈코리아 글로벌쇼핑몰 입점판매

■ 사업명

· 고비즈코리아 글로벌쇼핑몰 입점판매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운영기관

· 고비즈코리아

■ 사업목적

- 글로벌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전체 과정 지원
- 입점 판매 경험 · 교육 · 컨설팅, 코칭 역량 등을 보유한 전문기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상품의 온라인 판매대행 및 직접수출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지원제외 대상]

1) 휴 · 폐업 중인 기업

2) 체납 중인 기업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3)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4)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

- 5)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 7)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

업종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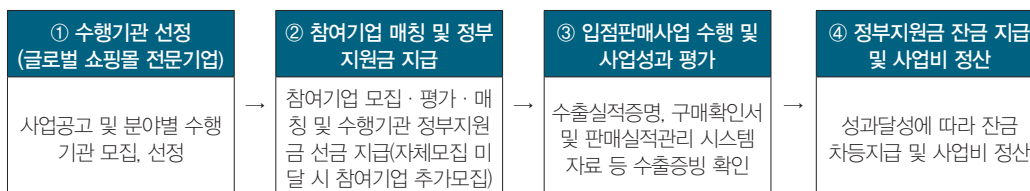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지원방식) 매칭 참여기업 당 280만원 내외 한도 정부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지급하여 참여기업 지원
 - (지원내용) 전자상거래 주요 시장별 온라인플랫폼에 참여기업제품 온라인 판매대행 및 직접상품 등록 및 입점, 마케팅 등 온라인수출 대행 지원
 - (판매대행지원) 전문기업이 참여기업의 상품선정, 상품페이지 제작, 상품리스팅, 마케팅, 배송, CS 등 온라인수출 전 과정 대행
 - (직접수출지원) 참여기업 대상 직접판매 교육, 단계별 컨설팅 및 테스트마케팅 등을 통한 계정 개설 및 운영 지원
 - (교육) 입점 → 상품페이지 → 마케팅 → 배송까지의 전 단계 교육
 - (상품리스팅) 전략상품 선정, 상품 이미지, 상세설명 및 키워드 발굴 등 상품 리스팅 컨설팅
 - (배송 최적화) 물류사 세팅 및 배송 프로세스 컨설팅
 - (테스트마케팅) 참여기업별 판매계정 개설, 상품 페이지 제작, 플랫폼 내· 외부 광고 마케팅 지원
- 모집분야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별 참여기업 모집2) 사절단 파견기관(지자체· 유관기관)에 참가 신청

구 분	글로벌 쇼핑몰	수행기관수	참여기업수
북미	아마존US, 이베이 등	4개사	890개사
중국	타오바오 등	3개사	635개사
일본	아마존JP, 라쿠텐 등	2개사	490개사
신남방	쇼피, 라자다, 쿠팡 등	1개사	235개사
소 계		10개사	2,250개사

※ 북미, 중국, 일본, 신남방 등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플랫폼 및 자사몰 등에 온라인 전문셀러를 활용한 중소기업 유망제품 입점 및 판매 지원)

· 추진일정



· 성과 우수 참여기업 우대지원

- 중진공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내 상품정보 등록 및 연계 지원(참여기업 상품에 대한 인콰이어리 발굴 및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중진공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사업의 O2O 연계 지원

■ 신청기간

· 3월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웹사이트(<http://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사업신청 시 주력시장과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추후 평가를 위해 추가서류 요구 가능
- 1) 참여기업 신청서(사업신청 시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작성)
- 2) 제품 카탈로그(국문, 현지어(보유 시))

- 3) 신용정보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동의서
- 4) 기업정보활용동의서
- 5)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 6)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7) 참여기업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
- 9) 최근 2개년 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본)
※ 해당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기업(신규기업 등)은 작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10)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 11) 최근 2년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직 · 간접수출 발급분)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77, 9779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전산관련 문의): 1588-6234 / gobiz@gobizkorea.or.kr

13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전시회

■ 사업명

· 고비즈코리아 온라인전시회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운영기관

· 고비즈코리아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전용 온라인전시관 구축 후, 바이어 매칭 및 화상상담 등 온·오프라인 연계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

■ 신청자격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① 체납 중인 기업(대표자)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 지원 위원회(신용 회복 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④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 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 ⑥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 · 사치 · 향락,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

업종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 · 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 · 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지원내용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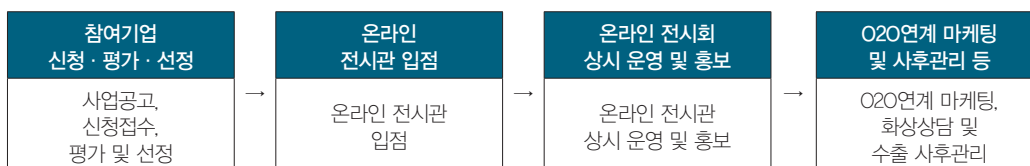
- 1) (온라인전시관 입점 및 마케팅) 고비즈코리아 및 민간 글로벌 B2B플랫폼 온라인전시관 입점 후 바이어 대상 홍보 · 마케팅 지원
※ 민간 글로벌 B2B플랫폼: 알리바바, 글로벌소시스 등
– 검색엔진마케팅, 라이브커머스, SNS 활용 마케팅 등 지원
- 2) (O2O연계지원)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 내 공동부스를 설치하고 온라인전시관 내 특별관을 구성하여 O2O 연계 마케팅 지원
– 온라인전시관을 활용한 사전마케팅, 무역전문가를 활용한 해외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3) (수출지원/사후관리) 인콰이어리 발굴, 무역실무 및 수출컨설팅 지원 등
– 진출 국가의 인콰이어리 발굴 및 검증, 화상상담 등 지원

– 온라인전시관을 통해 확보된 수출에 대한 무역실무, 수출컨설팅 지원

· 업체부담금: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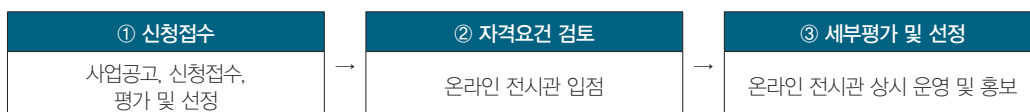
※ 전시 마케팅을 위한 전시회 현장 참가 가능(참가비용은 업체 자부담)

· 추진절차



· 선정방법: 자격요건 및 활용계획 등을 심사하여 최종선정

〈참여기업 선정절차〉



·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절차

①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 ②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③ 메인페이지 중간에 있는 ‘온라인 전시회’ 배너 클릭 → ④ 화면 상단 ‘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 ⑤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1~2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고비즈코리아 사이트(kr.gobizkorea.com))

■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활용콘텐츠* 신청서

* 활용콘텐츠: 온라인전시회에 활용할 보유 중인 콘텐츠

②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⑤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전년 12월, 전년 12월)

⑥ 최근 2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⑦ 서류평가 가점항목 증빙서류(해당시)

⑧ 사업자등록증명원(홈텍스 발급)

※ ⑧~⑫: 원클릭서비스(반드시 'www.one-click.co.kr'을 통해 접속 후 제출)

⑨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기업: 기업 / 개인기업: 대표자)

* 유의사항: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사전 등록 후 → 원클릭 통해 제출 필요(공동대표자일 경우 각 1부씩 모두 제출)

⑪ 최근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⑫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7) 참여기업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해당시)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

9) 최근 2개년 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본)

※ 해당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기업(신규기업 등)은 작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10)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11) 최근 2년 수출실적 증명원(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직 · 간접수출 발급분)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사업문의): 055-751-9757, 9797, 9768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전산관련 문의): 1588-6234 / gobiz@gobizkorea.or.kr

1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으로 분류됨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 실적에 따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로 분류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운영하고 있음

	주관부처 (운영기관)	유형		신청자격 (매출/수출 요건)	지원내용	쪽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중기부 (중진공)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중소 (수출)10만불	운전자금 (5억원, 물류비 가능) 융자	106
			수출기업 글로벌화	중소 (수출)10만불	시설자금(20억원), 운전자 금(10억원, 물류비 가능) 융자	111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중소 (-)	시설자금(30억원), 운전자 금(5억원) 융자	116

14-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사업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 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신청자격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 이때,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수출 중소기업)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 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휴폐업기업, 세금체납기업 등

■ 지원내용

(참고)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시설자금)

용 도	세부 내용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사업장(공장) 内の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용 도	용자 범위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 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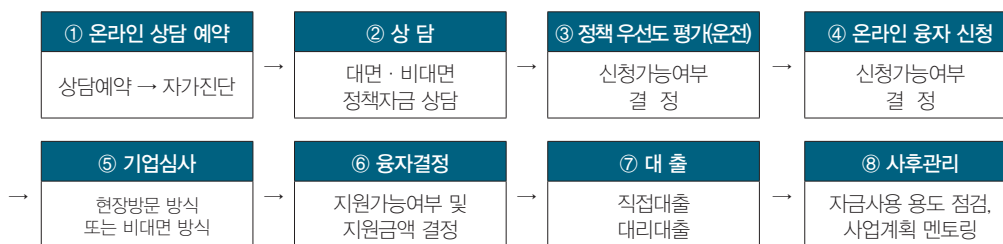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 타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 신청기간

- 1연중 상시(예산소진시까지)
 - ※ 각 지역 본부별, 세부 사업별로 예산 현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기간은 각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 ※ 중진공 웹사이트(중진공 웹사이트) →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지역본부 예산현황]를 통해 각 지역 본부별 예산 현황 파악이 가능하나 실시간 정보는 아님

■ 신청방법

- 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① 온라인 상담예약

-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 신청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 중소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② 상담

-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지)부와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④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심사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 하여 기업 평가등급(Rating)을 산정('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 기준 운영)
 - (기업진단) 기업으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 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여부 결정

⑥ 융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⑦ 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가능 기관(15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⑧ 사후관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 신청서류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의 신청요건 확인 서류 및 발급처는 다음과 같음

신청요건	신청요건 확인 추가제출 서류	신청요건 확인 추가제출 서류
(공통요건) 최근 1년간 10만불 미만 수출실적 보유 * 내수 기업은 비해당	– 수출실적증명서(신청일 전월말 기준)	– (직접수출) 발급처: 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www.ktspi.or.kr 2)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최근 1년 10만불 미만 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 (간접수출) 발급처: 한국무역정보통신 ulocal.utradehub.or.kr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물 수출 추진기업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선정 공문	– 확인처: 1) 중진공 지역본 · 지부 2) 중진공 온라인수출처 ☎: 055-751-9797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인증서	– 발급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 증빙서류 *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 발급처: 정부 및 지자체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온라인 신청 절차 관련): 1811-3655

※ 신청 · 접수, 지원대상 및 조건 등 문의는 각 관할 지역본부로 우선 문의 요망

※ 각 관할 지역본 · 지부 연락처는 중진공 웹사이트(중진공 소개) → [중진공 안내] → [오시는 길]에서 확인 가능

14-2

수출기업 글로벌화

□ 사업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 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신청자격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이때,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수출 유망기업)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수출 중소기업)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 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휴폐업기업, 세금체납기업 등

□ 지원내용

· (참고)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시설자금)

용도	세부 내용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용 도	세부 내용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사업장(공장) 内の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용 도	용자 범위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 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을 지원함

구 분	용자 조건
대출한도	(시설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 타	– 브랜드K 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신청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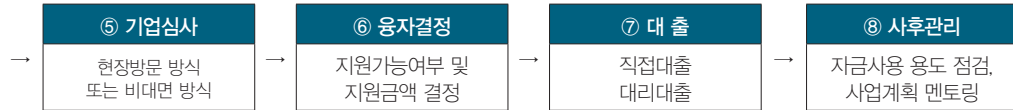
· 1연중 상시(예산소진시까지)

- ※ 각 지역 본부별, 세부 사업별로 예산 현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기간은 각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 ※ 중진공 웹사이트(중진공 웹사이트) → [지원사업] → [정책자금용자] → [지역본부 예산현황]를 통해 각 지역 본부별 예산 현황 파악이 가능하나 실시간 정보는 아님

□ 신청방법

· 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① 온라인 상담예약

-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 신청 희망기업은 사전에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재해 중소기업은 온라인 상담예약 생략 가능
-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② 상담

-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지)부와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 대면상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며, 비대면 상담 대상기업은 유무선 통화로 상담

③ 정책우선도 평가

-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 정책우선도 평가는 그린분야, 혁신성장분야, 지역주력산업,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④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심사

-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 하여 기업 평가등급(Rating)을 산정('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필요 시 별도 평가 기준 운영)
 - (기업진단) 기업으로 분석 및 해법을 제시하고 자금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 상황 등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수행여부 결정

⑥ 융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⑦ 대출

-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대리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융자하는 방식
 - ※ 대리대출 가능 기관(15개) :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⑧ 사후관리

-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점검

■ 신청서류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사업의 신청요건 확인 서류 및 발급처는 다음과 같음

신청요건	신청요건 확인 추가제출 서류	신청요건 확인 추가제출 서류
(공통요건) 최근 1년간 10만불 미만 수출실적 보유 * 내수 기업은 비해당	- 수출실적증명서(신청일 전월말 기준)	- (직접수출) 발급처: 1) 한국무역통계진흥원 www.ksipi.or.kr 2)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공통요건 충족기업	-	- (간접수출) 발급처: 한국무역정보통신 ulocal.utradehub.or.kr
신남방 · 신북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해당국가에 수출비중이 20% 이상	- 수출실적증명서에 수출대상국가 표 시	- 확인처: 1) 중진공 지역본 · 지부 2) 중진공 온라인수출처 ☎: 055-751-9797

신청요건	신청요건 확인 추가제출 서류	신청요건 확인 추가제출 서류
소재 · 부품 · 장비 제조기업	—	— 확인처: 용자공고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온라인 신청 절차 관련): 1811-3655
 - ※ 신청 · 접수, 지원대상 및 조건 등 문의는 각 관할 지역본부로 우선 문의 요망
 - ※ 각 관할 지역본 · 지부 연락처는 중진공 웹사이트([중진공 소개] → [중진공 안내] → [오시는 길])에서 확인 가능

14-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사업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목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단 제품을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 1)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 2)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3)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4) 국내 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6)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7)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8)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9)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10)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11)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12)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 지원내용

- (참고)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 (시설자금)

용 도	세부 내용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사업장(공장) 内の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 (운전자금)

용 도	용자 범위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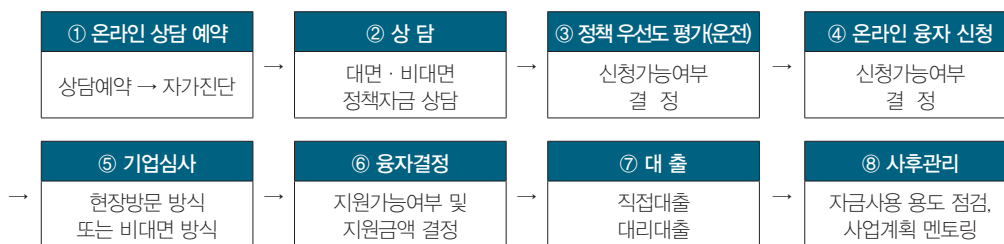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시설자금)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 접수



■ 신청서류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15 | 글로벌조달마케터

■ 사업명

· 글로벌조달마케터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목적

· 교육, 컨설팅, 국제기구 벤더 등록, 사전입찰 준비 및 투찰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8대 유망품목(서비스 포함) 기업 우대
 - 글로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국제기구 입찰경험이 있는 기업, 공고 전 UNGM(United Nations Global Marketplace) 및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등록한 기업 우대
- 아래의 경우 신청이 제외됨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8대 유망품목(서비스 포함) 기업 우대
 - 글로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국제기구 입찰경험이 있는 기업, 공고 전 UNGM(United Nations Global Marketplace) 및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등록한 기업 우대
- 아래의 경우 신청이 제외됨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재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기본교육) 국제기구 조달 전문가가 제공하는 국제기구 조달시장 및 입찰 프로세스 기본교육 진행
 - (지속가능컨설팅) 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지속가능경영 현황 분석, 전략방향 설계, 전략과제 및 성과목표 설정 등 컨설팅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추진기반 구축
 - (사전입찰준비) 필요시 기업별 컨소시엄 매칭 및 영문 홈페이지, 패키징 리뉴얼 등 국제기구 조달 입찰을 위한 사전준비 지원
 - ※ 업체별 영문 홈페이지, 영문 SMK(Sales Material Kit, 보유기술소개서), 영문 영상 SMK 등 맞춤형으로 지원
 - (입찰지원) 주요 국제기구 입찰사이트 등록, 입찰공고 매칭 및 입찰기구별·평가요소별 제출서류 작성 밀착 지원 (기업당 5건 이상)
 - (연계지원·후속관리) 입찰 계약 시 조달계약 컨설팅 지원
- 추진일정(아래 표 참고)

구분	3	4	5	6	7	8	9	10	11	12
(1) 기업모집·선정										
(2) 기본교육										
(3) 지속가능컨설팅										
(4) 사전입찰준비										

구 분	3	4	5	6	7	8	9	10	11	12
(5) 입찰지원										
(6) 연계지원 및 후속관리										

※ 사업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기간

· 3~4월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신청완료 후 확인 전화 요망
 - 접수 확인 전화번호: 042-476-2977

■ 신청서류

- 필수항목
 - 신청서 및 사업 참여계획
 - 정보제공 동의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면만 스캔하여 제출)
 - 사업자 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각 1부, 총 4개 서류)
 -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자료(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회사 및 제품소개서(기업 자율양식)
 - 4대보험 가입자 명부(본 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 시 제출서류(평가자료로 활용 예정)
 -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조달시장 교육/전시/상담회 참가 증빙자료, 벤더등록 화면 등)
 - 해외조달(수출) 진출 준비 관련 자료(영문 카탈로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설문지, 양성평등 이행서 등)
 - 국내·외 인증서 및 국제산업재산권 등록증
- (국내)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마크), 혁신조달인증, 우수조달기업인증 등
- (해외) ISO, FDA, CE, GOST(러시아 국가법에 따라 제정되는 산업 표준규격)등/ 국제산업재산권 특허, 의

장등록 등

- 해외조달 입찰 벤더 등록 증빙자료
- 해외조달 시장 진출 실적, 노력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GSA MAS(미국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시스템) 등록화면, GSA MAS 등록 진행 관련 증빙자료, 제안서 제출화면, 전시/상담회 참가 증빙자료 등)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영문신용평가보고서, 영문 재무제표 등)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5 / gooday@kosmes.or.kr

16 수출인큐베이터

■ 사업명

· 수출인큐베이터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글로벌사업처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의 기존 수출대행기관을 활용한 수출한계를 극복하고, 독자적 수출능력 배양을 위해 현지 주요 교역거점에 진출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초기의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정착토록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촉진

■ 신청자격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업종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업종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익업	731	수익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中	일반교과 및 입시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지원내용

·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해 사무공간, 마케팅 · 법률 · 회계 자문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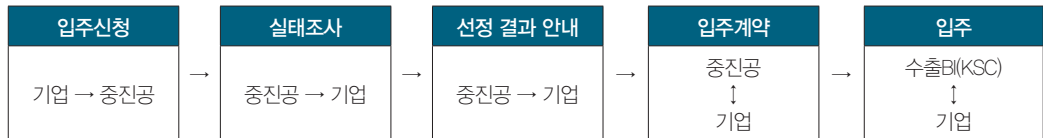
· 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	내용
전문컨설팅지원	- Marketing 전문가에 의한 시장정보수집, 분석제공 - 법률 및 회계고문의 자문
사무공간제공	- 현지법인 설립 및 수출활동을 위한 개발 사무공간 제공 - 사무용집기, 전화, 인터넷 전용선제공 - 회의실, 창고 등 공동 이용
서비스 및 행정지원	- 현지진출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유관기관 연계지원	- KOTRA 무역관, 수출보험공사 등 현지 수출 유관 기관 Network를 이용한 연계 지원
중소기업 수출사랑방 (공동사무실운영)	- 단기로 현지를 방문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임시 사무공간 및 상담장소 제공

· 서비스 가능 지역

구분	북미(5)					유럽(2)		아시아(7)							중국(5)					남미(2)		중동(2)		계
	시카고	LA	워싱턴	뉴욕	시애틀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도쿄	호찌민	하노이	싱가포르	뉴데리	방콕	양곤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시안	중칭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두바이	알마티	
독립실 규모	18	22	10	19	7	15	4	15	15	15	10	14	10	10	17	14	22	7	8	9	9	6	7	283

· 입주기업 신청 절차



· 입주부담금

- 입주부담금은 500만원이며, 월임대료부담(입주1년차 기준) 입주업체별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부과되며, 전화요금, 전기 등 관리비 실비부담임

보증금	임차료	입주기간
500만원 (퇴소시 환불)	임차료 실비의 1년차 20%, 2년차 50%, 3,4년차 100%	2년 입주 후 최대 2년 연장

- 입주업체 선정기준: 입주활동계획 타당성 및 지원효과, 사업추진능력, 현지 수출가능성(인큐베이터 마케팅고문검토), 기업규모 및 업력, 현지파견능력, 기존입주기업 품목과 경쟁·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업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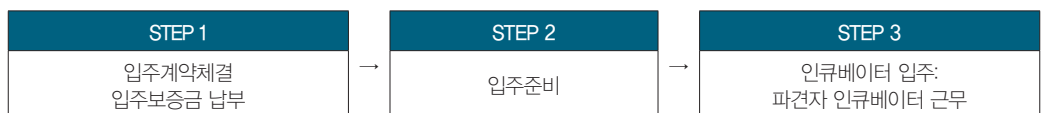
– 입주타당성 평가(현장실태조사) (65점)

- 경영평가(재무상태, 경영자 자질, 수출실적추이 등) (20점)
- 진출준비도(파견예정자 능력,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등) (25점)
- 일자리창출도(고용증가율, 고용창출 노력도) (20점)
- 가점(수출유망중소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등) (5점)

– 해외 시장성 평가 (35점)

- 시장진출 가능성, 거점별 품목 부합도 등 (35점)

· 입주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파견자 이력서(온라인 신청서 상에 첨부한 이력서 출력하여 날인 또는 싸인) 1부
 - 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
 - 파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www.ei.go.kr) 출력분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출력분,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청 직전 월, 전년도 동월 각 1부)
- 기타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 입주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중진공 평가자는 상기 이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수출실적증명원(최근 3개년도 및 현재 수출실적증명원)
- 무역협회 또는 은행 확인본 제출요망(이외 외화획득용품구매확인서 제출가능)
- 수출인큐베이터 신청지역이 속한 나라에 대한 수출실적을 수출실적증명원에 별도 표기 되도록 발급요망
(예: 시카고 수출인큐베이터 신청기업의 경우 미국 수출실적 별도 표기)
 -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1부
 - 국문 및 외국어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각 1부
 - 국제규격(ISO, UL, CE 등) 및 산업재산권(특허 등), 정부(유관)기관 수상내역 사본 각1부
 - 수출유망중소기업, INNO BIZ, 벤처기업 선정서 각 1부
 - 대표자 이력서 1부
 - 기타 회사 홍보자료 각 1부
 -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자본금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55-751-9685

17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 사업명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역혁신기관

■ 사업목적

·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 육성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전전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전년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e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 단, 혁신형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실질기업주 포함)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또는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
 -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의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원내용

· 지정기간: 선정일로부터 약 3년

· 지정기업 우대혜택

1) 지역자율 지원(지자체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원 내외 지원)

-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 · 품질개선 등
- * 당해년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기존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2) 해외마케팅 지원(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사업 우대)

사업명	사업설명	우대사항
수출바우처	디자인개발, 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13종 지원서비스 활용 (연간 최대 1억원)	쿼터제 운영*
자사물 수출지원	자사물소핑몰 리뉴얼, 재고관리 등 IT · 물류시스템, 해외 소비자 자사물 유입 마케팅 등 지원(최대 1억원)	가점 3점
온라인 수출기업 풀필먼트 지원	온라인 수출기업의 국내 · 외 물류거점 이용 및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 (최대 2,500만원)	가점 3점
대중소 동반진출 해외홍소핑 지원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홍소핑 네트워크를 활용, 해외 홍소핑 진출 지원	선정 우대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12개국 20개소의 수출인큐베이터(BI)를 운영하여 사무공간, 마케팅 등 지원	가점 5점

* 글로벌강소기업은 일정 쿼터 내에서 우선 선정

3)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할인, 감면/민간금융기관, 중진공)

-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기관
글로벌 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보험 요율 할인, 보증 한도 확대, 임직원 교육플랫폼 무상 제공	SGI서울보증
글로벌 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글로벌진출기업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무상 지원	신한은행
IBK 강소기업 프로그램	금리 감면, 여신한도 · 외환수수료 우대, 부동산 자문서비스, IBK컨설팅, 환위험관리 컨설팅, 외환동행마케팅 지원	IBK기업은행

지원프로그램	지 원 내 용	지원기관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 인하, 외환수수료 감면, 보증료 지원, 수출입 법률자문 및 컨설팅 제공	하나은행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종합금융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지원	우리은행
글로벌 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우대서비스 제공, 보증서 담보 전용 대출상품 보증료 지원, 기업 경영 컨설팅 무상 지원	NH농협은행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특별보증 제공, 보증료 지원 및 수출입 금융상품 금리 우대	KB국민은행
정책자금 융자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대출잔액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 참고

지원프로그램	지 원 내 용	지원기관
글로벌 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이행보증보험료 10%할인, 보증한도 확대	SGI서울보증
글로벌 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기업승계컨설팅, 글로벌진출기업 지원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신한은행
IBK 강소기업 프로그램	저리자금 지원(최대 1.0%p 감면) 및 여신한도우대	IBK기업은행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금리 0.5% 인하, 외환수수료 감면, 보증료 70% 지원 등	하나은행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종합금융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 등	우리은행
글로벌 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우대금리, 외국환 우대서비스, 기업경영컨설팅 등	NH농협은행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입 금융 특별 지원프로그램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특별 보증한도 지원 후, KB에서 우대 금리로 수출입금융 지원	KB국민은행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융자예산 3,000억원 → 5,000억원 확대 디지털수출, 소부장 기업 등 요건 완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R&D 지원사업(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 매출액 100억 이상 700억원 미만인 직 · 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 중소기업이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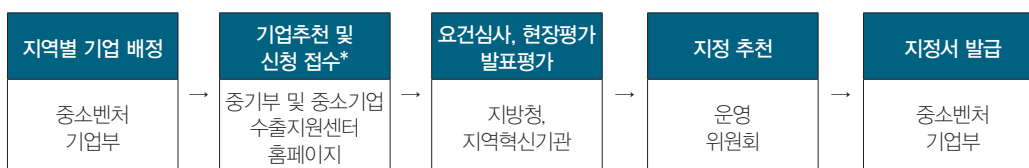
단계	추진방안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모집공고	- 각 지자체 개별공고
신청 · 접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접수: www.exportcenter.go.kr
평가	- 요검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기관
지정기업 추천 및	* 온라인접수: www.exportcenter.go.kr
사업계획서 제출	- 지역혁신기관 → 중기부 * 추천명단, 육성계획서 등 송부
지정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 평가절차: 요검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 (요검검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현장평가) 글로벌 역량진단
- (발표평가) 신청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해당사항 없음(비수도권 소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

· 지정절차



* 국민추천제(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희망기업 직접 신청(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는 지방청과 지역혁신기관이 공동 운영

· 기타 유의사항

-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우대혜택은 정부정책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없어지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정기업 혜택 중 해외마케팅 및 기술개발사업은 각 지원사업에서 정한 별도의 모집기간 및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하므로 관심기업은 사전 준비 요망
*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 지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정 제외 대상

- 1)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온라인 접수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2)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3)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신청기간

· 1~2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 신청주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 [사업신청]
 - * 신청지역은 본점 소재지 기준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신청서(원본 및 한글파일 각 1부)	—
2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분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홈택스 발급분
5	최근 4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홈택스 발급분
6	최근 4개년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7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8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	—

순번	제출서류	비고
9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11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필요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평가기관 요청시, 원본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필요)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http://sminfo.mss.go.kr>

문의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지역혁신기관	문의처
서울	02-2110-6337	서울산업진흥원	02-2222-3803
부산	051-601-5166	부산테크노파크	051-320-3531
대구경북	053-659-2242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96
		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44
광주전남	062-360-9194	광주테크노파크	062-602-7227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48
	064-753-8757(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76
경기	031-201-694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494 031-259-6493
인천	032-450-1132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16
대전세종	042-865-615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53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46
충남	041-415-0605	충청남도경제진흥원	041-539-4523
울산	052-210-0063	울산경제진흥원	052-283-7132
강원	033-260-1675	강원도경제진흥원	033-749-3346
충북	043-230-5388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53
전북	063-210-6485	전북테크노파크	063-219-2137
경남	055-268-2565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4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기관) : 055-751-9722 / 055-751-9772

18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사업명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선정 시 우대사항
 - 동 사업 선정기업에 대해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지원시 가점(5점) 부여
 - * 단, 동 사업 R&D와 중복되지 않는 제품이거나 인증의 종류 또는 국가가 다른 경우에 한해 적용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 지원
 -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75%이상 → 80% 이상으로 완화 및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1.5억원 이내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글로벌강소기업은 일정 쿼터 내에서 우선 선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50	3.75	33.75	37.5	187.5
총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	-	-	20	100

■ 신청기간

· 1~2월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사업세부 공고 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 과제접수 매뉴얼: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털서비스 → R&D고객센터 → IRS사용매뉴얼
→ [IRS R&D 통합업무포털 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 가능.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 완료시간(종료일 18:00시) 이후에 “제출”이 되지 않으면 접수 불가

· 신청절차: 연구개발계획서 및 각종 제출서류 사전 준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온라인 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	최종 확인 및 제출

① 1단계: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모든 참여연구원의 회원가입후 연구자 등록 및 기관 등록 필요)

② 2단계: 항목별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 · 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각 항목별 입력 및 파일 업로드

③ 3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 2단계 완료 후 최종확인 및 제출(신청 · 접수 완료)

-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 제출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하므로, "최종확인"을 통해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후 "제출"
- ※ 접수 완료시간(종료일 1800시) 이후에 "제출"이 되지 않으면 접수 불가

· 선정절차: 업체 신청 이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를 거쳐 선정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면평가는 과제 선정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가능

· 가점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5점까지 우대. (단,「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가점

분야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 장비 (최대 5점)	①	「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②	「소재 · 부품 · 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③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⑥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⑦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 2에 따른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분야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인력, 고용 (최대 2점)	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필)
	⑩	마이스터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 협약서
	⑪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⑫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⑬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⑭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최근 5개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⑮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⑯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 승인 및 연계 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⑱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⑲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⑳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	· 브랜드 -K 선정기업	2점	브랜드-K 인증서 (중소기업유통센터 발급)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인증획득 완료기업 * 단, 동 사업 R&D와 중복되지 않는 제품이거나 인증의 종류 또는 국가 다른 경우에 한해 적용	2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완료 보고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발급)
	· 조달청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유망(G-PASS기업) 지정기업	1점	G-PASS기업 인증서 ((사)한국G-PASS기업 수출 진흥협회 발급)

* 분야별 최대 가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필수 제출서류

–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 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
		본문2	○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 · 조회) 동의서		○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 ○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요청서		○

– 세부사업별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 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②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③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
④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
⑤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⑥	연구시설 · 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 · 장비인 경우 작성		○
⑦	연구시설 · 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 장비인 경우 작성		○
⑧	연구시설 · 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 · 장비인 경우 작성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 기업협력사업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663

19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 사업명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신청자격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업종코드: C10~C34)

· 신청마감일 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

식으로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전시회 참가	- 국내 · 외 전시 · 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3,000만원 (80%)	750만원 이상 (20%이상)
온라인마케팅	- 국내 · 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오프라인 매장입점	- 국내 · 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입점비 (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 상품페이지 디자인비용 - 기업 · 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홈쇼핑 · TV광고영상 제작 · 송출비 지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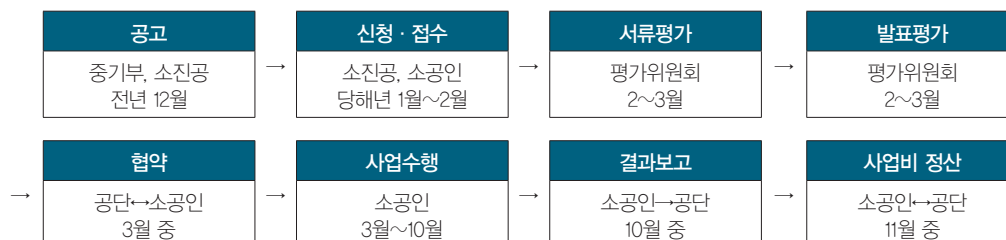
· 가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사회적 경제기업 (3)	사회적 경제기업에 해당되는 소공인 - (유형) ①협동조합, ②(예비)사회적기업, ③자활기업, ④마을기업 중 1개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 (또는 신고필증)
2	백년소공인 (3)	중기부에서 선정된 백년소공인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3	집적지구 소공인 (2)	도시형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4	풍수해보험 가입자 (1)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5	첫걸음 소공인 (3)	사업의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해당여부 검토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無)

· 추진절차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 · 접수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서만 가능
 -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사업신청 매뉴얼 필독 후 신청접수 권장
 - ※ 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능하며, 제출서류 및 정보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은 하지 않음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첨부
 - ※ 개인회원으로 홈페이지 가입 시 반드시 사업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권한 미 부여시 휴 · 폐업, 체납여부 등 온라인 자격 검증이 불가하여 정상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필수서류(소공인 확인서류, 신청서, 제품설명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제품설명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서류상 기재착오 · 연락두절 · 신청자 미확인 · 안내문 미수치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되는 의사사항 이행 필수
 - ※ 진행절차: 사업신청 → 사업등록 → 교부 → 집행 → 정산 → 반납 → 정보공시 ※ 본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교부 등 전 과정 진행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기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선정 · 지원 취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 · 지원 취소

■ 신청기간

· 1~2월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 · 접수

구분	내용
사업조치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신청 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클릭 - 공모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2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

구분	내용
신청서 제출	- 공모사업찾기 → 공모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검색 -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 후, 우측상단 [신청서작성]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자격요건확인], [첨부파일 제출] 등 각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 클릭하여 접수완료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

* e나라도움 신청대상은 회원가입(사업자 권한부여)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 요망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작성 서류		- 〈서식1〉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 〈서식2〉 신청서 - 〈서식3〉 사업계획서 (5장 이내) - 〈서식4〉 제품설명서 - 〈서식5〉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고 내 서식 확인
사업자 등록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업태: 제 조업 必)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소공인 확인 서류①		· 매출액 · 업종 확인서류(아래 4개 서류 중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 · 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주업종 영 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소공인 확인 서류②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을 경우,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필수			
소 공 인 확 인 서 류 ③	상 시 근 로 자 확 인 서 류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아래 4개 서류 중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1577-1000)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소 공 인 확 인 서 류 ③	상 시 근 로 자 확 인 서 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 예시 - (업력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 (업력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기업 운영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 - (업력 12개월 미만)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의 자료 제출 - (업력 1개월 미만) 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가점서류		·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8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2-481-8923, 4576

20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사업명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담당부서: 수출인증사업단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신청자격

- 지원인증 대상
 - (일반인증) 474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 공고문 붙임파일에서 지원대상 인증 확인 가능
 - ※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11종): NTEP(미국), Sustainability Certification(국제), U.S Food Equipment Certification(미국), CARB(미국), N-PTI(네덜란드), JPEX(일본), BRAZIL NR(브라질), IEC 61850(국제), ICAO(국제), OCPP 1.6(국제), STANAG(국제)
 - (ESG·탄소중립 인증) 52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 공고문 붙임파일에서 지원대상 인증 확인 가능
 - 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신청자격: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재기업은 지원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동 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있는 기업
 -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2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 동 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526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일반인증 474개, ESG·탄소중립 신규인증 52종

- 지원한도
 - (일반인증)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ESG·탄소중립 인증) 일반인증 한도 외 기업당 최대 2건의 인증지원,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추가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구분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총사업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일반	4건	연간 100,000	70%	50%	공고문 내 붙임 참조
ESG·탄소중립인증	추가 2건	추가 50,000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 심사비: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 법정대리인 선임비: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료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단, 고비용인증 제외)

※ 공고문 내 붙임 참조

- (고비용인증) 신청 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지원요구액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
- ※ (신설)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은 지원제외

■ 신청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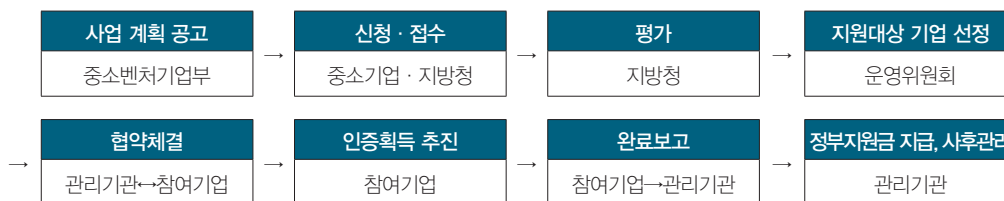
· 전년 11~12월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s://www.smes.go.kr/globalcert/>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추진절차



■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웹사이트 주소: <https://www.smes.go.kr/globalcert/main.do>

- 사업신청서 1부(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증빙이 불가한 경우 전년도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전산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전산 업로드)
- (고비용인증 신청)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전산 필수 업로드)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스마트진단시스템에서 작성 후 전산 업로드, <https://kdoctor.kosmes.or.kr/>)

· 선택 제출서류: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인증획득건수	- 현재 보유중인 인증 중 유효기간 내 인증만 인정 ※ 동일한 인증은 1건으로 인정함 ※ 공고된 해외규격인증(526개, ESG·탄소중립 인증 포함)에 한함
	수출계획	- 수출계획서(사업운영지침 별도 서식참조) 작성 제출 ※ 필수 첨부서류: 수출계약서, 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바이어레터 등 포함 ※ 계약서 작성일자 기준 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한함
수출성장 및 다변화	수출증가율	- 제출생략 ※ 관세청 미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 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별도 제출
	수출실적 증가	
	신규수출국가 개척 도전기업	- 제출생략
수출의지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 수출관련 (해외인증포함) 교육 이수	- 교육 수료증 제출(전년, 당해년 교육(온라인) 수료증)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수출 전담조직 보유	- 조직도(인력현황포함), 전담 직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주관기관이 작성한 참가확인서 1부(전년도 및 당해년도에 한함) ※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지침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해외지사 보유기업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수출준비 활동	- 외국어카탈로그 사본1부, 홍보실적 확인용 온라인주소 기재(자사 홈페이지, 외국어 SNS, 외국어 쇼핑몰링크 등), 해외포털사이트 외국어 광고 캡처본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 제출생략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가점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AEO공인기업	- 관세청에서 발행한 AEO공인인증서 1부
	K-방역/바이오 관련품목 신청기업	- K-방역/바이오 품목 설명자료 (공고문 내 붙임 작성 제출)
	- 브랜드 K 기업 - 소재 · 부품 · 장비(강소기업) -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 위원회 협력 (상생) 모델 승인 기업 - KSC 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 스마트공장구조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 · 부 · 장기기업 -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신남방 · 신북방 인증 신청기업 - ESG · 탄소중립 인증 신청기업	- 제출생략

■ 문의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아래 표 참고)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0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지방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백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대구 · 경북지 방청	053)659-2244	053)626-87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광주나라키움통합청사
광주 · 전남지 방청	062)360-9192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광주나라키움통합청사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수출 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융합지원센터 2층
인천지방청	032)450-1136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 · 세종지 방청	042)865-6107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지방청	041)415-0678	041)415-2856	(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융합지원센터 9층
울산지방청	052)210-0062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내 1층)
강원지방청	033)260-1673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27	043)235-2492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경남지방청	055)268-2566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전북지방청	063)210-6485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제주 수출지원 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21 K-BUSINESS DAY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

■ 사업명

· K-BUSINESS DAY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사업목적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규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의 수출지원

■ 신청자격

· 다음 품목에 해당하는 국내 수출중소기업
※ 지원품목: 소비재(K방역/바이오 · 헬스, 생활용품, 뷰티, 식품 등) 및 산업재(전기, 전자, 기계 등 산업재, 소재 · 부품 · 장비)

■ 지원내용

· 지원사항: 무료지원
※ 1개 참여기업당 2~3개 이상 유효바이어를 매칭 하여 참여기업에 바이어 정보 제공 및 1:1 온라인 화상상담 추진을 통한 수출성과 도출 예정
※ 참여 바이어 규모: 국내기업기준 1개사 당 2~3개사 바이어(중복제외)
※ 참여 바이어 정보: 바이어 기본정보(회사 홈페이지, 업종, 취급품목, 구매력/구매규모 등), 특징, 바이어 담당자 정보(성명, 직위, 이메일, 개인 연락처 등), 바이어 요구사항 등

1) 참여기업-해외바이어 1:1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 지원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화상 수출상담 지원
- 화상상담 전문 통역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언어 지원
- 화상상담 시간은 1시간 이내(필요시 연장 가능)
- 순차 통역, 상담일지 작성, 상담화면 캡처(또는 녹화, 사진촬영)

2)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해당 예산 한도 내 지원

– 화상상담에 필요한 e-카달로그, 제품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3) 샘플발송비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해당 예산 한도 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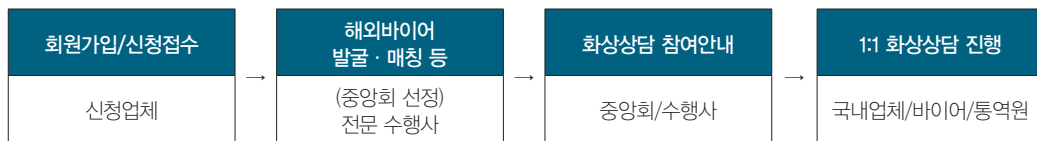
– 화상상담에 참여한 바이어 요청건에 한해 샘플 발송비 지원

· 참여기업 선정 기준

– 신청기업 대상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취합/정리하여 선정기준을 종합검토 하여 수출성과가 기대되는 업체로 우선 선정 예정

- (시장성 평가 결과) 현지 진출 가능성, 전문가 의견, 경쟁제품 현황 등 종합 평가
- (수출실적) 현지 시장 수출 이력 여부, 수출액 등
- (제품 및 기술 경쟁력) 현지 시장 진출에 따른 각종 인증, 인허가 사항 보유 여부
- (수출역량) 홍보콘텐츠(카달로그, 영상 등) 및 수출전담인력 등 보유여부

· 진행절차



· 사업 참여 세부 안내

– 신청기간 내 참여 기업이 사업 신청 후, 신청 기업의 상담품목, 타깃 시장 등에 대해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 등 상담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세부 일정 등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체에 개별 안내 예정 (2월 초중)

■ 신청기간

· 전년 10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공고 내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사업내용 확인] → [(하단)신청하기] → [로그인(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 [(하단)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 제출서류

– 회사소개서(국문/영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제품 카탈로그(국문/영문)
- 수출실적(수출액) 증명서
- 제품, 기술 관련 각종 인증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유 기업, 해외규격인증 보유기업 (CE, UL, CCC 등), GD(Good Design)마크 등 정부인증 우수디자인, NT, KT, EM, 싱글PPM, GQ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2124-3294 / myth0308@kbiz.or.kr

2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 사업명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시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 등 지원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 도모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 범위 내로 선발)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지원항목에 대해 사후 실비 지원
－ 기업당 해외전시회 1회, 최대 500만원 내

· 지원항목
－ (1. 해외전시회 직접비용) ①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부스임차료(필수),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② 온라인 해외전시회: 전시회 참가비(필수)
※ 해당년도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예를 들어, 2022년도 개별참가지원 사업의 경우, '22.01.01. ~ '22.12.31.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해 지원함)

※ 현지 법인·에이전시를 통해 참가하더라도, 국내기업이 주최사와 직접계약 시 지원가능

－ (2. 전시품 및 샘플 운송비용) ①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편도(수출) 해상/항공 전시물품 운송비('국내 반출 → 해외전시장 반입'의 수출통관 기준, 9sqm 당 1CBM 한도 지원), ② 온라인 해외전시회: 온라인 상

담 바이어에게 발송하는 샘플 운송비

※ 지원항목 중,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 (3. 해외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비용) 온/오프라인 해외전시회 공통,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광고 게재, 현장 바이어 매칭 서비스 등

※ 지원항목 중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 (4. 부스 대리 운영 MD 섭외비용) 코로나로 입국이 불가한 국가의 오프라인 해외 전시회 참가시

※ 지원항목 중,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 (5. 해외전시회 매물비용) 주최사에 의한 전시회 개최 취소 또는 차년도로 연기되는 등의 경우

※ 해외주최사에 의해 이월/반환되는 비용을 제외한 실매물비용에 한해 정산

- (6. 외국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비용) 해외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기업 및 상품 홍보영상, 전자 카탈로그 (홈페이지/모바일용)

※ 지원항목 중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추후 변동가능, 변동시 안내 예정)

※ 별도 지정 검수기관을 통해 검수 통과된 건에 한해 정산(검수기관은 추후 안내 예정)

· 지원제외항목

- (전시회 간접비용) 항공임, 현지 체재비, 통역비 등
- (반송 및 초과 운송비) 전시물품 반송(수입: Return)비용, 전시품 운송 초과비용(9sqm 당 1CBM 지원기준)
- (핸드캐리 전시물품 운송비용) 개인 수화물, 운송사의 핸드캐리 운송비
- (참가신청 수수료)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의 수수료
-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 외화결제 시, 적용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 (송금/환전 수수료) 은행/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
- (기타) KOTRA 해외전시팀에서 지정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내용, 사후정산 간 한국전시산업진흥회(AEKI)에서 요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비용

· 지원금 교부 절차: 선(先) 전시회 참가(비용 완납), 후(後) 지원금 교부

- 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 사후정산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②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한국 전시산업진흥회(AEKI)에서 검토 → ③ 검토 완료시, 기업이 등록한 기업(법인)계좌로 KOTRA가 국고지원금 입금

※ 지원금 교부까지는 정산서류 검토 및 지출 행정처리를 위해 약 1~2개월 가량 소요

※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기타 참고사항

-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지연을 방지하고, 미선정 기업들에게 지원사업 참가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숙지 요망
- 1)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해외전시회만 지원 가능, 다른 해외전시회로 사후정산 등록 시 정산거절 및 사업선정 취소
- 2)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 신청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사업 해당년도 내 다른 해외전시회로 변경 가능**(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①,②항) 단, 기한(신청 전시회 개최일

전) 내 미변경 시 사업선정 취소

* 코로나로 인한 해외주최사의 전시회 개최 취소 및 개최 차년도 연기, 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자가격리 등)의 경우에 한함

**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전시회 변경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직접 신청

3) 신청 전시회의 폐막일 기준 3주(21일) 내 사후정산 등록이 필수이며 기한 내 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③항 3번)

4)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 교부 불가(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5조 ③항)

5)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 내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제출만 접수(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4조 ②항)

– 사업취소(아래 표 참고)

사업취소 사유 예시	적용 패널티
· 선정기업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 사업신청서 상, 작성한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에 대해 사후정산을 등록한 경우 · 전시회 폐막일 기준 3주 (21일) 이내에 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포함)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전시회에 대해 국고 지원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국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차년도 개별참가지원 사업 심사 시, 감점 (-10점) 반영
· 전시회 주최사에 의해 개최가 취소/연기(차년도)되거나, 천재지변에 의해 전시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 신청한 해외전시회의 개막일 4주 전까지 사업취소 의사를 공문으로 KOTRA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밝힌 경우 · 기업의 폐업	패널티 미적용

■ 신청기간

- 전년 12월(신청 저조시 수시 추가 모집)

■ 신청방법

-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 신청
 - ※ 기업에서 등록한 신청서류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보완가능

■ 신청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신청각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법인통장 사본
 - (선택) 별첨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추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선택적 서류 등

- 선정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판촉전(현장판매 위주의 전시회), 개인미술전, 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사업 모집 당해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 국내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선정 발표는 글로벌 전시 플랫폼에서 사업신청한 계정으로 로그인 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 [글로벌 전시 플랫폼 홈페이지 로그인] → [My Page] → [참가신청 현황]

■ 문의처

-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관련 문의(한국전시산업진흥회): 02-420-2042 / ex@akei.or.kr
- 글로벌 전시 플랫폼 시스템 및 로그인 관련 문의(KOTRA 해외전시팀): 02-3460-7256 / kth@kotra.or.kr

23 KITA 수출상담회

■ 사업명

· KITA 수출상담회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 신청자격

· 국내 제조기업, 수출 희망기업 등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상담회 참가시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통역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대상품목

– 소비자재(식품, 음료, 화장품, 생활용품, 농림수산물 등), 산업재(화학, 기계, 철강금속 등), IT 및 전자전기, 섬유, 의료용품, 콘텐츠 등 종합품목

※ 수출상담회별 주제(품목) 및 국가 등에 맞춰 참가기업의 품목 소싱을 희망하는 바이어와 상담주선 예정

· 지원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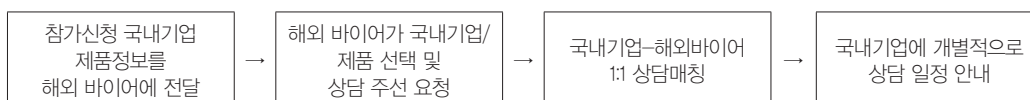
–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통역비, 샘플 운송 비 등(참가기업 부담비용 없음)

※ 단, 샘플 운송비는 한국무역협회 회비 완납한 회원사만 지원 한정(지원한도 및 절차 등은 참가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참가비

- 참가비는 무료이며, 바이어 수요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담 매칭이 어려울 수 있음

· 진행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세부 상담일정은 참가기업, 바이어 매칭 확정 후 선정기업에게 개별 통보
 - 연중 각 상담회 개최 시기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화상), 오프라인 및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등 탄력적으로 개최

■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영문 홈페이지 및 영문 카탈로그 제출 필수/미제출 시 바이어와 매칭 불가
 - ※ 제2외국어권 바이어와 상담 시, 해당국 언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보유 기업 우선매칭
 - ※ 국내 개최 수출상담회는 금번 사업 신청시 연중 바이어 매칭 시 상담을 주선할 예정이나 일부 해외에서 개최 예정인 사업은 별도 참가 신청 접수예정

■ 신청서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의 사업 신청 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해외바이어마케팅센터: 02-6000-5665 / vividk33@kita.net

24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 사업명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목적

· 해외인증획득 지원을 통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신청자격

·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인증신청 수수료 및 성능검사비용
 - (중소기업) 인증취득 비용의 75% 이내 지원(기업부담금: 인증취득 비용의 10% 이상)
 - (중견기업) 인증취득 비용의 50% 이내 지원(기업부담금: 인증취득 비용의 20% 이상)
 - ※ 기업당 최대 2건, 건당 1억원 이내
 - ※ 사업 당해년내 취득 인증 건에 한해서만 지원
 - ※ 협약 체결 후, 인증 취득 완료시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예산소진시까지)
 - 모집공고는 상반기 3~4월, 하반기 7~8월 게시되나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전자문서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18)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접속 후 신청
- 평가절차 및 사업비 지급
 - (평가절차) 사업공고 → 신청(수시 접수) → 지원 적정성 평가
 - (사업비 지급) 협약체결, 인증 취득 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기술요약서, 기업소개서 포함) 직인날인 사본 1부, 전자파일(한글)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해외인증기관 접수증(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확인)
- 견적서 및 수수료 완납증명서 각 1부(인증신청수수료, 성능검사비용에 한정, 컨설팅 등 기타비용 제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해당기업만 제출)
- 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도면, 회로도, 주요 부품리스트 각 1부
-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TÜV 등 각종 인증서 각 1부(해당기업만 제출)
- 해외바이어 요청자료 1부(단,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를 명시한 경우)
- 기타 평가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기업만 제출)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052-920-0613 / ksyen@energy.or.kr

25 | G-PASS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제도*

■ 사업명

· G-PASS기업(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제도

■ 주관부처

· 조달청

■ 운영기관

· 조달청,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 사업목적

·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해외 거점국가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따라 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하는 국내기업을 의미

■ 신청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견 · 중소기업
- 본 제도는 지정 평가시, 혁신조달기업에 가점 5점을 부여함
 - ※ 신청제외대상
 - －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에 있는 경우
 - － 그 밖에 G-PASS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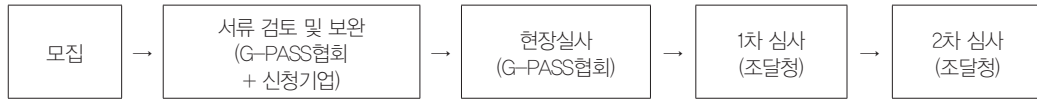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정범위
 - － 건설, 환경, 전기, 기계장치, 사무기기, 과학기기, 의료기기, 정보, 통신, 화학, 섬유, 공사, 용역, 전통문화

상품 등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신규 지정(5년) + 재지정 3회(15년, 기업의 재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 후 재지정) → 최대 지정기간: 20년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공공조달 관련 전시회 참가 시, 개별기업 부스 임차료 및 운송비 지원, 정부 조달 수출컨소시엄 참가기회 제공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나라장터엑스포,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발주기관 및 해외조달 벤더를 초청하여 G-PASS 기업에 상담기회 제공
 - (해외조달시장 수출지원) 해외 현지기업과 1:1 매칭 상담회, 해외정부조달 입찰제안서작성 및 컨설팅, 조달벤더등록, 전략기업 육성사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등 제공
 - (국내조달시장 가산점 혜택 / A, B등급만 해당)
 - 1) 우수조달물품 신청 신인도 가점(1점),
 - 2)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적격심사 '정책지원' 신인도 가점(1점)
 -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 시 수출기업지원 항목 우대(5점)
 - (조달청 유관기관 지원사업 참가 가산점 부여)
 - 1) 특허청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 시 가점(2점)
 - 2) 한국환경공단 운영 '물산업클러스터' 시설사용료 30% 인하
 - 3)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e-B2G)사업 지원 시 가점(3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에 G-PASS기업마크 부착(A, B등급만 해당)
- 지정효과
 -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 공공조달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및 수출 컨소시엄 등의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조달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대
 - (해외조달시장 정보 습득) 해외입찰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조달시장 정보를 습득하고 매년 20여회 이상 개최되는 유망국가별 조달시장 설명회, 성공기업 멘토링, 주한미군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심 지역의 정보를 습득
 - (글로벌 마케팅 기회 제공) 글로벌 코리아 마켓 (www.globalkoreamarket.go.kr)을 통하여 해외 수요기관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 기회를 제공
 - (기업별 맞춤형 상담 지원) 해외조달정보센터의 전문인력을 통해 해외조달벤더 등록 절차 및 수출 전반에 관한 기업별 맞춤 상담 제공

· 지정절차



- 1) 신청서류 접수(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검토)
- 2) 현장실사(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
- 3) 1차 심사(신청서류, 현장실태조사서로 심사기준에 따라 해외 조달시장 진출 노력, 해외 조달시장 진출 의지 및 가능성 평가)
- 4) 2차 심사(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1차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G-PASS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분기별 1회 지정)

■ 신청방법

- G-PASS기업 지정신청서, 신청기업 기초자료, 기타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이메일로 제출(E-mail: contact@gpass.or.kr)

■ 신청서류

번호	제출 필수 서류	비고
1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
2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노력 관련 증빙자료 ※ 해외조달시장 수출계약서, 해외조달시장 벤더등록, 해외입찰 제안서 제출, 해외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증빙자료 등	재지정의 경우, 직전 지정 기간에 비해 변동된 사항에 한해 제출
3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자료	
4	해외 발급 인증 증빙자료	
5	국제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증빙자료	
6	그 밖에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장이 요구한 자료	—

— (공통사항)

- 증빙서류가 제출된 건만 심사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심사하지 않음
- 수출실적은 신청 직전 3개년의 실적 제출
※ 예) 2020.7월에 신청 시 2017, 2018, 2019년의 수출실적 제출
- 각종 사업 참가실적은 신청 직전 3개년의 실적만 인정

※ 예) 2020.7월에 신청 시 2017, 2018, 2019년 동안의 참가실적만 인정

- (신규) G-PASS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 1호)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기타 증빙자료
- (재지정) G-PASS기업 재지정 신청서(별지 제 2호)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 문의처

-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042-724-6443, 7590
-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02-6203-7732 / contact@gpass.or.kr

26 해외조달시장 직접입찰 지원사업

■ 사업명

· 해외조달시장 직접입찰 지원사업

■ 주관부처

· 조달청

■ 운영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조달수출지원팀

■ 사업목적

·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전입찰제안서 및 본입찰제안서 작성 지원

■ 신청자격

·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중 · 소 조달기업 또는 G-PASS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기간 제
출마감일까지 입찰참가등록 하여야 함

※ 신청제한대상

－ 신청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부도, 파산, 휴 ·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참여기업 부담금: 아래 과업별 단가표에 참여과업별 부담금(∼최대 30%)

※ 계약금액 × 기업부담률(최대30%**) ÷ {(100% - 제안된 기업부담률(30%)}

※ 기업부담률은 입찰 제안자(사업수행 예정자)를 통해 최대 30%까지 제안 가능함

- ※ 기업부담률을 낮게 제시할수록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도록 제안요청 평가기준 마련. 부담률 확정시 사업수행사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사업착수 이전 신청철회 가능
- 참여기업(이하, '지원대상기업')이 수행사와 협의하여 수행할 과업이 합의되면 참여기업이 수행사에게 부담금을 납부
 - 조달청 부담금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되므로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실제 과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원대상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과업수는 3건 이내
 - ※ 3건을 초과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기업은 조달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별 단가표(예시)〉

(단위: 원)

과업* 구분	예상 과업 물량	비용부담 주체	
		조달청 부담금(최대)	기업 부담(최대 30%)
사전입찰제안서 작성 지원 과업	7건	4,300,000	1,842,857
본입찰제안서 작성 지원	8건	6,700,000	2,871,429
미국 GSA MAS Schedule 제품 등록	2개사	19,530,000	8,370,000

* 세부 과업 내용은 하기 「사업세부」 내용 참조 요망

· 사업 세부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전입찰제안서 작성 지원	- 사전입찰제안서 제출 대상기업의 역량분석 - 지원대상기업(예비기업) 명단(pool) 대상 입찰 또는 계약대상 품목확인, 참여 가능한 입찰에 대한 분석 및 응찰 기회분석하여 기업에 제공 - EOI Expression of Interest 입찰 의향서 작성 지원 - RFI Request for Information 사전정보 요청서 작성 지원
본입찰제안서 작성 지원	- 본입찰제안서 제출을 위한 기업 등록(등록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기업이 부담) - 지원대상기업(예비기업) 명단(pool) 대상 입찰 또는 계약대상 품목확인, 참여 가능한 입찰에 대한 분석 및 응찰 기회분석하여 기업에 제공 - 본입찰제안서 제출 대상기업의 역량분석 보고서 작성 - RFQ Request for Quotation 견적요청서 작성 지원 - RFP 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 ITB Invitation to Bid 입찰초청서 작성 지원 - 낙찰시 최종 계약체결이전까지의 관련된 업무 지원
[시범과업] 미국 GSA MAS Schedule 제품 등록	- 미국 GSA MAS Schedule 제품 등록 대상기업의 역량분석 - 미국 MAS 제품 등록 희망기업에게 적합한 미국 GSA MAS Schedule contractor 정보 제공 - 미국 MAS 제품 등록희망기업과 매칭될 미국 GSA MAS Schedule contractor가 확정되면 해당 계약자의 계약리스트에 제품 등록에 필요한 절차, 자료, 메일 수발신 등으로 통한 등록 지원 * 최종 계약단가나 인도조건, 미국 GSA MAS Schedule contractor의 수출대금 지급조건 등 최종 계약조건은 미국 MAS 서브 등록 희망 기업이 결정 - 미국 GSA MAS Schedule 제품 등록 관련 업무 지원

※ 단, 과업별 지원대상기업(예비기업) 명단(pool 30개사 내외) 대상 중 과업 진행에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선정기준

- 공고문 내 붙임의 기준에 따라 평가. 계량 평가점수(60점 배점)+비계량평가점수(40점 배점)를 합산하여 60점 이상인 기업으로 선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사의 사전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 기업 지정·관리규정」에 따라 평가 후 선정

· 기타유의사항

- 지원대상기업이 본 사업수행사와 협의하여 수행할 과업이 합의되면 기업 부담금[최대30%, 상기 '과업 별 단가표'참고]을 사업수행사에 납부
- 지원대상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 및 사업 수행사에게 알려야 하며, 본 사업을 통한 지원은 중단됨
 - ※ 단, 지원대상기업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철회하는 경우 발생 시 국고지원 부분은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년도 조달청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참여 시 감점(사업에 따라 5점~10점) 대상이 될 수 있음
- 후순위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탈퇴기업이 발생할 경우 추가 발탁될 수 있음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착수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 취소, 국고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참가신청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신청기업 기초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신청은 평가에서 제외됨
-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 기업 지정·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공고 게시일부터 선착 순(30개사 내외 모집시까지)

■ 신청방법

- [해외조달정보센터(<https://www.globalkoreamarket.go.kr/>) 접속] → [국내지원사업] → [‘2022년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기업 모집공고’ 검색] → [신청]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공고문 내 붙임 참조)- 서약서 1부

■ 문의처

-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042-724-6487

27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 사업명

·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 주관부처

· 조달청

■ 운영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조달수출지원팀

■ 사업목적

· 수출전략기업과 해외 현지 기업을 매칭시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해외 진출

■ 신청자격

·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 · 중견조달기업

－ 나. 조달청「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 관리규정」에 따른 G-PASS기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은 참가 신청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신청자격은 서류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음

· 신청 및 선정 제한 대상

－ 부도, 파산, 휴·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 신청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수출 전략기업 육성사업 참여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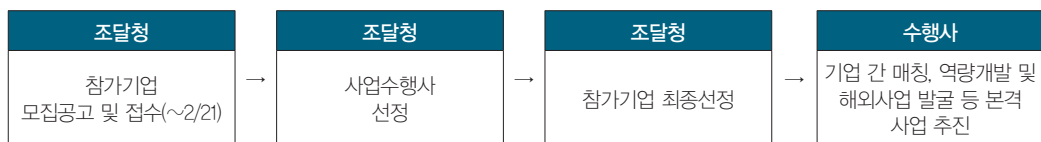
-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역량개발 교육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해외 현지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회 발굴 등 일련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수출전략기업 지원 내용(상세 지원 내용)

- 사업 수행사가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분석 및 전략 수립 후 협업가능한 해외기업과 매칭하고 해외사업을 조사·발굴하여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는 영역 사업
- 사업진행 단계별 지원내용(아래 표 참조)

사업진행 단계	수행 내용
참가기업 선정	- 수출전략기업 신청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가능성 분석 보고서 작성 - 수출전략기업 수출역량보고서 · 기업별 지원계획서 작성 및 해외 유망기업과의 매칭 작업
수출전략기업 역량개발 및 업무협약 체결, 법률 자문 · 검토	- 수출전략기업 역량교육(기술인증, 무역, 전략컨설팅 등) - 기업별 또는 과정별 세부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수출전략기업에게 제공 - 해외기업과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업무협약(수출 전략기업과 수행사 간, 수출전략기업과 해외기업 간) 체결, 해외기업 CEO 초청 등 - 분쟁대비 업무협약 법률자문 등
사업발굴	- 해외현지 시장조사, 제품의 경쟁성 조사보고서 등 - 해외정부조달 입찰참가 발굴 -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영업기획 및 사업발굴) 등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마케팅 강화 영업 활동 - 대형 프로젝트 입찰 및 제안서 작성 - 계약, 납품 등 사후관리 지원 ※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상설 자문체계 운영

· 사업추진 절차(추후 변동 가능)



· 선정절차

- (조달청) 공개모집 후 서류심사(신청자격, 신청제한 대상 등 확인)를 통하여 후보기업 선정
- (수행사)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간 수출가능성·역량분석 및 매칭 평가 실시 후 분석보고서 조달청 제출
- (조달청)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조달청 내·외부 평가위원(5인)의 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기업 선정

· 국내기업 선정기준

구분	국내기업
모집방법	공개모집, 모집기간 20일 이상(예정)
참가자격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에 따른 G-PASS지정 기업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중소기업

구분	국내기업
선정방법	서류심사(조달청) → 기업 역량분석 및 매칭평가(수행사) → 최종 참가기업 선정(평가위원 평가)
평가요소	수출실적, 경영상태, 수출역량, 협업가능성, 시장진출전략
평가위원	내·외부 평가위원 5인 이내
정부지원	시장조사 및 제안서 작성 등 소요비용의 85% 예산지원, 업체부담 15%
목표시장	EU, UN 등 국제기구,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동 국가 등
유망품목	기계장치, 전기전자, 의류기기, 건설 및 건설 자재 등

·평가기준

- 전문 수행사에서 작성한 후보기업 매칭평가 결과 및 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수출역량, 해외 기업과의 협업가능성, 해외진출 전략 등을 평가
-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최종 참가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되지 않은 후순위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탈퇴기업이 발생할 경우 추가 발탁
- 평가 세부기준

구분	국내기업	평가내용	배점
계량 평가 (30점)	수출실적 (15점)	공고일 전년 기준 최근 3년간 수출누계액 (단위: USD)	500만불 이상: 15점 300만불~500만불 미만: 14점 50만불~300만불 미만: 13점 50만불 미만: 11점
	경영상태 (15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비계량 평가 (70점)	수출역량 (15점)	- 전담조직 보유 수준 - 전담인력의 전문성 - 전담조직 관리 역량 - 국·내외 인증 및 국제 산업 재산권 등	매우 우수: 14~15점 우수: 12~13점 보통: 10~11점 미흡: 8~9점 매우 미흡: 5~7점
	협업가능 성(40점)	- 수출활동 실적 - 대표자의 수출의지 - 선정의 적정성 - 품목적정성, 가격경쟁력 등	매우 우수: 36~40점 우수: 31~35점 보통: 26~30점 미흡: 21~25점 매우 미흡: 15~20점
	시장진출전략 (15점)	- 수출추진계획의 타당성 - 실행가능성 - 사업참여 의지 등	매우 우수: 14~15점 우수: 12~13점 보통: 10~11점 미흡: 8~9점 매우 미흡: 5~7점
합 계			
가 점	G-PASS기업 여부		100점
	혁신조달기업 여부		+5점

※ 참고사항

- 1) 평가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2) 단, 수출실적 평가는 공고일 전년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함
- 3)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는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 계약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환율은 모집공고일 최초고시 기준 환율을 적용함
-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 6) 혁신조달기업은「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혁신제품)에 따라 혁신제품을 지정 받은 조달기업을 말함

■ 신청기간

· 1~2월

■ 신청방법

- 해외조달정보센터(<https://www.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접속 및 로그인 후,
[사업신청] → [국내지원사업] → [신청]
- 상기 방법으로 신청 불가시 직접 또는 우편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와 관련 증빙서류 일체(공고문 내 붙임 참조)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선정일에 제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차 정보제공 동의서(공고문 내 붙임 참조)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요망

■ 문의처

-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070-4056-7589

28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 사업명

-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 주관부처

- 조달청

■ 운영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조달수출지원팀

■ 사업목적

-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 신청자격

- G-PASS 기업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
- (신청제한)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인 경우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인 경우
 - '13~전년도 기간 동안, 해외전시회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경우(단, 코로나19로 인한 지원 포기는 제외)
 - 최근 연속 4년간 조달청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받은 경우

※ 다음의 경우 선정된 업체라도 지원대상에서 배제

- 타사(해외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으로 참가하는 경우로서, 타사 명의로 비용이 납부된 경우
- KOTRA 등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당해연도의 동일한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전시회: 사업년도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 예) 2022년 사업의 경우 2022년 내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만 지원이 가능함
- 자금지원: 업체당 600만 원 한도, 사후지원
 - (부스비) 500만 원 한도, 부스 스페이스 임차료
 - (운송비) 100만 원 한도, 전시물품 운송비
 - ※ 다만, 실 지출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50% 추가 지원(50만 원 한도)
 - ※ 예) 전시물품 운송비로 400만 원이 소요되는 경우, 100만 원 및 100만 원을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 50만 원, 총 15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1월

■ 신청방법

- 해외조달정보센터(<https://www.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접속 및 로그인 후
[사업신청] → [개별전시회]에서 신청
 - ※ 상기 방법으로 신청 불가시,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 신청서류

- (부스비) 송장(인보이스) 및 입금확인증
- (운송비) 송장(인보이스)* 및 입금확인증
 - * 배송물품내역(전시물품임을 기재) 명시
- 참가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1부
- 수출실적 및 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각 1부

■ 문의처

-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042-724-6443, 6486, 7590
hj0204@korea.kr, jyuri5326@korea.kr, paulsong@korea.kr

29 |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수출상담회

■ 사업명

· 나라장터 엑스포 연계 수출상담회

■ 주관부처

· 조달청, 경기도,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

■ 운영기관

· 조달청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공공부문 판로확대 및 지역기업의 효과적인 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전시회
 - 혁신·상생을 통한 경제 활력 지원
 -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및 해외 진출 활성화
 - 공공조달 분야 국제협력 증진

■ 신청자격

-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품 등록업체
- 기술인증제품 생산업체, 공공조달시장진출 희망업체(본사 경기도 소재), 신기술 · 신제품 인증업체, G-PASS 지정업체

* 본 전시회는 참가대상이 제한되므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사무국(031-995-8283)으로 참가 여부 확인 요망

※ 신청제외대상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 업체
- 단순 무역, 유통, 전시품목 비관련 업체

■ 지원내용

- 지원범위: 상품 전시, 공공구매상담회 운영, 조달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공공기관, 대기업 - 참가업체 간 1:1 공공구매 상담회
- 1:1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전시 참가업체 대상 우수업체 선정 및 시상(전시품목 당 우수업체 선정, 조달청장 표창 및 시상)
- 참가업체 신제품 발표회
-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 우수제품 지정서 수여식
- 우수조달물품 구매 유공자 시상식 등
-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지역기업 방문 투어
- 조달제도 현장상담센터

대규모 수요기관 공공구매 상담회	해외바이어 상담회 및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MAS제도, 나라장터 이용 안 내 등 다양한 구매 교육 프로그램 개설	전시품의 효과적 공간 구성 및 우수업체 선정
- 경기도 · 고양시 · 조달청 MOU 체결로 구매 담당자 초청 강화 - 수요기관 공공구매 상담회 확대 운영으로 참가업체의 판로확대 지원	-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해외 바이어 모집 확대 - 해외 고위 공무원, UN 산하 국제기구 관계자 초청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방법 모색	- 조달교육원 및 정부 조달마스협회 교육 수료시, 계약 이행 실적평가 가점 부여 - 다양한 구매 실무 교육 프로그램 수료 시 현장에서 수강 확인증 배포	- 품목별 전시장 레이아웃을 통해 전시효과 증대 및 동일 품목 비교 용이 - 전자투표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품목별 우수업체 선정, 시상 및 우수업체 선정 내용 공지

· 부스유형: 조립부스, 독립부스

조립부스	바닥(파이텍스), 벽체, 상호간판, 조명, 전기콘센트, 인포데스크 및 의자 1세트
독립부스*	바닥 면적만 제공 전기시설 관련 등록업체 감리 필수

* 면적만 제공하는 부스로, KINTEX에 등록된 부스장치 업체를 통해 디자인, 시공, 철거를 참가업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스

· 참가비: 부스별, 신청일자별 상이

구분	조기신청	일반신청	규격	비고
조립부스	1,600,000원/부스	2,000,000원/부스	3m x 3m x 2.5m(H)	옥타늄 부스
독립부스	1,250,000원/부스	1,600,000원/부스	3m x 3m x 5m(최대)	면적만 제공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원사는 별도 참가비를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 요망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70-4887-2621)

※ 경기도 소재기업(본사 기준)은 별도 참가비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 부스 이외 기타서비스(유료 및 무료)

- 1) 디렉토리 원고등록: 참가업체 목록이 들어 있는 Official Directory를 제작하여 전시장에서 배포(일반신청 마감일까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요망)
 - (규격) 가로 182mm x 세로 257mm
 - (제재내용) 참가업체 현황 및 전시품목, 참가업체 광고
- 2) 상주 요원 출입증(일반신청 마감일까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요망)

3) 기술지원(일반신청 마감일까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요망)

구분		금액	비고
전기	단상 220V	30,000원/kw	- (조립부스) 1kW/부스 무료 제공 - (독립부스) 무료 제공사항 없음. 전력소모량(최대부하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정수로 신청 요망
	삼상 220V		
	삼상 380V		
	24시간 전력	50,000원/kw	
LAN선	T1급	130,000원/회선	시설비 포함
급배수	L/min	130,000원/개소	시설비 포함
압축공기	Ton/h	130,000원/개소	시설비 포함

4) 디렉토리 광고 게재: 제작 Official Directory에 참가업체에 한하여 선착순 광고를 배정하고, 내지는 신청 순으로 배정

구분	색상	금액(VAT 별도)
표2, 표2대면/표3, 표3대면	컬러	2,000,000원
내지	컬러	1,500,000원
압축공기	흑백	1,000,000원

5) 주 수요기관 참관 희망 신청: 전시회 참가업체의 홍보 일환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60,000여 수요기관에 참관요청 공문을 발송함(부서장 수신). 온라인 부대시설 입력 시 참가업체에서 희망하는 수요기관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로 참관안내 공문 발송 가능(일반신청 마감일까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요망)

6) 초청장 추가 수량 신청: 참가업체가 수요기관 및 홍보가 필요한 곳에 송부할 수 있도록 2022 나라장터 엑스포 초청장(16*7cm) 무료 제공, 기본제공수량(20장) 외, 필요 수량을 입력하는 경우 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주소

■ 신청기간

· 2월

- ※ 선착순 신청접수 (동기간 내 부스 소진 시 접수 마감)
- ※ 참가비 완납과 동시에 계약이 완료

■ 신청방법

- 신청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참가비 100% 입금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홈페이지 접속(www.koppex.com)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인증서류 제출
- * 2022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참가신청으로 변경됨



참가비 납부

- 참가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참가비 100% 입금
- 조기신청 가능
- *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신청 마감일까지) 총 참가비 100%를 납입한 경우 계약이 완료됨



납입 마감

(주)킨텍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계좌로 입금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인증관련서류 1부
- ※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첨부

■ 문의처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기획부: 070-4887-2621, 2622 / song@jungwoo.or.kr, banbon@jungwoo.or.kr
-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042-724-7457

30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GPPM)

■ 사업명

·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GPPM)

■ 주관부처

· 조달청

■ 운영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조달수출지원팀

■ 사업목적

· 글로벌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

■ 신청자격

·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 중소기업, 혁신조달기업

·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혁신조달 기술설명회) 아래 내용 참고

1)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

※ 혁신제품 지정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은 참가 신청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신청자격은 서류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영어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이 가능한 담당자 참가 필수

※ 신청제한 대상

－ 부도, 파산, 휴·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자금과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우리 기업에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협력 체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출 상담회) 국내 조달기업이 해외 발주기관·구매자와 상담을 통해 사업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1:1 바이어 매칭) 주선 및 통역 서비스 제공

※ 1:1 상담은 바이어 수요에 따라 진행되므로, 수요가 없을 경우 주선되지 않을 수 있음

-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해외 발주처 조달 정책 및 방향, 유망 품목 및 진출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

- (혁신조달 기술설명회)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혁신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조달 기술설명회' 개최

· 참석자

- (해외) 국제기구, 발주처, 조달벤더

- (국내) 해외 조달시장 진출 관심 국내기업

※ 혁신조달 기술 설명회

- (행사내용)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들이 국제기구 및 해외발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을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선발분야) 코로나 19 관련 방역물품(의료장비, 치료용품, 구호물품 등), IT 서비스·장비, 건축자재, 보안 서비스, 친환경 제품 등

- (참가기구) 국제기구 및 해외발주기관 조달 관계자 또는 조달납품 경험이 있는 바이어

※ 참가기구는 추후 섭외 상황에 따라 참가기업에 안내 예정

- 기업 당 25분(기술 설명 20분, 질의응답 5분) 배정

- (선정 방법 및 기준)

· 수출실적, 품목 적합도, 진출 가능성 등을 포함한 심사서 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총점 60점 미만 획득 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단, 신청업체가 선정업체 수 이하인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결격여부* 확인 후 선정

* 부도, 파산, 휴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국제·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부정당 제재 중인 경우 등

■ 신청기간

· 9월

■ 신청방법

·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 'GPPM2022.com'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참가 신청

·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혁신조달 기술설명회)

- 해외조달정보센터(<https://www.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접속 및 [사업신청]

→ [국내지원사업]에서 신청

■ 신청서류

·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 'GPPM20XX.com*' 내 신청 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예) 2022년 사업의 경우 'GPPM2022.com'

·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혁신조달 기술설명회)

– 참가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서식) 1부

– 참가신청서 증빙자료 일체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문의처

·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 GPPM 운영사무국(공고문에서 연락처 정보 확인 요망)

·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혁신조달 기술설명회)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042-724-7589, 6442 /
hanga122@korea.kr

31 혁신조달기업 조달시장 개척단

■ 사업명

· 혁신조달기업 조달시장 개척단

■ 주관부처

· 조달청

■ 운영기관

· 조달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목적

·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혁신제품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 신청자격

· 신청자격(1, 2번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중견 조달기업

※ 혁신제품 지정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은 참가 신청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신청자격은 서류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청제한 대상

－ 전년도 미주 시장개척단 참가 기업

－ 부도, 파산, 휴·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행사내용: 해외조달시장진출 온라인 설명회, 수출 상담회

－ 혁신조달기업을 대상으로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 공무원 또는 유력 조달벤더 등 조달관계자의 해

외조달 진출 설명회를 통해 조달수요 동향, 진출전략 등을 제공

- 혁신조달기업 수요에 맞는 발주처/바이어를 초청하여 1:1 매칭 상담 주선을 통한 혁신 조달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별 단가표(예시)》

■ 신청기간

- (상반기) 4~5월
- (하반기) 7월

■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방법
 - 해외조달정보센터(<https://www.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접속 및 [사업신청]
 - [국내지원사업] → [신청]

■ 신청서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서식) 1부
 -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
 - 영문홍보자료 및 조달시장 진출 노력도 등 증빙자료 일체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 수출실적, 품목 적합도, 조달시장 진출계획 등을 포함한 심사서(붙임 2) 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총점 60점 미만 획득 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단, 신청업체가 선정업체 수 이하인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결격여부* 확인 후 선정
- * 부도, 파산, 휴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부정당 제재 중인 경우 등

■ 문의처

-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042-724-6442, 7521, 7589 /
hanga122@korea.kr, minyoung1234@korea.kr

32 UN 조달플라자

■ 사업명

· UN 조달플라자

■ 주관부처

·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운영기관

·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목적

· 우리 기업의 UN 조달시장 진출 지원

■ 신청자격

· (UN 조달시장 진출 온라인 설명회, 상담회) UN 조달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1, 2번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

※ 혁신제품 지정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은 참가 신청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신청자격은 서류심사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영어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이 가능한 담당자 참가 필수

3) 선정기준: 수출실적, 품목 적합도, UN조달시장 진출계획 등을 포함한 심사서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신청제한 대상

— 기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참가 기업*

* 전년도 UN 조달플라자 및 GPPM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참가기업은 선정에서 제외

— 부도, 파산, 휴 ·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UN기구/UN벤더 초청 온라인 설명회
 -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 UN기구-국내기업 간 그룹상담회
 - UN 조달벤더-국내기업 간 개별상담회

1. UN 조달시장 진출 온라인 설명회

- UN 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비즈니스 기회
- UN 기구·조달벤더 측 발표 사전녹화, 라이브 송출(사전녹화 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
- 참가 기구(하기 표 참고, 실제 참가기구는 변동 가능)

참가기구	UNPD(유엔 조달본부, 뉴욕 주재)
	UNOPS(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 케냐 사무소)
	UNON(유엔 나이로비 사무소)
	IOM(국제이주기구, 케냐 사무소)
	PAHO(범미주보건기구, 워싱턴 주재)

2.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들이 UN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술을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多:1 방식으로 진행, 유엔기구(多):한국기업(1)
 - ※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진행 시, 한-영 통역 제공하지 않음(영어로 진행)

3. 상담회

- 조달관·벤더 측 상담 가능 품목·분야 확인 → 품목·분야별 상담 희망 국내기업 모집 → 조달관·벤더 측에서 상담기업 선택 → 상담 주선
 - ※ UN 조달관-국내기업 상담은 그룹상담회, 조달벤더-국내기업 상담은 개별상담회가 원칙
 - ※ UN 조달관별 그룹상담회 일정은 2022 UN 조달플라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 그룹상담회는 한-영 순차통역, 개별상담회는 언어별 상담통역 지원
 - ※ 상담시간은 상담주선된 시작시간으로부터 1시간 배정

· 주의사항

- 동 사업 신청기업은 KOTRA 회원가입 및 BuyKOREA 상품등록 필수
- 신청기업 대상으로 품목 적합도에 따라 벤더측에서 최종 상담대상기업을 결정, 참가 신청이 반드시 상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 실제 상담일 및 시간은 참가 벤더와 한국 기업 간 일정 협의 후 결정, 단 시차로 인해 한국 기준 오전 8시 이전 혹은 저녁 7시 이후가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4월

■ 신청방법

- (UN 조달시장 진출 온라인 설명회, 상담회) 2022 UN 조달플라자 홈페이지(<https://unpp.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해외조달정보센터* 접속 및 로그인 후 [사업신청] → [국내지원사업] → [신청]
 -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www.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 제출서류는 알집으로 압축하여 첨부하여 신청, 비회원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UN 조달시장 진출 온라인 설명회, 상담회) UN 조달플라자 홈페이지(<https://unpp.co.kr>)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 참가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서식) 1부
 -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
 - 영문홍보자료 및 UN진출노력도 등 증빙자료 일체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문의처

- KOTRA 기후변화대응팀: 02-3460-7494, 7499 / p300@kotra.or.kr
- (혁신제품 기술설명회 관련) 조달청 수출지원팀: 042-724-6442, 7589 / minyoung1234@korea.kr

33 FTA 일일방문 컨설팅

■ 사업명

· FTA 일일방문 컨설팅

■ 주관부처

· 한국무역협회(KITA)

■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 담당부서: FTA 종합 지원센터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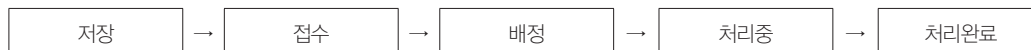
· 1380을 통한 전화 상담만으로 애로 해소가 곤란할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전문가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일일방문 컨설팅 1~3회 무료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FTA 종합 지원센터(okta.kita.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신청 정보 입력 (업체정보, 거래현황, 신청현황 등)] → [FTA 관리 자가진단]

■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 외에는 따로 제출서류 없음

■ 문의처

· FTA 콜센터: 국번없이 1380

34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 사업명

·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 주관부처

· 한국무역협회(KITA)

■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 담당부서: FTA 종합 지원센터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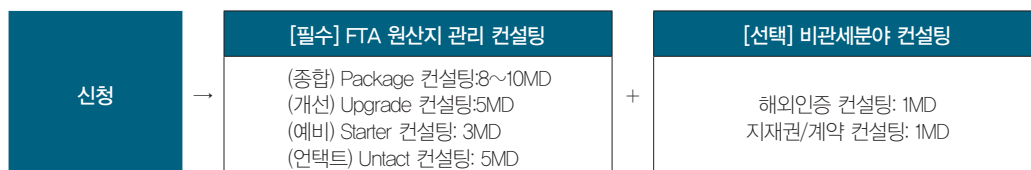
·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인 FTA활용을 위해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 적격업체 선착순으로 선정으로 조기마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필수] FTA 원산지관리 컨설팅 + [선택] 비관세분야 컨설팅
· 주요내용



※ MD: Man Day

※ 상기 컨설팅(필수+선택)은 최대 10MD까지 지원 가능

· 기업분담금(전년도 매출액 기준 1,500억 원 이상 업체 지원 불가)

직전년도 매출액	기업분담금
20억원 미만	무료
20억원 ~ 50억원 미만	10% (최대 40만원)
50억원 ~ 100억 미만	20% (최대 80만원)
100억원 ~ 500억원 미만	30% (최대 120만원)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40% (최대 160만원)
1,000억원 이상	50%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FTA 종합 지원센터(okta.kita.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FTA 종합 지원센터 소속 관세사와 유선 통화
※ 통화 후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 완료

■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 외에는 따로 제출서류 없음

■ 문의처

· FTA 콜센터: 국번없이 1380

35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 사업명

·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 주관부처

· 한국무역협회(KITA)

■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 담당부서: FTA 종합 지원센터

■ 사업목적

· 중소·중견 무역업계의 한-중 FTA 및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현장방문컨설팅을 제공(본 컨설팅 사업은 FTA활용(관세/통관) 분야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인증/지재권) 대응,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분야까지 포함)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한-중 FTA 및 RCEP 활용 희망 업체 대상)

※ 적격업체 선착순 선정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필수] 한-중 FTA, RCEP 활용 컨설팅(택1)

– [선택] 비관세장벽(인증/지재권) 대응,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컨설팅

· 주요내용

[필수]
한-중 FTA, RCEP (택1) 방문교육 (1MD)
1일(MD)

[선택]
FTA 활용: 원산지/통관 실무(5MD 이내) 인증: 인증 취득 절차(2MD 이내) 지재권: 상표/특허/계약(2MD 이내) FTA시스템: 시스템구축, DATA작성, 서류발급(2MD 이내)
9일(MD) 이내

총 12MD 중 필수컨설팅 포함 10MD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FTA 종합 지원센터(okta.kita.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FTA 종합 지원센터 소속 관세사와 유선 통화
※ 통화 후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 완료

■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 외에는 따로 제출서류 없음

■ 문의처

· FTA 콜센터: 국번없이 1380

36 비관세장벽 컨설팅

■ 사업명

· 비관세장벽 컨설팅

■ 주관부처

· 한국무역협회(KITA)

■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 담당부서: FTA 종합 지원센터

■ 사업목적

· 국가별 상이한 기술규정과 제품표준 적용으로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방해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에 대한 최신정보와 인증 취득에 관한 전문가의 현장방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적격업체 선착순으로 선정으로 조기마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인증(TBT) 컨설팅

· 지원내용

– 수출대상국의 기술표준, 제품인증 등 관련 기초정보 제공

– 해외인증 취득 세부 절차 안내 및 신청 문서 작성 지원 등

· 기업분담금

– 없음(국고 전액지원)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FTA 종합 지원센터(okta.kita.net)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FTA 종합 지원센터 소속 관세사와 유선 통화
※ 통화 후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 완료

■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 외에는 따로 제출서류 없음

■ 문의처

- FTA 콜센터: 국번없이 1380

37 무역현장 컨설팅

■ 사업명

· 무역현장 컨설팅

■ 주관부처

· 한국무역협회(KITA)

■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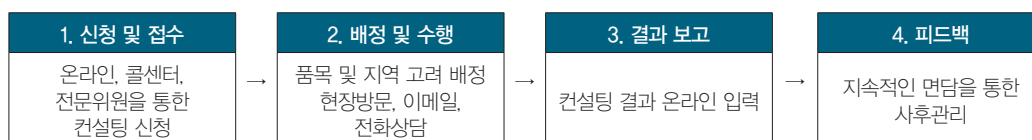
·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종합상사 출신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

■ 신청자격

· 중소 · 중견기업
※ 적격업체 선착순으로 선정으로 조기마감 가능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시장정보, 바이어 발굴 등 해외 마케팅 관련 단계별 종합 컨설팅
 - 해외시장 진출 관련 무역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제도 통합 안내
 - 무역서식에 걸림돌이 되는 업계 애로 발굴 및 해소
- 기업부담금
 - 무료(단, 전시회, 시장개척단, 시장조사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전 안내 후 신청업체 부담)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KIT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회사명, 상담 지역, 취급 품목, 자문 분야 등을 작성하여 제출

■ 문의처

·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 (내방)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또는 지역본부

지부명	위치	지부명	위치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159-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층	경기 지역본부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2층
인천 지역본부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7-50) 미추홀타워 1703호	충북 지역본부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5층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36(월평동 282) 대전무역회관 4층	전북 지역본부	5484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팔복동 1가 337-2)
광주전남 지역본부	6236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 3층	강원 지역본부	24376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 (퇴계동 1072) 국민연금춘천회관 7층
대구경북 지역본부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신천동 89-6) 대구무역회관 5층	경남 지역본부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5층
울산 지역본부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연암동 758-2) 울산경제진흥원 4층	부산 지역본부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중앙동 4가 87-7) 부산무역회관 7층
제주지부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2동 39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층		

38 수출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은 지원내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주관부처 (운영기관)	유형	신청자격 (매출/수출 요건)	지원내용	쪽
수출 신용보증	무역 보험공사 (무역 보험공사)	선적전★	신용 보증부대출 또는 신용보증부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 유관기관들이 수출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 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 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	197
		선적후★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이 수출 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 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	수출기업이 수출 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 채권을 매입(Nego)하 는 경우, K-SURE가 연대 보증	201
		매입★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이전에 수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를 보증	206
		포괄매입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 로 은행으로부터 매입 외환 대출을 받 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 외환 대출 을 받은 후, 대출 만기에 상환하지 못 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장	210

※ ‘★’ 표시된 사업은 선정시 혁신조달기업에 가점 부여

■ 사업명

· 무역현장 컨설팅

■ 주관부처

· 한국무역협회(KITA)

■ 운영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 사업목적

·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종합상사 출신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

38-1 선적전*

□ 사업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주관부처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운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사업목적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임

** 채권,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 따라서 보증 주체는 L/C와는 달리 반드시 은행일 필요는 없으나 은행 이외의 자는 채무변제능력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이 보증을 하게 됨. 이러한 지급보증은 대출과 함께 은행의 여신(financing)의 구간을 이루고 있으며, 대출과는 달리 자금의 부담 없이 신용공여(credit extension)를 함으로써 주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하는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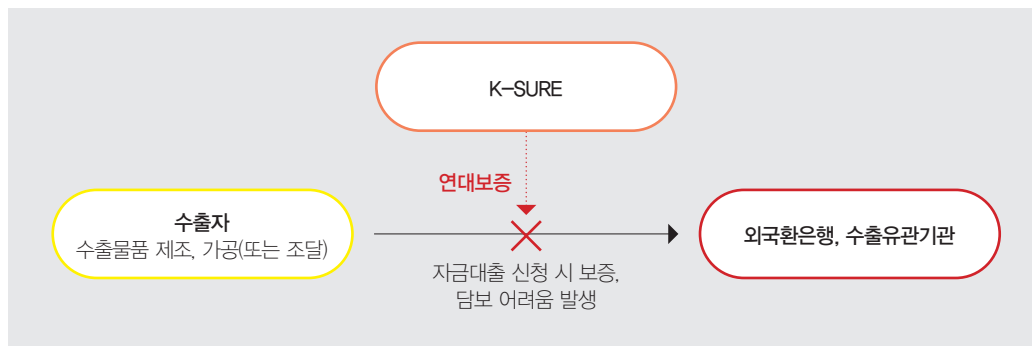
□ 신청자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은행이 수출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용 보증부대출 또는 신용보증부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함 (단, 보증금지 및 제한과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

-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무역협회, 무역기금, 중진공 자금,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등)

□ 지원내용

· 지원 구조



-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 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함·지원절차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 분	기업분담금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가입절차 상세
 - (1. 보험가입 상담) 공사 방문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 상담
 - (2. 보증 신청 및 신용평가 의뢰)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보증 신청서류 제출
 - (3. 보증한도 심사 및 책정) K-SURE: 대표자와의 면담, 사업장 방문, 거래은행 담당심사역과의 상담 등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 수출실적, 재무사항(차입금 비율, 부채비율) 등을 심사
 - (4. 보증 약정 체결) K-SURE는 기업의 부탁으로 은행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생기는 K-SURE와 기업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약정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기업과 체결

※ 신용보증약정시 기업의 공사에 대한 채무변제약속으로 연대보증인 입기준에 따라 입보대상자는 공사에 내왕하여 자필서 명날인을 하여야 함

- (5. 보증료 납부) 보증료 = 신용보증한도 × 보증서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보증요율
- (6. 보증서 발급) 기업이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은행 앞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 (7. 신용보증관계 성립) 신용보증관계는 은행이 신용보증서에 부합되게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

□ 신청서류

·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 내에서 각종 신청서 및 서류 다운로드 가능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① 신규 또는 증액시

구 분		기업분담금
신청 서류	비상장기업용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 상사현황표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 수출실적확인서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용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 주주현황표(비상장기업용)
추가서류		- 단기지급능력검토표

② 보증기간 연장시(조건변경 또는 재약정)

구 분			기업분담금
신청 서류	필수 서류	법인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재보증 절차 및 서류
		개인기업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순수개인용) ※ 자필서명 혹은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 날인시 개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추가서류		※ 영업담당자가 개별 요청시 제출
기타 서류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조건변경 신청서
			- 보증서 연대보증인 변경신청서
			- 수출신용보증부 대출금 상환내역통지서

③ 기타서류

구 분	기업분담금
기타 서류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서
	- 수출진흥금융용시 추가서류
	- 수출준비자금시 추가서류(수출계획서)

기타 서류	- 제출서류 및 내용확인서(환변동보험 환수금회수 특례보증의 경우)
	- 산업기술 R&D 과제이행 성공기업 확인서
	- 상사현황표(채무면제기업용)

2) 수출신용보증(제작자금)

구 분	기업분담금	
신청 서류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수출신용보증 · 제작자금) - 상사현황표(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기업용) - 상사현황표(비상장기업용) -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기업용) -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비상장기업용) - 수출실적확인서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아래) - 풀링(Pooling) 대상 신청 목록
	법인 기업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순수개인용) ※ 자필서명 혹은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 날인시 개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개인 기업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개인기업) ※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3)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구 분	기업분담금	
신청 서류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 상사현황표 -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 - 수출실적확인서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아래)
	법인 기업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순수개인용) ※ 자필서명 혹은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 날인시 개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개인 기업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개인기업) ※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 문의처

· 영업총괄실: 1588-3884

38-2

선적후★

□ 사업명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주관부처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운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사업목적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을 미리 지급받으면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
- 그러나 외국환 은행은 자기자금으로 매입대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게 되며, K-SURE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가 이런 담보 역할
- 즉,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매입대전을 선지급 하였으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K-SURE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 (이용요건)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유효기간) 최종 매입일로부터 1년간 추가 매입이 없는 경우 보증한도 자동 소멸
- (보험료 및 보증료) 결제기간 및 수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와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함께 납부
- 주요 면책사유
 - ※ 금융기관은 K-SURE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
- 1) 보증지원 대상거래가 아닌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 － 중계무역 또는 재판매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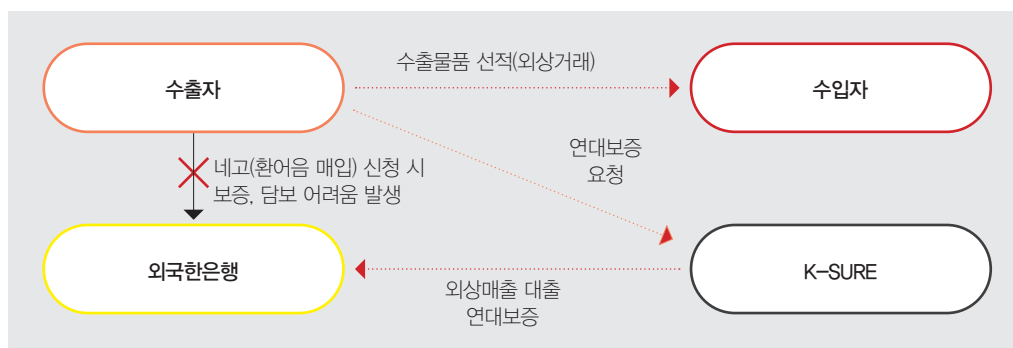
-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어도 신용장 문면상 신용장 개설 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용장 문면상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서 문면상 수입자의 대금지급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경우

2)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3) 은행이 수출계약 또는 신용장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하여 발생한 손실

■ 지원내용

- 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을 지원
- 외국환 은행이 자기자금으로 매입대전을 지급하고 통상적으로 담보를 요구할 시, K-SURE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가 이러한 담보 역할 지원
-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매입대전을 선지급 하였으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시, 보상 지급
- 상품구조도



· 주요계약사항

구 분	내 용
보증금액	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연체금 등은 보증대상이 아님)
담보위험	- (신용위험)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보증비율	90%

구 분	내 용
보증한도 운영방식	- 회전방식으로 운영 - 금융기관이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동 결제금액만큼 보증한도가 되살아나는 개념 ※ K-SURE는 수입자 신용도, 결제경험 등을 심사하여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보증약정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단기수출보험 의무가입	-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K-SURE)이 주채무자(수출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부대비용을 구상할 권리 보유 - 그러나 단기수출보험에 연계 가입하는 경우, K-SURE의 금융기관 앞 보증 채무 이행시 수출자의 잘못이 없으면 연계된 보험금만큼 K-SURE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따라서 수입자의 대금미결제를 대비,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수출 보험과의 연계가입 의무화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 개인기업* 대표자는 채무 당사자(주 채무자)로서 채무 부담하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하고, 법인기업**은 실제 경영자 1인 입보 원칙

* 대표자 외 실제 경영자가 있고 동 실제 경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대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주 채무자로 입보

** 실제 경영자로서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실제 경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 전원(공동 대표 및 각자대표 포함)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가입절차 상세

- (1. 보험가입 상담) 청약한 모든 수출거래를 보험으로 인수하지는 않으며 일정요건 구비여부를 체크한 뒤 절차 진행
- (2. 신용조사)

· 수입자 신용등급 평가: 수출자는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 수출자 신용등급평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
- (3. 보증청약)
 - 수출업체는 수출계약체결 전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청약서 제출
 - 청약시, 보증서를 취급할 은행을 거쳐(K-SURE 소정양식의 관련서류를 제출)
- (4. 보증한도 책정) 수입자 신용평가 후 보증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거래 예상물량, 외상기간 및 수입자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가능 금액을 산출
- (5. 보증서 발급) 수출신용보증 약정체결 후 보증서 발급
- (6. 대출통지 및 보증료 보험료 납부)
 - 수출업체는 선적 후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보증대출통지 등록
 - K-SURE는 대출통지 내용을 심사하여 보증관계 성립 여부확인(반송사유 발생시 보증관계 미성립 통지), 보증료 및 보험료 수납
- (7. 은행매입)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와 보증서를 담보로 매입요청, 은행은 매입 전 대출통지 성립 및 보증료 수납여부 조회

·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 내에서 각종 신청서 및 서류 다운로드 가능

① 신규 또는 증액시

구 분		주요 내용
신청 서류	법인기업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 거래현황표 - 수출거래실적증명서
	개인기업	- 상사현황표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 주주현황표(비상장 법인기업용)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② 신용보증 조건 변경시

구 분	주요 내용
신청서류	- 수출통지 내용변경 승인신청서
	- 신용보증조건 변경 신청서

③ 기타서류

구 분	주요 내용
신청 서류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연계보험 약관 내용 확인서
	- 수출자 유동화한도 책정 신청서
	- 수출실적확인서(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상품설명서

구 분	주요 내용
신청 서류	- 무신용장방식 거래내역
	- 신용보증한도 해지 요청서
	- 상사현황표(채무면제기업용)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 문의처

· 영업총괄실: 1588-3884

38-3 매입*

■ 사업명

· 수출신용보증-매입

■ 주관부처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운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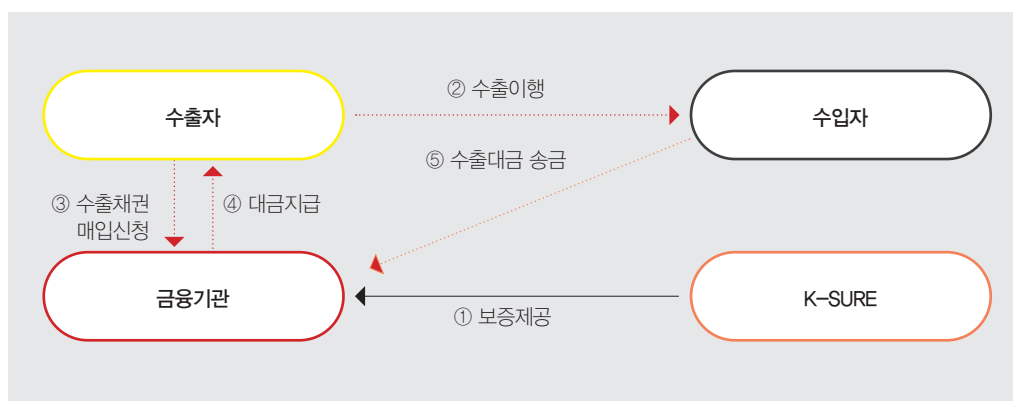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사업목적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 중소기업
 - ※ 공사 내규에 따라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가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보증요율
 - 수출자 · 수입자 신용등급, 결제조건, 통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산출됨

■ 지원내용

· 상품구조도



· 주요계약사항

구 분	내 용
법적성격	수출채권 담보부 대출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보증계약자	금융기관
보증하는 채무	대출원금에 보증비용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담보위험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출금 미상환 위험
대상거래	통관(일반수출), 비통관(위탁·중계) 거래
보증기간	1년
보증비용	90% 이내
보증약정	주채무자(수출기업)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결제주체	수입자(수출자, 제3자도 가능)
수출통지	통지 없음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가입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이용절차 상세
 - (1. 신용조사기관(신용등급 평가)
 - 수입자(3~4주): K-SURE DB정보 신용조사기관
 - 수출자: 재무제표 등
 - (2. 보증청약 및 보증한도 책정)

- 수출자는 K-SURE에 청약서(은행확인) 및 서류 제출
- K-SURE는 심사 후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 연간 보증료 납부
- 구상약정(K-SURE→수출자) 체결 후 보증서 발급
- 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 신청서류

-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 내에서 각종 신청서 및 서류 다운로드 가능

① 신규 또는 증액시

구 분		주요 내용
신청 서류	법인기업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 수출거래실적증명서 - 주주현황표(비상장 법인기업용)
	개인기업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 상사현황표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② 신용보증 조건 변경시

구 분	주요 내용
신청서류	-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 수출거래실적증명서 - 주주현황표(비상장 법인기업용) -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 상사현황표 - 고객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③ 신용보증 조건 변경시

구 분	주요 내용
신청 서류	- 신용보증조건 변경 신청서
	- 보증상대방 변경 협약서

④ 기타서류

구 분	주요 내용
신청 서류	- 수출신용보증(매입) 약정서
	- 수출자 유동화한도 책정 신청서
	- 수출실적확인서(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신용보증한도 해지 요청서
	- 상사현황표(채무면제기업용)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 문의처

· 영업총괄실: 1588-3884

38-4

포괄매입*

■ 사업명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 주관부처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운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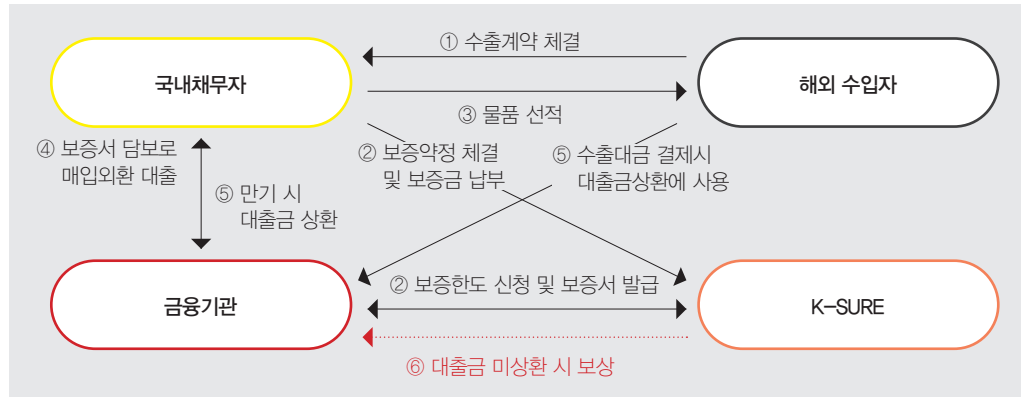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입자 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1개로 모든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 대상거래
 - 통관수출거래에 대한 매입외환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
 - 단, 공사가 정한 신용우량 기업의 경우 해당 보증서 유효기간 동안 비통관수출거래도 허용 (보증기간 종료되어 재보증 심사시 신용도 하락한 경우 비통관수출거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이용요건
 - 한국기업데이터(KED) 신용등급 B-이상
 - 공사가 정한 신용기준을 충족할 것(수출자 또는 연대보증인 신용불량, 금융기관 연체, 4대보험 미납, 세금체납, 공사 보증사고 발생 등인 경우 이용불가)
 - 기존 공사의 수출채권 유동화 상품 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상품 한도를 해지하고 이용가능)

■ 지원내용

- 거래구조



· 보증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보증비율	기본 90%
보증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보증서 유효기간 종료시 재보증심사를 통해 연장)
보증한도	－ 수출자의 연간 통관수출실적 기준으로 책정 － 업체당 최대 500만 달러
보증요율	－ 보증한도 10만 달러 이내: 0.4% － 보증한도 10만 달러 초과: 연율 0.5% 내외(수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산출)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이용절차 상세

- (1. 청약서류제출) 청약서(은행 날인 필요) 등 작성 또는 타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공사에 제출
- (2. 공사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 청약한도 U\$10만 초과건은 수출자 신용평가 실시
 - 보증제한 사항 등 심사 후 보증한도 책정
- (3. 수출자 약정체결, 보증료납부)
 - 수출자 및 연대보증인 구상약정 체결(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신청서류

· 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 내에서 각종 신청서 및 서류 다운로드 가능

① 신규 또는 증액시

구 분	주요 내용	
신청 서류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청약서 - 사업장 및 연대보증인 현황 - 채무자 주주명부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법인인감증명서 - 기타(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실적증명서)	
	법인기업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법인기업) ※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순수개인용) ※ 자필서명 혹은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 날인시 개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개인기업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개인기업) ※ 개인인감 날인, 개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② 신용보증 조건 변경시

구 분	주요 내용
신청서류	- 신용보증조건 변경 신청서
	- 보증상대방 변경 협약서

③ 신용보증 조건 변경시

구 분	주요 내용
신청서류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약정서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품설명서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부대출 실적증명서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대출잔액 관련 확인서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대출금 상황내역 통지서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 문의처

· 영업총괄실: 1588-3884

39 단기수출보험

□ 단기수출보험은 지원내용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주관부처 (운영기관)	유형	신청자격 (매출/수출 요건)	지원내용	쪽
수출 신용보증	무역 보험공사 (무역 보험공사)	선적후★	(수출자)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공사 수출자 신용등급 F급 이상 (수입자) 공사 국별 인수 방침 인 수 제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수입자로 공사의 수입자 신용등급 F급 이상 (-)	수출자가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214
		중소중견 Plus+★	수출자 신용등급 G급 이상 (수출(5,000만불))	수출 중소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K-SURE가 책임 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 보상	218

※ ‘★’ 표시된 사업은 선정시 혁신조달기업에 가점 부여

39-1 선적후★

□ 사업명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주관부처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운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사업목적

· 기업의 수출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 담보
-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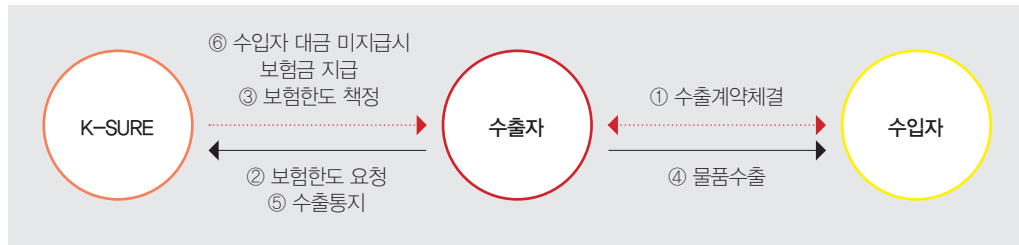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신청자격

- (수출자)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공사 수출자 신용등급 F급 이상
- (수입자) 공사 국별인수방침 인수제한국에 소재하지 않는 수입자로, 공사의 수입자 신용등급 F급 이상
- 지원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¹⁾, 위탁가공무역²⁾, 중계무역³⁾, 재판매⁴⁾ 거래
 - 1) 일반수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 2) 위탁가공무역: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 3) 중계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 4) 재판매: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 지원내용

· 보험구조



· 보상절차

- ① 전화상담(고객센터, 담당자) → ② 사고발생 통지 → ③ 사고조사 → ④ 보험금 청구 → ⑤ 보상심사 → ⑥ 보험금 지급 → ⑦ 채권양도 및 사후관리

· 보험유형

운영 방식	구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주요내용	개별 거래별로 보험청약 및 가입(결제기간 2년 이내 거래)	일정범위의 대상거래를 정한 후 대상 거래 전체를 가입(결제기간 180일 이내 거래)
	책정한도	인수한도 ¹⁾	보상한도 ²⁾
	장점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 가입 가능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 가입 용이
	단점	고위험거래 가입 곤란	저위험거래 가입 의무

1) 인수한도: 수출자가 특정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최대 한도(수출대금이 인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 불가)

2) 보상한도: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상할 수 있는 보험금의 최대 누적액(수출대금이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부보 가능하나 보상한도 범위 내 보상)· 보험유형

· 주요 계약내용

보험계약자	수출자
보험가액 ¹⁾	수출대금
부보율 ²⁾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 재판매: 95% / 중계무역: 95% 이내 -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³⁾	보험가액 × 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 - 면책대상 손실) × 부보율
보험료 ⁴⁾	보험금액 × 보험요율
보험증권 유효기간	최종 수출일로부터 1년(수출실적 없을 경우 한도책정일로부터 1년)

- 1) 보험가액: 보험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수출보험에서는 통상, 수출금액)
 2) 부보율: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
 3) 보험자(K-SURE)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보상한도 금액
 4) 보험료: 보험요율은 수입자 신용등급, 결제기간 등에 따라 결정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 · 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 · 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 · 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① 보험가입 상담(고객센터, 담당자) → ② 수입자 및 수출자 신용조사 신청(사이버영업점) → ③ 한도 신청(사이버영업점) → ④ 신청한도 심사 → ⑤ 보험증권 발급(사이버영업점) → ⑥ 수출통지(사이버영업점) → ⑦ 보험료 납부(지정계좌) → ⑧ 결제통지(사이버영업점)

■ 신청서류

· 청약서, 가입신청서, 보상한도 신청서 등

-
- 보험유형(개별/포괄)에 따라 신청서류가 서로 상이하므로,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소개 페이지] 이동 후, [신청서류] 페이지에서 전체 필요서류 확인 요망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문의처

· 단기보험총괄실: 1588-3884

39-2 중소중견Plus*

■ 사업명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 주관부처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운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사업목적

·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K-SURE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 현행 단기수출보험이 개별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반면, 해당 제도는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위험별 책임금액을 설정하여 운영

■ 신청자격

· 수출자 신용등급 G급 이상(K-SURE 기준, 특례 G급* 제외)
 * 최근 3년 연속 적자 등(특례 G급 여부는 영업점 담당자 통하여 확인 가능)
 ·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실적 5천만 달러 이하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주요 계약사항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용요건	수출실적 50백만 달러 이하 G급 이상 중소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포괄·준포괄·농수산물 패키지) 이용 업체는 제외	
담보위험	- (기본)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 (특약) 수입국 위험, 무역 클레임 위험	- (기본)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 (특약) 수입국 위험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	결제기간 180일 이내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 공사신용등급 R급(정보부족기업 제외) 또는 자본잠식 G급 수입자, 30일 이상 결제 지연 수입자,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주 ¹⁾ 소재 수입자 제외	
위험별 책임금액주 ²⁾	- 기본 위험: 최대 1백만 달러(개별 수입자별 최대 300천 달러) - 수입국 위험: 최대 1백만 달러 - 클레임 위험: 최대 50천 달러 - 최소책임금액: 10천 달러	- 기본위험: 최대 3백만 달러(개별 수입자별 최대 300천 달러) - 수입국 위험: 최대 1백만 달러 - 클레임 위험: 담보 안함 - 최소책임금액: 10천 달러
보상비율	100%	90% 이내
보험료	$\text{위험별 책임금액} \times \text{위험별 기본요율} \times (1 \pm \text{Underwriter 할인} \cdot \text{할증률}) \times (1 \pm \text{보험계약 손해율별 할인} \cdot \text{할증률})$	
기타	- 수출통지: 없음 - 보험계약기간: 1년 단위 체결 · 갱신 - 보험료 납부: 연간 보험료 선납	

주1) 이란 및 고위험 인수제한국가(17.12월 기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10개국 수입자의 경우 인수가 제한되며, 이는 청약 및 승낙 시점 이후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음

주2) 클레임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 보상절차

- ① 전화상담(고객센터, 담당자) → ② 사고발생 통지 → ③ 사고조사 → ④ 보험금 청구 → ⑤ 보상심사 → ⑥ 보험금 지급 → ⑦ 채권양도 및 사후관리

· 본 보험증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약관 10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추가등록 된 수입자는 공사의 내용 변경 승인일 이후의 거래건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함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분	내 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 · 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 · 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 · 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가입절차

– ① 수출자 신용조사(사이버영업점) → ② 청약서류제출(거래수입자등록 및 책임금액선택) →

③ 보험료 납부 후 증권 발급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대비 '중소중견Plus 보험' 비교

· 수입자 신용조사 및 수입자별 인수한도 심사 생략 → 보험가입기간 단축

· 수출통지 절차 생략 → 수출자 이용 부담 경감

■ 신청서류

· 청약서, 국내기업신용조사의뢰서 등

–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소개 페이지] 이동 후,

[신청서류] 페이지에서 전체 필요서류 확인 요망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 문의처

· 영업총괄실: 1588-3884

40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사업명

·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주관부처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운영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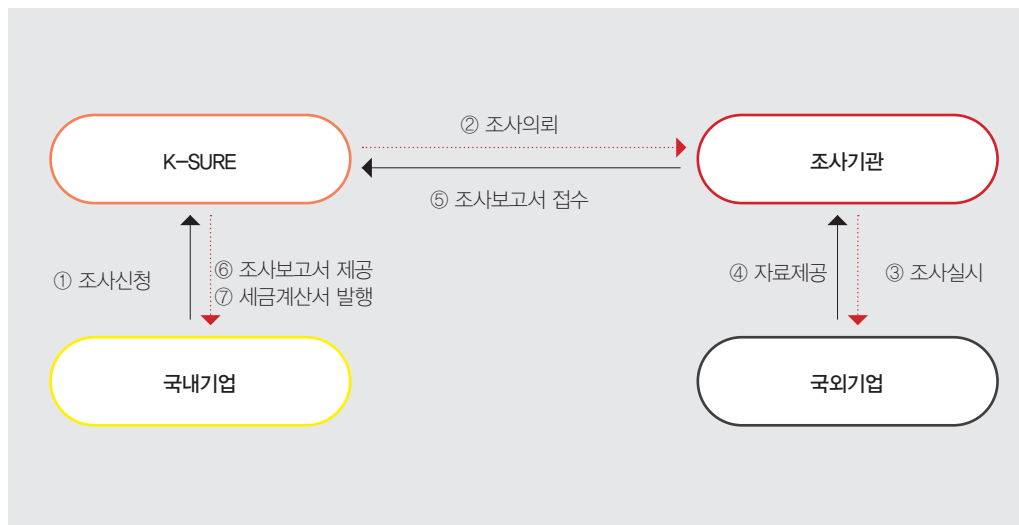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사업목적

·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 국외기업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하거나 신용조사에 기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실제 조사 소요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서비스 개요



· 신용조사 보고서 종류

보고서 종류	정보자료 제공내역	목적
요약보고서	일반현황, 신용등급평가정보 수출보험이용정보 등	수출보험부보를 위한 등급책정
Full Report	신용조사보고서원본+ 요약보고서	추가적인 국외기업정보 확보

※ 현지 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현지 신용조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Full Report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조사 보고서 조회 방법

신청방법	내용	상세설명	소요기간
기존자료구매	기평가된 보고서 구매	6개월이내 기평가된 보고서 다운로드	통상 3주
신규신청	공사 앞 조사신청	- 공사가 접수하여 해외조사기관 앞 조사의뢰 - 해외조사기관으로부터 보고서 접수시 등급평가 후 정보제공	당일

※ 신규신청의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조사거절, 불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신청 요망
※ 진행상태가 '신청'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취소가 불가함(공사에 의한 접수 이전에만 신청자가 직접 취소 가능)

· 신용조사 수수료

보고서 종류	기업규모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정보부족기업 또는 장기소요(40일 초과)
요약보고서	중소·중견기업	33,000원	22,000원	면제
	대기업	66,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중소·중견기업	49,500원	33,000원	면제
	대기업	99,000원	33,000원	면제

※ 신규신청의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조사거절, 불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신청 요망
※ 진행상태가 '신청'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취소가 불가함(공사에 의한 접수 이전에만 신청자가 직접 취소 가능)

·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수납방식	청구시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납부기한
후불제	당월 중 조사 완료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 일괄청구	당월 중 조사완료건 전체에 대하여 익월 1일자 일괄발급(1장/월)	세금계산서 발행월 27일까지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10년 1월 부터 시행)되며, 사이버 영업점에서도 직접 조회·출력 가능
※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향후 신용조사서비스를 이용 불가
※ 수수료 미납 건이 있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미납 건에 우선적으로 결제 처리됨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 · 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 · 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 · 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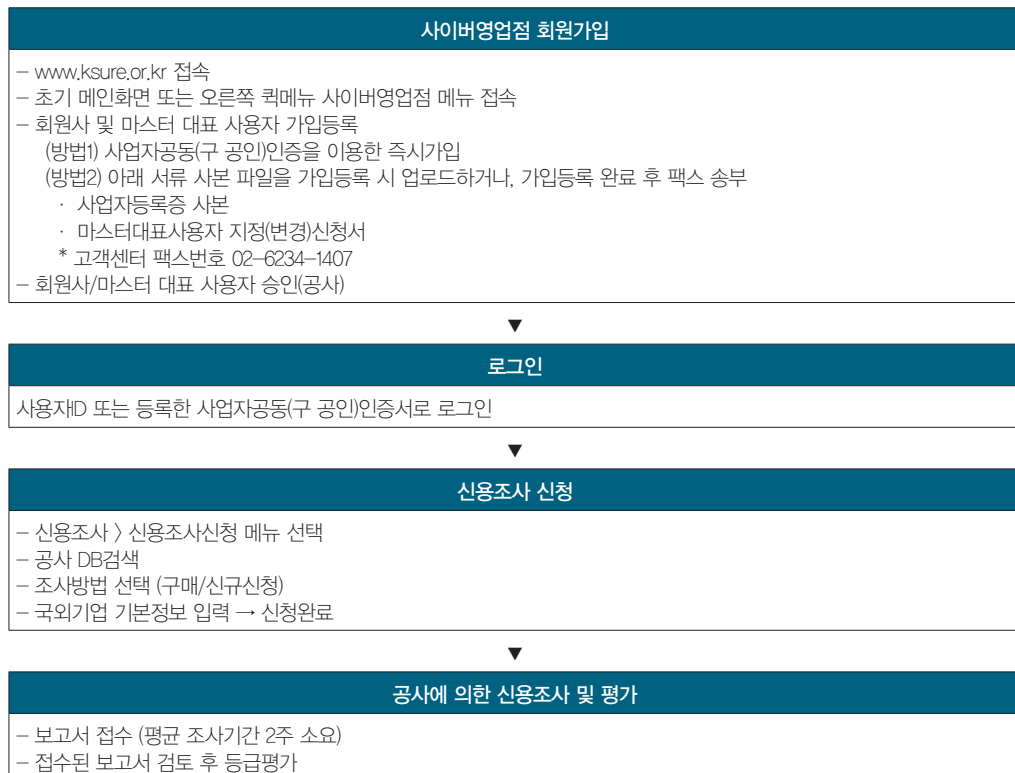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이용절차



보고서 조회

- 사이버영업점 접속
- '신용조사' - '신용조사 내역 및 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가능

수수료 납부

- 보고서 발급 익월초 세금계산서 일괄 발급
- 가상계좌로 수수료 납부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 수납

※ 공사가 해외신용조사 기관으로부터 입수하는 조사보고서는 각국의 상이한 공휴일(중동국 목금 휴일 등), 축제(브라질 카니발 등), 종교행사(중동국 라마단 등), 근무관행(미국의 크리스마스 시즌 등)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고객사 업무(선적, 네고 등)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 요망

· 신용등급채점 방식

- 국외기업의 자산과 업종에 따라 국외기업 유형 구분(중기업 중공업, 중기업 비제조업 등) → 국외 기업 유형에 따라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로 각각 평가 점수를 배정 →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에 해당되는 등급 최종 확정
- 주요 평가 항목
 - 재무적 요소: 회사 규모,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
 - 비재무적 요소: 종업원 수, 조사기관 등급 등

■ 신청서류

-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이버영업점 회원가입시 필요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이 외 신청서류 없음
- (방법 1.) 사업자공통(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즉시 가입
- (방법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스터 대표 사용자 지정(변경) 신청서의 사본 파일을 가입등록 시 업로드 하거나 가입등록 완료 후 팩스 송부(고객센터 팩스 번호: 02-6234-1407)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 문의처

- 조사부: 1588-3884

41 TRADE-SURE 컨설팅(수출 컨설팅 서비스)

■ 사업명

· TRADE-SURE 컨설팅(수출 컨설팅 서비스)

■ 주관부처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운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사업목적

·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이행에 따른 대외위험을 사전에 제거·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서비스를 제공

■ 지원내용

- 무역보험, 금융, 수출입, 법무, 회계(세무) 분야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 지원
 - 무료 서비스이나, 컨설팅 지원 횟수는 기업당 총 6회(동일 컨설턴트 배정은 최대 2회)로 제한
- 컨설팅 분야

구 분		주요 내용
무역 보험	수출금융 조달	무역금융 및 매입회환 등 활용방안 자금 안정성 및 유동성 관리
	수출채권 관리	거래수입자 신용위험 관리 수출계약·결제조건 분석 및 대금미회수위험 관리 클레임 등 무역분쟁 관리기법
	환위험 관리	환위험 헤지 방안 환율동향 및 전망
	무역보험 활용방안	수입자 신용조사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수출관련 금융조달을 위한 보증 및 보험제도 활용방안 보상 및 해외 채권추심

구 분	주요 내용
금융	정책자금 안내, 재무현황분석,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수출입	원산지 증명, 수출판로 개척, 수출계약, FTA 활용 등
법무	상사분쟁, 법률자문, 무역클레임, 특허권 등
회계(세무)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세법 검토 등

※ 현지 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현지 신용조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Full Report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절차

※ TRADE-SURE 컨설팅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전화, 화상, 인터넷을 통해 상담 가능

- (1. 신청서 접수) TRADE-SURE 컨설팅 홈페이지
- (2. 컨설턴트 배정) 수출지역, 소재지 고려
- (3. 컨설팅 신청내용 사전분석) 신청내용 사전분석
- (4. 상담일정 협의) 전화, 일정 조율
- (5. 컨설팅 실시) 현장방문(필요시 전화, 화상, 인터넷 상담)
- (6. 만족도 조사(해피콜)) 컨설팅 내용 및 컨설턴트 만족도 조사
- (7. 컨설팅 재신청(선택)) 동일분야 혹은 신규분야에 대해 재신청

· 무역보험공사 서비스 혁신조달기업 우대사항★

구 분	내 용
보증한도 우대	-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책정가능 한도에서 1.5배 상향
보험 · 보증료 할인	-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에 보험 · 보증료 1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수수료(5회, 16.5만원) 면제
수출 초보기업 우대	- 수출초보기업(연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은 보험 · 보증료 최대 30% 할인, 연대보증 면제
컨설팅 제공	- 수출 및 외환에 대한 컨설팅 무료 제공 - 컨설팅 이용요건(연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미적용

※ 상담시, 필히 혁신조달기업임을 밝히고,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아래 URL을 통해 [TRADE-SURE 컨설팅 신청] 페이지로 이동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https://tradesure.ksure.or.kr/index.do>

■ 신청서류

- TRADE-SURE 컨설팅 신청서
※ 무역보험공사 측에서 요구하는 혁신조달기업 증빙서류 필히 제출★

■ 문의처

- 고객가치부/고객컨설팅팀: 1588-3884

42 해외시장개척지원제도(조사·입찰지원)

■ 사업명

· 해외시장개척지원제도(조사·입찰지원)

■ 주관부처

· 한국수출입은행

■ 운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담당부서: 해외사업개발팀

■ 신청자격

·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 고객기업

※ 고객기업: 신청서접수일 기준 수출입은행 여신 승인액 또는 여신잔액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의미함. 단, 수출형 혁신성장산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비고객 기업도 가능

*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의 연도별 「혁신성장 공동기준」 등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수출형 혁신성장 산업의 대상 품목에 관한 사업으로, 서비스산업(보건의료·제약 등), 에너지산업(신재생에너지 등), ICT융합 산업(로봇, 스마트기기 등) 등 300개 품목으로 구성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조사 및 입찰 관련 외부용역비용 일부

– (1. 조사지원) 신규 수출거래 발굴, 해외투자, 해외사업 수주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분석에 소요되는 용역비용의 일부지원

– (2. 입찰지원) 국제 경쟁입찰(제한경쟁 입찰 포함) 참여를 위한 시장조사, 입찰타당성 검토 등 사전 조사 활동에 드는 용역비용의 일부지원

※ 용역수행사는 신청기업이 직접 선정하며, 용역계약은 신청접수일 기준 완료되지 않은 계약 또는 체결 예정인 계약으로 함

· 지원금액: 3억원 범위 내(중소기업은 용역금액의 70%, 중견기업은 용역금액의 50% 까지 지원)

· 온라인 설명회

– 설명회 일시 및 모집 일장: 3월 예정

– 신청방법: 수출입은행 담당팀 앞 이메일(ts@koreaexim.go.kr) 앞 회신

※ 참석신청자 앞 설명회 참석 링크 발송 예정, 회신시 기업명, 참석자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필수 작성

· 업무절차

1) 신청서류접수

2)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내·외부전문가(외부전문가는 Pool 구성)로 구성 후 사업별 평가시간 3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평가기준: (공통) 용역계획, 사업타당성, 신청기업의 사업경험 및 역량 등 / (입찰지원) 컨소시엄은 개별 구성원이 아닌 하나의 컨소시엄을 평가

3) 사업선정

- 선정방법: 사업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평점 및 연간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 예산규모, 사업운영방향, 산업별 포트폴리오, 특정 신청 기업 및 특정 산업군 편중 등

4) 용역비용의 지급

- 지급방법: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지급방식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용역수행사 앞 직접 지급(단, 신청 기업이 사업선정 이전에 용역수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기업 앞 지급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용역비용지급 신청서, 용역수행사 청구내역서 등

5) 용역보고서 제출 및 평가

- ㄴ 용역 수행 완료 후, 해당 결과보고서(용역보고서)를 수출입은행 앞 제출
- 용역보고서는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목적부합성, 내용의 적정성)
- 필요시, 신청기업 앞 용역보고서에 대한 보완요청가능
- 평가 결과(신청기업 및 용역수행사 정보 포함) 및 평가이력은 향후 수출입은행의 여신심사 및 사업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신청기간

· (상반기) 3월

· (하반기) 10월

■ 신청방법

· email(ts@koreaexim.go.kr)로 제출서류 접수

- 신청서 접수시, 제목에 [신청구분], 사업명, 기업명 기재

예) [조사지원 신청] A국 가나다 신규 투자를 위한 컨설팅(A주식회사)

[입찰지원 신청] A국 가나다 건설공사(A주식회사)

※ 서류 사전검토

- 부적격 판단시 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
- 심사를 위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 신청기업이 수출입은행 여신규정상 여신부적격자(연체 등) 및 여신억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수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1) 수출입은행 수출촉진자금대출 중 해외시장개척자금대출과 중복 수혜여부 확인
- 2) 해외건설협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과업에 대한 중복 수혜여부 확인

■ 신청서류

· 조사지원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서류 목록	
공통	1. 신청서
	2.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현황표
	3. 사업제안서
	4.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5. 최근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
	6. 신청기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기타 증명가능서류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기타 증명가능서류
	7.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2개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잠정용역가격내역서
	8.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사업선정위원회 기업발표(PT) 자료 ※ 참고: 신청서류는 이메일 접수하되, 일체 서류(재무제표 제외)는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사업선정담당부서 앞 10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함.
추가서류 ^{주)}	1. 사업자등록증
	2. 회사소개자료

주) 수출형 혁신성장산업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 중 신청서접수일 기준 당행 여신승인액 또는 여신잔액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제출

■ 문의처

· 해외사업개발팀: 02-6255-5221, 5232, 5244, 5245

43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사업명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주관부처

· 한국수출입은행

■ 운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중견금융기획팀

■ 사업목적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수출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신청자격

-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단,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감법인에 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대지원산업 영위 기업은 매출액 자격기준 완화(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가능
- 단, 하기 연계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주무기관	프로그램 명
산업통상자원부	월드클래스300
	월드클래스 플러스(후보기업 포함)
	소부장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100
	브랜드K
금융위원회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조달청	G-PASS
한국거래소	코스닥 라이징스타
KOTRA	세계일류상품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은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히든챔피언 육성기업으로 선정,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표 중소중견 지원 프로그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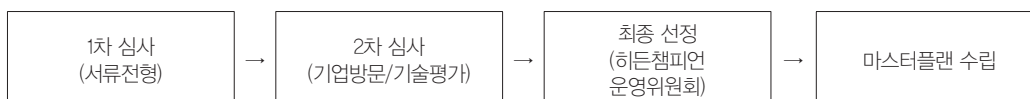
히든챔피언 육성기업이 누리는 혜택

- 수출입은행의 최우대 금융서비스(금리 및 한도 우대 등) 제공
- 기업의 글로벌화 활동 전반에 걸친 금융·비금융서비스 제공
-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선정으로 대외인지도 향상

· 선정기준

- 기업의 기술력, 성장잠재력, CEO 역량,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 선정
- 선정평가표: 히든챔피언 적합도(80%), 재무안정성(20%)

· 선정절차



1) 1차 심사(서류전형)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당행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하여 1차 서류 심사 실시
- 신청기업 1차 심사 평가점수(60점 만점)가 30점 미만이거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외부감사인인 신청직전 회계연도 감사결과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 기업구조조정 대상인 경우
 - 법적분쟁, 노사분규 등으로 신용상태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를 말함)의 세금체납, 조세포탈,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등으로 신청일로 부터 2년 이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경우
 - 부실징후가 있거나 히든챔피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심사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당행 거래기업인 경우 최근 신용등급이 P6 이하인 기업
 - 당행 거래기업인 경우 최근 신용등급이 P5+ 이하이며, 여신감리세칙상 조기경보 확정등급이 EW2 내지 EW3인 기업
 - 영업활동후 현금흐름이 최근 3년 연속 음인 경우

-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3년 연속 1.0 미만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중 수출액이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경우
- 최근 결산일 현재 차입금 의존도(차입금/자산)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단, 차입금 의존도 산정시 차입금은 감사보고서의 차입금과 은행연합회 월보의 대출채권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연계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탈락처리

- 외부감사인의 신청직전 회계연도 감사결과 “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 기업구조조정 대상인 경우
- 법적분쟁, 노사분규 등으로 신용상태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최대주주를 말함)의 세금체납, 조세포탈,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등으로 신청일로 부터 2년 이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경우
- 부실징후가 있거나 히든챔피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심사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당행 거래기업인 경우 최근 신용등급이 P5- 또는 재무등급 5- 이하인 기업

2) 2차 심사(기업방문/기술평가)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평가) 기업의 기술평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히든챔피언 육성전문가의 기업방문을 통한 상세 심사 실시) CEO 면담을 통한 CEO 역량 평가, 중장기 사업계획 평가,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등 육성기업 선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3) 육성기업 선정

- 1·2차 심사결과 총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은 히든챔피언운영위원회에 상정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기업에 대하여 최종 선정여부를 결정

4) 마스터플랜 수립

- 신규 선정 육성기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완성: 기업별 중장기사업계획을 기초로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플랜 작성

■ 신청기간

· 5~6월

■ 신청방법

1) 당행 여신부점 앞 신청서 제출

※ 당행 거래업체는 거래 여신부점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18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5
중소중견금융영업부	(02)6252-3456	전주지점	(063)271-6138
부산지점	(051)817-9249	대전지점	(042)489-9585
대구지점	(053)260-4107	청주지점	(043)237-0472
창원지점	(055)287-6871	인천지점	(032)235-6103
울산지점	(052)274-5274	수원지점	(031)259-6604
광주지점	(062)710-7897	여수출장소	(061)643-7713
구미출장소	(054)462-7102	원주출장소	(033)748-0535

2) 당행 히든챔피언팀 앞 이메일(hidden_champion@koreaexim.go.kr) 접수

■ 신청서류

·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신청서 및 평가항목별 증빙서류

평가항목	증빙서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 비중	기술개발투자액 확인서
	제조(기타)원가명세서(R&D비용이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결산자료(비상장기업인 경우)
특허 보유 건수	특허증 사본
수상 및 인증실적	수상내역 사본
기술개발 전담조직	연구소 인증서 사본
상시 종업원 대비 기술개발 인력	연구개발 인력현황 사본
우대지원산업 여부	우대지원산업 매출실적 증빙(우대지원산업에 해당되고 총매출액의 10% 초과시)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직수출)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발급)
	(내국수출) 부가가치 신고서(내국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해외 구매자수	해외구매자별 매출실적 증빙(해외구매자별 매출실적이 총매출액 3% 초과시)
해외 현지법인 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CEO 동종업종 경험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 히든챔피언팀: 02-6252-3418, 3421

44 수출금융보증

■ 사업명

· 수출금융보증

■ 주관부처

· 한국수출입은행

■ 운영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담당부서: 여신총괄부

■ 사업목적

·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는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보증

■ 보증조건

주무기관	프로그램 명
대상기업(주채무자)	수출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보증수혜자	주채무자와 거래관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자, 채무증권을 인수하는 자, 기타 계약상의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보증기간	보증대상채무의 채무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 내

■ 지원 내용



사례

- A기업은 B국에 해외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을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1억불을 대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해외금융기관은 프로젝트의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의 대출기간 및 B국의 국가리스크 등을 이유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해외금융기관에게 차주의 **채무상환불이행 위험을 보증함**으로써 국내 수출자의 해외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상세내용

구분	수출금융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대상기업 (주채무자)	수출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수입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해외사업관련 대출의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
보증수혜자	지원대상 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하거나 지원대상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		
보증금액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보증기간	보증대상채무의 채무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 내		

·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는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보증함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아래 '문의처'의 연락처를 통해 보증상담 신청

■ 신청서류

· 보증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국내외 관계기관의 인허가서, 담보제공명세서, 부채현황표, 선박의 경우 선박자금수급계획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기업별로 신청 시, 요구되는 관련 서식은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수은 알림 공간] → [서식/약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혁신금융총괄	02-6255-5415	플랜트금융부	02-3779-6418
정보통신금융부	02-6255-5408	자원금융부	02-3799-6432
모빌리티금융부	02-6255-5161	해양금융단	051-922-8872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38
인프라금융부	02-6255-5385		

45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 사업명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 주관부처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운영기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 신청자격

- (공동사항) 창업 후 업력 최대 10년 이내인 기업만 참여 가능
 - (예비창업자) CTS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 포함)도 참여 가능하나, CTS 파트너로 선정 후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등록을 마쳐야 함
 - (스타트업) 창업 후 업력 최대 10년 이내 조건(사업자 등록증 개업일 기준)은 CTS 신규 참여 시에만 해당, Seed 1 완료 이후 Seed 2 공모에 지원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만큼의 기간이 가산됨을 감안하여 업력제한 폐지
 - (사회적기업) 사회문제를 위해 사회적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을 의미하며, 상법상 주식회사면서 정관에 특정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함이 확인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Seed 2) Seed 1 완료 기업은 Seed 1에서 개발한 혁신제품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회계기준 매출, 개도국수혜증빙 필요) 달성*한 이후 공모를 통해 Seed 2 지원이 가능, 그 외 Seed 1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은 Seed 2 공모 참여 불가

* 국내 · 외 법인(NGO, 기업 등)을 통해 개도국에 혁신제품이 보급되어도 인정

■ 지원내용

- Seed 0(예비창업가 및 초기 기업 역량강화 사업)
 - 개발도상국 개발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창업가, 초기단계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에게 개발혁신벤처의 문제 정의 및 아이디어 검증 지원, 개발도상국 현지 자원 연계, 시장탐색 기회 제공, 현지 사업 파트너십 확보 등을 통한 KOICA CTS 사업 기획 역량 강화

- (공동) 개발협력사업 기획/관리 역량강화 교육, 1:1 팀별 담임 멘토링, 분야 전문가 멘토링, 개발도상국 현지 엑셀러레이터 교육(온라인)
- (우수팀 대상) 파일럿 현지시장 리서치 프로젝트 비용*, 개발도상국 현지 엑셀러레이터 온라인 멘토링 및 자원 연계,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R 등) 진행, CTS 선배 기업과 네트워크 기회 제공
 - * 현지조사 출장비용으로 전환 검토 가능
 - ※ 최종 평가 우승팀은 Seed 1 프로그램 참여 시 서면심사 가산점(2점) 제공
- Seed 1(기술개발사업)
 - (아이디어/기술) Proof of Concept 및 개도국(1개국에서 사업진행 가능) 내 소규모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 시행, 검증 결과 도출
 - (제품) 시제품 제작, 실용화 및 이를 활용한 개발협력문제 해결가능성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 및 실험
 - 1개 사업당 최대 3억원 지원
 - ※ 최종 사업비 지급은 마일스톤 달성 및 코이카의 정산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회계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
 - ※ 인건비 및 직접경비(타겟 BOP시장 현지 출장비, 기술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포함)
 - ※ 제품 제작단가 및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소비자 가격 지원 불가)
- Seed 2(시범사업, 비즈니스 준비 사업)
 - 실제 환경에서 성능검증이 이루어진 혁신제품의 개도국 친화적 수정·개량을 통한 개도국 내 보급 및 일부 판매 후 현지 지사 설립(창업)을 통해 동일 지역 내에서 시범 판매를 통해 성과* 검증
 - * 제품 구매자의 국적 관련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대상지역 국가 주민이 제품 구매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를 입어야 함
 - 1개 사업당 최대 5억원 지원
 - ※ 최종 사업비 지급은 마일스톤 달성 및 코이카의 정산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회계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
 - ※ 인건비 및 직접경비(타겟 BOP 시장 현지 조사 출장비, 기술 개량, 마켓 테스트 비용, 현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 현지 활동 비용, 보급 및 시범판매를 위한 제품비용 등 포함)
 - ※ 단, 제품비용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아닌 제작단가 지원(제작단가 및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 비용 포함)

■ 신청기간

- 6~8월
 - ※ 모든 공모시, 공모설명회도 함께 개최되며 따로 신청해야 함

■ 신청방법

- Seed 0: Seed 1, 2와는 별도의 공모를 통해 참가자 모집
 - 공고 웹페이지에 첨부된 지원서 양식을 활용해 지원서 작성(기업 기본 정보,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등) 후, 공고 웹페이지 내 접수 페이지를 통해 양식 기입 및 작성된 지원서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Seed 1, 2
 - 공고 웹페이지에 첨부된 제안서 양식*을 활용해 제안서 작성 후 KOPIS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 Seed 0: 없음 (위의 '신청방법'의 Seed 0 참고)
- Seed 1, 2
 - Seed 1/Seed 2 제안서 1부
 - Seed 1/Seed 2 국문 사업개요서 1부
 - Supporting Information 1부
 - 실적 증빙자료 1부
 - CTS 공모 서약서 1부
 -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
 - CTS 공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제안서에 명시된 핵심인력 모두 해당)
 - ※ 위의 각종 첨부파일에 대한 양식의 경우 제안서 양식*내에 포함되어 있음, 각종 증빙은 해당 양식 내에 기재 요망

■ 문의처

- KOICA CTS 지원센터: 02-6916-9661~3

46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 사업명

·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 주관부처

· 환경부

■ 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공공·민간)발주기관 벤더 등록, 프로젝트 입찰참가 및 수주 지원을 통해 해외 조달 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 국내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제3호,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그린뉴딜 지원 분야 등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산업체(하기 표 참고)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

구분	세부분야	관련 기술(예시)
청정대기 분야	대기오염 저감 소재·부품·장비	대기오염방지시설, 에어필터, 환경촉매, 대기/굴뚝/실내환경 계측·측정장비, 공기청정 건물공조, 공기질 개선 플랫폼 기술 등
자원순환 분야 (탈플라스틱 포함)	플라스틱 개선·대체, 폐기물 자원화, 소재·부품·장비	플라스틱 대체 및 재활용 기술,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적 처리기술, 유용자원 회수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스마트물 분야	상·하수도, 비점오염, 통합물관리, 소재·부품·장비	수처리 설비 및 장비, 수질 계측·측정장비,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물절약제품, 비점오염 및 물순환 관리기술 등
탄소저감 분야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서비스·제품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전환 재활용 제품기술, 폐자원 에너지화, 수열에너지 등 환경분야 에너지전환기술 등

구분	세부분야	관련 기술(예시)
녹색 융·복합 분야	융합형 환경기술, 생물모방 및 생물소재 등	디지털, IoT, AI 등 관련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환경사업, 생물생태 특성을 고려한 생태모방기술, 생물자원 활용한 환경친화제품 등

〈그린뉴딜 유망기업 환경부 중점 지원분야〉

구분	세부분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유기성 부산물 에너지/자원화	—
탄소저감	CCS/U(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Non-CO ₂ 온실가스 처리	신광원 고효율 조명
	히트펌프(열교환 장치) 개선	탄소 이용 공정 고효율화	에너지 저장 기술 개선
첨단수자원	통합수자원관리	고도 수처리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해수담수화 기술	수계 수질 평가/관리	누수 방지 및 절수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	—
그린IT	콘텐츠 제작 및 응용 녹색기술	차세대 IoT 센서 네트워크	그린 SW & 솔루션
그린차량·선박	저공해 고효율 차량	미래형 친환경 선박	고효율 물류시스템
	신에너지원 그린카	그린 농기계 개선	—
첨단그린 주택·도시	GIS(공간정보) 관리, 위치기반 서비스	U-City 통합운영 관리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신소재	생물자원 발굴 및 활용 소재	생명공학 및 생물공정 소개	그린섬유(자원순환, 에너지절감 등)소재
청정생산	국제환경규제대응 (수질, 대기 등 유해물질)	자원순환 생태공장	에너지 및 자원 등 공정효율화
	무오염 생산 기술	—	—
환경보호 및 보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대기 및 실내공기질 개선
	생태계 보전 및 복원	토양지하수 정화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폐기물 및 폐자원 관리	친환경 제품 설계 및 생산	—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신청기업만 해당)
※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책임자,기업)
- 학회, 협회 등 단체인 경우
- 그 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분야) 환경 전분야(녹색산업 분야 및 그린뉴딜 지원 분야 포함)

· (지원금액) 8억 원(기업 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 지원비율: 정부부담금(총 사업비의 80%, 최대 7천만 원),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

※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후 정부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해외벤더 등록 지원, 프로젝트 입찰 · 수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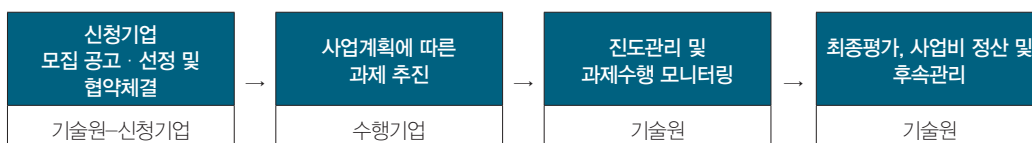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벤더등록 지원	· 해외규격 인증 비용(심사비,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 현지 특허 출원 · 취득비 · 컨설팅비 등 · 시제품 제작비(내 · 외주 가능) · 회사, 제품 등 소개자료 제작, 홍보비 및 진출대상국 박람회 · 세미나 참가비 등 · 벤더등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프로젝트 수주 지원	· 프로젝트 입찰규격 상세조사 비용 · 입찰참가를 위한 활동비(실비정산) · 입찰참가 시 통역비, 입찰참가 서류 번역비 ·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서 독소조항 · 현지법령 등 전문가 검토 관련비용 등
유의사항	· 프로젝트 수주 지원만 신청 시 반드시 해외사업 관련 발주처(공공 및 민간)에 벤더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벤더등록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수출실적 증빙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관련하여, 사업 목표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해 과제 종료 시점에, 당해연도 수출실적 증빙 제출이 필수임 ·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확인서, 수출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인정함

〈지원내용-비목별 계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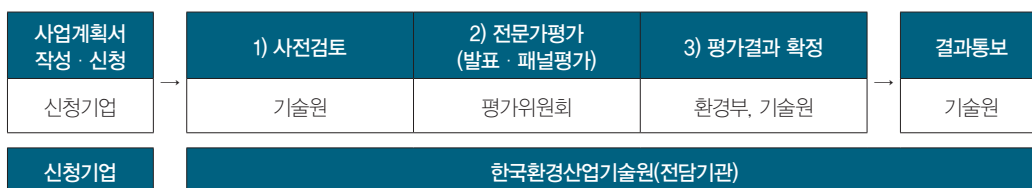
	구분	사용용도	사용용도
벤더등록	인증	· 시험 · 심사 · 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등 - 인증비 : 인증 신청비, 인증서 발행비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인증 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취득을 위한 서류 대행료, 기술 자문료 등	1. 실소요 경비 계상
	특허	· 특허 출원 · 취득 관련 비용 - 전문가 활용 컨설팅,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련 절차 대행 등	
	시제품	· 해외 마케팅 ·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 내 · 외주 제작 모두 가능	
	홍보	· 기업 · 제품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활동 - 동영상, 책자, 홈페이지 구축(외국어), 제품 디자인 · 매뉴얼 제작, 진출 대상국 세미나 · 박람회 등 사업 홍보 관련 등	1. 실소요 경비 계상 2. 기 제작되어있던 홍보 매체를 단순 번역 · 수정하는 것은 불가
수주지원	통번역비	· (통역) 현지 출장 시 전문 통역사 활용 · (번역)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 문서, 이 외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류	1. 실소요 경비 계상
	조사 · 컨설팅	· 온라인 정보를 활용한 해외시장조사, 보고서 구매 등 ·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 해외진출 전략, 타겟국가 현황파악, 파트너 · 바이어 발굴 등 - 법무 · 세무 · 회계 관련 자문 및 서류대행 실시 등	1. 실소요 경비 계상 2. 문헌조사의 경우, 자료 증빙 가능한 경우 인정

	구분	사용용도	사용용도
수주지원	활동비	· 전시회, 상담회, 세미나 등 수출 관련 행사 참가를 위한 항공료 및 숙박비 ·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항공료 및 숙박비	1. 실소요 경비 계상 2. 항공료 및 숙박비 한도액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정 3. 계획서상 사업참여 인력에 한하여 계상

· 추진방향



- (진도관리) 과제수행 진도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상시)
- (최종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보고서 등 평가
- (선정 절차)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출서류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 (평가점수 산정)
 - 사업책임자 대면발표(20분) 후 질의응답(20분) 진행
 - 평가위원회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에 가점* 적용하여 지원 사업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기업 선정
- (가점기준 및 평가항목) 60점 미만 탈락, 60점 이상 선정

항 목	가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2점
신기술 인증, 기술검증, 환경기술 성능 확인, 녹색인증,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기술의 경우	2점
환경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 기업	1점
환경기술·제품 관련 포상(장관급 이상)	1점

* (기술원)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사업,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사업 / (환경산업협회)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 및 유효기간 이내 대상

*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참고사항)

- 기업 당 연간 1회 과제 수행 가능하며, 진행 중인 과제 종료 후 신규 과제 신청 가능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부정청구·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부정이익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기업이 사업신청, 협약체결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 필요 시 사업 담당자가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벤더등록 되어있는 거래처는 신청기업과 지배관계(관계사, 종속회사, 투자회사), 계열사, 자회사/손자회사 등과 관계가 없어야 인정 가능
- 과제 수행 시 해당연도 내 협약기간 연장만 가능하며, 협약기간 내 사업비 사용만 인정

■ 신청기간

· 전년 12월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re.kr) 접속 → [알림/지식마당 내 공지/공고 확인] → [신청서류 다운로드] → [접수]
- (우편/방문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담당자에게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우03367)

■ 신청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사업신청 공문(수행기업의 장 직인 날인)	1부	필수제출
2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별지 제1호]	2부	필수제출
3	사업계획서(신청용)[별지 제2호]		필수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필수제출
5	납세완납증(국세, 지방세)		필수제출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필수제출
7	국내 신용평가기관①의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		필수제출
8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제출
9	신청기업의 해외 수출 실적증명서②(사본)		해당 시
10	인·검증비, 특허출원비, 시제품제작비 등 견적서③		해당 시
11	벤더등록 증명 관련 증빙서류④(사본)		해당 시
12	가점 관련 증빙서류(사본)⑤		해당 시

- ①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주) ·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등을 의미하며, 신용평가 등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 ② 실적증명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확인서, 수출실적증명서, 계약서 등
- ③ 인증, 특허, 시제품제작, 시장조사, 전문가 활용비 등 사업비 계상 시 견적서 제출
- ④ 협력업체, 거래처 등록 증명서 등
- ⑤ 가점 관련 증빙서류의 경우 선정, 포상 등 공문, 포상내역 제출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02-2284-1775, 1786

47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사업명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주관부처

- 환경부

■ 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부서: 해외사업개발실

■ 사업목적

-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해외 환경 환경프로젝트의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 효과 창출

■ 신청자격

- (지원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과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산업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단, 국외 소재 기업/기관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 자격 제한(신청기업, 참여기관 모두 해당)
 -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신청기업만 해당)
※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 －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단체인 경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지원 내용

- (예비 타당성조사) 해외 환경프로젝트 사업 초기단계에 추진 가능성 등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
- (본 타당성조사)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타당성조사 사업
- (지원금액) 지원사업 당 예비타당성조사는 2억 원, 본타당성조사는 7억 원 내외
- (지원비율) 수행기업, 참여기관별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상이
 - (중소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중견기업 주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중소/중견 주관이고 대기업 포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 ※ 1)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 간 공동사업 신청 시 지원 제외
 - 2) 정부 간 협의 등을 통한 지정공모 사업은 공고에 명시하여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100%)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최소부담비율) 부담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총 사업비 100% 기준)〉

No	제출서류	민감부담금	
		현금	현물
1	수행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70%	24%
1.1	- 참여기관에 대기업(공기업)이 포함된 경우	60%	32%
2	수행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50%	40%
2.1	- 참여기관에 대기업(공기업)이 포함된 경우	60%	32%

* 수행기업은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

-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시장형/준시장 공기업을 포함하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고시 기준에 따름(별도 확인 필수)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은 해당 공고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된 공공기관 지정안의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은 해당 공고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음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제안서 작성 · 신청	사전검토	발표평가	전담기관 조정 (필요시)	확정
신청기업/ 참여기관	전담기관	신청기업/참여기관 평가위 원회	전담기관	전담기관

※ 사업 선정에 있어 평가위원회 구성, 사전 검토, 선정평가 방식,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이의 신청 등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 2월

■ 신청기간

- 매년 초 정기공고(2월, 자유공모) 및 정부 간 합의에 의한 지정공모(필요시)를 진행하며, 기술원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내년도 공고는 2022년 11월 말 공고 예정임
 - ※ 잔여 예산 발생 또는 필요시 추가 공모하며, 본타당성조사는 상시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 ① 신청서류 일체 이메일 송부 및 ②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③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주관/참여) 원본 필요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본관 3층) /주소: (우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 ※ 환경 프로젝트의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내용, 수주계획 및 기술적용계획 등 내용을 포함하고 제안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목차 등 변경하여 작성 가능
 - (요약서) 프로젝트 개요, 가점 항목, 지원실적(최근 3년), 추진 경위 및 계획, 타당성조사 내용 등 제시
 - (외부환경)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타), 사업대상지역 정치·사회·경제 등
 - (내부역량) 조직·인력 운영계획 및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 (수행계획) 분야별 타당성조사 분석 방안 및 외주 활용계획, 소요예산 산출 근거 등
 - ※ 사업 비목별 산정기준 준수
- (기여도) 수출·수주 연계 파급효과, 환경개선 효과 등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임
-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선정에서 제외 가능
- 사업 종료후 일정기간 내 사업 미추진시 최종보고서 공개에 동의하여야 함
 - ※ 단, 비공개 요청 및 사유 제출시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원본/사본	참여기관 제출여부	비고
1	신청서	1	원본	—	—
2	사업제안서	10	사본	—	· 사업비 세부내역 제안서 내 포함 · USB 또는 CD 1개 포함
3	사업자등록증	1	사본	O	·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4	법인등기부등본	1	원본	O	—
5	중소기업 확인서	1	사본	—	·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1	사본	—	·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6	신용등급 확인서	1	사본	O	·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사본	O	—
8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1	사본	O	—
9	예비타당성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	1	사본	—	· 본타당성 신청일 경우 * 특수 여건 사업은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필요 여부 결정
10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	사본	—	· 정량평가 증빙 · 가점 증빙 ·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 1) 발주처 MOU, LOI, Letter 중 1부 2) 고용실적: 전년도, 전전년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및 정규직 확인/개인 정보 수집·활용 동의* 관 련 1부 * 대표이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02-2284-1756, 1766, 1764

48 혁신형 물기업 지정 · 지원 사업

■ 사업명

· 혁신형 물기업 지정 · 지원 사업

■ 주관부처

· 환경부

■ 운영기관

· 한국물산업협의회

■ 사업목적

- R&D ·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 · 해외진출 등을 지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

■ 신청자격

- 신청자격 필수요건: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기업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필수요건 세부항목
업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업력	- 최근 2년 이상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부품 · 장치 · 기기 · 기술 또는 공법 보유

* 국내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로부터 받은 부품 · 장치 · 기기 · 기술 또는 공법 인증은 신청자격 요건으로 불인정

-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외 대상: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2조제3호의 물기업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 범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년도부터 3년을 유예기간으로 인정

3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5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6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단, 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7	재무제표 기준, 최근 2년간 평균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2년간 연속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평가 시 중점사항: 국내외 사업실적 우수성, 보유 기술의 실용화 실적, 혁신성, 해외시장 확대 가능성 등

■ 지원내용

- 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구 분	지원내용	금액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개별지원)	· 기업 현황진단 및 R&D전략 설계 지원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기업현황 진단,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기술 가치평가 및 고도화 지원	기업당 6천만원 이내
	· 연구시설 개선 지원 -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 개선비용 지원	
	· 연구시설 개선 지원 -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 개선비용 지원	
혁신기술 해외진출 (개별지원)	·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 - 테스트 베드(Test-Bed) 등을 활용한 신제품 성능평가 지원 - 현지 테스트 베드 설치를 통한 기술 검증 지원	기업당 75백만원 이내
	·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 해외발주처 요구를 반영한 변형 시제품 제작지원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비관세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국제인증 획득 등을 지원	
판로개척 (공동지원)	·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 지원	기업당 75백만원 이내
	·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 해외 주요 물산업 전시회 참가지원 및 혁신형 물기업 해외홍보 등을 통한 물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 당해년도 예산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75백만원/년 지원

· 사후 관리

-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성과 모니터링

※ 정기평가: 연 1회, 종합평가: 5년/1회

-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수렴(수시)

- 국내외 사업실적,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 혁신형 물기업 지정 자격 요건 점검 (1년 단위)
 - 지정기업에 대한 자격 기준 검토
-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은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함. 다만, 매년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취소할 수 있음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 및 시행령 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에 대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및 시행령 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공고 및 신청 · 접수	한국물산업협의회(온 · 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한국물산업협의회(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 · 운영)
▼	
평가(1차, 2차)	평가(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지정심의	물산업기술심사단 지정심의(10개사)
▼	
지정서 교부	환경부(10개사)
▼	
협약 체결	혁신형 물기업 ↔ 한국물산업협의회
▼	
중간점검(현장)	혁신형 물기업의 사업 진행 현황, 예산 등 사용 현장 점검
▼	
정산 및 사후관리	혁신형물기업↔한국물산업협의회↔환경부

■ 신청기간

- 3~4월

■ 신청방법

- 접수 방법: 메일(innowater@kwp.or.kr)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공고문 별지 서식, 발표자료* 및 관련 서류 일체(「혁신형 물기업 운영규정」 참조)

※ 신청일은 마감일과 동일하게 기재 요망

* 혁신기술 중심으로 10페이지 이내 작성하여 제출

※ 제출 예시) 기업명.zip(파일명)

- | | |
|---------------------------|--------------------------|
| 1. 신청서_기업명 | 5-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 2. 사업현황 설명 자료_기업명 | 5-4. 재무제표('20&'21년) |
| 3. 수출실적 집계표_기업명 | 5-5. 인증서(국외), 5-7. 지식재산권 |
| 3-1. 증명서 | 5-6. 고용보험명부 |
| 4.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_기업명 | 6. 가점 서류_기업명 |
| 5. 제출서류_기업명 | 6-1-a. NET |
| 5-1. 사업자등록증, 5-2. 중소기업확인서 | 6-2. 가점명 |
| 5-2. 법인등기부등본 | 7. 발표자료_기업명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일 18시 이후 자료 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서류

목 록	담당기관 예시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3.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증명서만 인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6.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 수출실적 조회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진행 · 신청일 기준(최근 2년 이상) 최종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및 기타 수출 · 실적 증명서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 간접수출 : 한국무역정보통신 (www.ktnet.co.kr)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7. 해외 인증서 등	해당 기업에 한함
8.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증빙서류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SEARCH →특허 · 실용신안 →검색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특허청 (www.kipo.or.kr)
9.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사업장→증명원신청.발급→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수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목 록	담당기관 예시
10. NET/NEP	· NET신기술인증 (www.netmark.or.kr) · NEP신제품인증 (www.nepmark.or.kr)
11. Inno-Biz기업 · 지방청 이노비즈기업 담당자 확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www.innobiz.net)기타신청→확인서 사본 발급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이노비즈협회
12. 기업부설연구소 · koia연구소/전담부서신고관리시스템(www.md.or.kr)→바로가기 서비스→인증서 출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
13. 기타 가점 증빙서류	해당 기업에 한함

■ 문의처

-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6
-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과: 02-2634-6784

49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현지 기술검증 사업

■ 사업명

-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현지 기술검증 지원사업

■ 주관부처

- 환경부

■ 운영기관

- 한국물산업협의회

■ 신청자격

- 지원 대상: 물분야 우수 부품 및 기자재 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단체 등
* 국내에서 개발 또는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써 국내·외 특허권에 문제가 없는 기술
- 지원 분야: 상·하수도, 수처리, 하·폐수 재이용(빗물 이용 포함), 상·하수도 관로, 기타 물산업 관련 부품 및 기자재 기술
- 지원 대상국: 북미(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 등 선진국 물시장 및 물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 상기 지역 이외의 국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결정
- 지원 대상 사업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 법률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술 평가 또는 기술 검증
 - 진출 대상국 발주처나 수요처 등의 요구에 의한 건으로 국내 물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지 기술 테스트 또는 평가
 - 단, 기술 테스트 또는 검증을 위한 진행 정도가 구체화되어 공고된 사업 기간 내 현지 기술평가 진행이 가능한 사업
-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현지 기관과의 계약 또는 협약이 체결되어 기술평가 및 테스트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를 획득할 예정인 사업
- 신청제한
 - 은행금융거래 불량자 및 세금 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참여 제한 기간 중에 있는

-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정부의 사업화 또는 연구과제를 지원받아 수행 중인 자
 - ※ 중복지원 불가하며 그로 인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 지원내용

- 현지 기술 평가 또는 테스트, 제3자 검증 소요비용 일부
 -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테스트 비용, 물품 운송료, 현지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기타경비 등
- 해외 진출 및 기술평가 관련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7~8월

■ 신청방법

- 접수 방법: 메일(kwp@kwp.or.kr)로 관련서류 제출
- 참가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 전자우편(kwp@kwp.or.kr)
 - ※ 메일 제목: (기업명)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현지 기술검증 지원사업 신청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마감시한까지 제출 분에 한하여 인정
 - * 운영지침에 제시된 양식 이외의 지원사업 신청 부품 및 기자재 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제출 가능

■ 신청서류

- 접수 시 제출 서류
 - 신청 공문 및 본 사업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른 신청서류 일체
 - ※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기술검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조
 - 1) 사업수행계획서 1부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5)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 나.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행)

- 6)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1부
- 7) 별지 서식의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주의사항

-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구성 신청기업 중 주관기업 명의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관기업을 제외한 신청기업의 기업 소개자료 및 컨소시엄 협정문 등 컨소시엄 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 필요
-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이메일로 서류접수 후 회신 이메일로 접수확인증 송부

■ 문의처

-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044-201-7636
- 한국물산업협의회 물기업 담당과: 02-2634-6785

50 | 국제입찰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명

· 국제입찰 컨설팅 지원사업

■ 주관부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 운영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 담당부서: 국제의료사업단 해외의료컨설팅팀

■ 사업목적

· 해외조달시장 규모 대비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진출 실적이 저조하여 유관기업에게 핵심역량 분석, 해외발주처 수요조사 및 분석, 네트워크 구축, 진출전략 컨설팅, 제안서 작성 등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필요

· 이에 따라 동 사업을 통하여 가시적인 국내 보건산업의 해외진출 성과 창출로 해외 인지도와 경쟁력 제고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신청자격

- 의료서비스, 의료정보시스템, 컨설팅, 의료기기, 제약 등 해외조달시장진출에 관심 있는 보건산업체
-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국제입찰 또는 ODA 프로젝트 참여 경험 보유 기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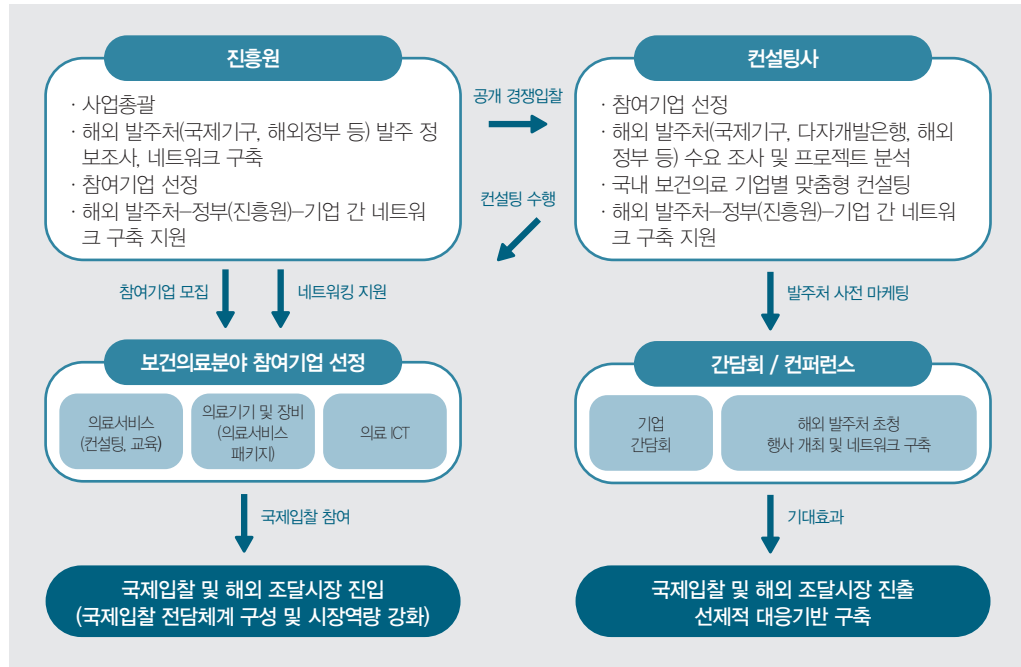
- 세부 지원내역
- (단계별 컨설팅 지원) ① 참여대상 선정 → ② 프로젝트 발굴 · 조사 → ③ 프로젝트-기업 매칭 → ④ 네트워크 구축 → ⑤ 제안서 제출의 순으로 이루어짐. 상세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컨설팅 지원 절차〉

단계	주요내용															
① 참여대상 선정	- 기업모집 공고에 따라 기업역량, 사업 아이템, 국제입찰 경험보유, 사업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기업 선정 (10개사 내외) ※ 가산점 부여 항목은 공고문의 붙임 참고 ※ 평가위원 구성: 외부전문가(4) + 내부 평가위원(1) + 컨설팅사 평가위원(1)															
② 프로젝트 발굴·조사 지원(상시)	- 기업별 타겟 분야 프로젝트 입찰공고 수시확인 - 타겟 국가 및 해외 발주처 대상 프로젝트 조사, 분석(기술, 사업성, 기타 등록 요구조건 파악 등), 발굴 및 선별 지원 ※ 선(先)제안 가능															
③ 프로젝트-기업 매칭	- 선정기업에 적합한 입찰 프로젝트 매칭 및 입찰지원 전략 코칭 ※ 컨설팅사-참여기업 간 역할분담 <table><thead><tr><th>컨설팅사</th><th></th><th>참여기업</th></tr></thead><tbody><tr><td>기업 핵심역량 파악</td><td></td><td>기업 정보 제공 및 주요 경쟁력 도출</td></tr><tr><td>타겟 국가 및 주요 발주처 수요조사</td><td>→</td><td>관심국가 및 프로젝트 정보 제공</td></tr><tr><td>프로젝트 분석·발굴 및 매칭</td><td></td><td rowspan="2">참여 가능 프로젝트 선정</td></tr><tr><td>입찰지원 전략 코칭</td><td></td></tr></tbody></table>		컨설팅사		참여기업	기업 핵심역량 파악		기업 정보 제공 및 주요 경쟁력 도출	타겟 국가 및 주요 발주처 수요조사	→	관심국가 및 프로젝트 정보 제공	프로젝트 분석·발굴 및 매칭		참여 가능 프로젝트 선정	입찰지원 전략 코칭	
컨설팅사		참여기업														
기업 핵심역량 파악		기업 정보 제공 및 주요 경쟁력 도출														
타겟 국가 및 주요 발주처 수요조사	→	관심국가 및 프로젝트 정보 제공														
프로젝트 분석·발굴 및 매칭		참여 가능 프로젝트 선정														
입찰지원 전략 코칭																
④ 해외 발주기관-정부(진흥원)-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주요 프로젝트 관련 핵심 정부·기관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및 경험공유, 지식이전 교류의 장 마련 -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해외정부의 보건 의료 분야 핵심 관계자를 초청하여 기관별 국가별 국제입찰 및 해외조달시장 동향 및 주요 프로젝트 소개, 비즈니스 상담회 등 네트워킹 교류의 장 마련 ※ 컨설팅사-참여기업 간 역할분담 <table><thead><tr><th>컨설팅사</th><th></th><th>참여기업</th></tr></thead><tbody><tr><td>주요 관계자 발굴 및 초청</td><td></td><td>참여 가능 프로젝트 관련 주요 관계자 및 현지기업 조사, 초청 요청</td></tr><tr><td>주요 관계자 초청 네트워크 구축 행사 기획</td><td>→</td><td rowspan="2">행사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 후속 진행 사항 공유</td></tr><tr><td>비즈니스 상담회 등 네트워킹 및 홍보 마케팅 지원</td><td></td></tr></tbody></table>		컨설팅사		참여기업	주요 관계자 발굴 및 초청		참여 가능 프로젝트 관련 주요 관계자 및 현지기업 조사, 초청 요청	주요 관계자 초청 네트워크 구축 행사 기획	→	행사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 후속 진행 사항 공유	비즈니스 상담회 등 네트워킹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컨설팅사		참여기업														
주요 관계자 발굴 및 초청		참여 가능 프로젝트 관련 주요 관계자 및 현지기업 조사, 초청 요청														
주요 관계자 초청 네트워크 구축 행사 기획	→	행사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 후속 진행 사항 공유														
비즈니스 상담회 등 네트워킹 및 홍보 마케팅 지원																
⑤ 기업별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지원	- 기업별 핵심 역량 기반 발굴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선 제안용 제안서 혹은 본 입찰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집중 지원 ※ 영문 PPT 혹은 Word 양식으로 제출 - 타겟 국가 내 관련 기관 또는 현지 기업과의 협약·계약 체결 ※ 컨설팅사-참여기업 간 역할분담 <table><thead><tr><th>컨설팅사</th><th></th><th>참여기업</th></tr></thead><tbody><tr><td>선 제안용 제안서 혹은 본 입찰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td><td>→</td><td>제안서 공동 작성(기술제안), 검토 및 제출</td></tr><tr><td></td><td></td><td>타겟국가 내 국제입찰 관련 기관 또는 현지기업과의 협약/계약 체결</td></tr></tbody></table>		컨설팅사		참여기업	선 제안용 제안서 혹은 본 입찰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공동 작성(기술제안), 검토 및 제출			타겟국가 내 국제입찰 관련 기관 또는 현지기업과의 협약/계약 체결					
컨설팅사		참여기업														
선 제안용 제안서 혹은 본 입찰용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공동 작성(기술제안), 검토 및 제출														
		타겟국가 내 국제입찰 관련 기관 또는 현지기업과의 협약/계약 체결														

- (국제입찰 정보제공) 보건의료 프로젝트 발주처(해외정부,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 조달정보 및 입찰동향 수집·분석 및 제공(국제입찰정보 격주 메일링 제공, 국제입찰 동향지 발간 등)

· 사업 추진 체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컨설팅사 공동 컨설팅(아래 그림 참고)



· 진흥원 및 참여기업별 수행업무

－ (진흥원) 사업 관리 · 감독 등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

- 사업 공고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입찰 컨설팅사와 참여기업(보건산업체) 선정
- 사업 참여기업과 국제입찰 컨설팅사 간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
-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등
- 주요 프로젝트 관련 핵심 정부 및 기관 관계자 초청 네트워킹 행사 개최

－ (참여기업) 사업 신청, 참여 및 수행

- 신청기업은 유망 기술/제품의 국제입찰 참여를 위해 추진할 상세 내용과 목표를 제시하여 사업 신청
- 진흥원, 위탁사업 수행자에 해외입찰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기업정보 및 자료제공
- 위탁사업 수행자 제공 컨설팅 관련 요청사항 수행, 네트워크 구축 행사 참여 및 공동제안서 작성 등 적극적인 사업 참여
- 정기 기업 간담회 참석 및 사업 참여 의견 · 경험 공유
- 최종보고서(11월) 제출
 - ※ 결과보고 내용은 진흥원 보도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 결과보고 시 대외비 자료는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비공개 가능
- 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을 통한 국제입찰 성사 등의 성과 홍보 시 복지부(진흥원) 지원 사항을 표시
 - ※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기업의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향후 2년간 진흥원 해외의료컨설팅팀에서 지원하는 각종사업 참여 제한

· 사업수행 일정

참여기업 공모 · 접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6주 공고) ※ 필요시 연장 가능	1월
▼		
참여기업 평가 · 선정	· 참여기업 선정평가: 외부전문위원회(서면 및 대면평가)	3월
▼		
협약체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참여기업	4월
▼		
사업수행	· 컨설팅사 ↔ 참여기업	4월~11월
▼		
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1월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 양식은 추후 제공 예정

※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 수행 일정 변동 및 보고서 제출 생략 가능

· 참여기업 선정 절차

공 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약 6주간 공고 게재 ※ 필요시 연장 가능
▼	
서류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입찰컨설팅팀)	· 신청기업의 사업 참여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등 신청서류 검토 · 서류검토 후 평가대상 기업 선정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기회 부여, 자료제출 마감시간 엄수
▼	
사업계획서 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	· 신청기업의 역량 및 유망성, 사업추진계획, 목표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
▼	
선정 및 협약체결	· 최종 점수에 따라 지원 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지

※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 가능

· 사업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사업 수행 관리 및 보고) 사업수행과정에서 진흥원은 참여기업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요청 시 사업 진행경과 및 결과보고의 의무를 가짐
- (결과물 제출) 최종 보고서 제출
 - ※ 최종보고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 수행 일정 변동 및 보고서 제출 생략 가능

■ 신청기간

- 1~3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ho0326@khidi.or.kr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2부(신청기업 대표자의 직인 날인 필수), 사업계획서 1부 및 발표 자료(별도 필요시) 1부
 - 신청서 양식: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출입실적확인증명서(해당기업),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작년),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 비영리기관, 의료기관 등 신용평가등급 미보유 기업은 만점(5점)의 50%인 2.5점 부여
 - ※ 전년도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전년도 이전 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의료컨설팅팀: 043-713-8983

51 Arab Health 연계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 사업명

· Arab Health 연계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운영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 사업목적

· 다양한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에 비해 단일품목 생산 및 시장진입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신청자격

· 국내 외 시장 진출이 가능한 의료기기 제조 기업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Arab Health 2022 내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참가를 위한 부스임차 및 장치 현장 바이어 비즈니스 미팅 지원
 - ※ 부스 임차 및 장치관련 기업부담금 없음
 - ※ 정부지원금으로 동일 전시회 참가 지원(임차료, 장치비 등)을 받는 기업은 동 지원 사업 참여 불가
- 모집 대상 품목(예시,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연번	구분
1	의료용 소프트웨어
2	리모트 모니터링, 웨어러블 & IOT
3	디지털 치료기기(치료제)

연번	구분
4	전자약, 디지털 알약
5	기타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의무사항

– (관리기관 진흥원)

- 사업 공고 및 평가 기업 선정 진행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전시회 운영 지원
- 현지 바이어 미팅 등 참여기업 수출 후속 성과 지원
- 전시회 운영 성과 홍보 보도자료 등 대외 홍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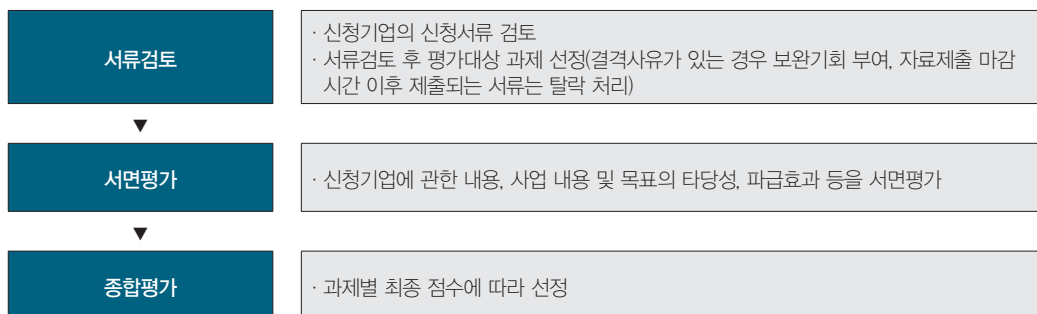
– (신청기업)

- 신청기업은 참가 시 출품할 제품에 대한 상세 내용과 목표를 제시하여 사업을 수행 사업 종료 후 성과보고표 제출
 - ※ 성과보고표 제출 시, 비즈니스미팅 건수와 예상 실적을 함께 제출
- 신청기업은 전시기간동안 인 이상 담당자 필히 상주하여야 하며 전시회 운영 및 홍보자료 제작을 위한 자료 제출
 - ※ (자료예시) 기업 로고 및 제품사진(고해상도 파일), 제품 홍보동영상, 기업/제품 소개 자료

· 추진절차

- 공고 및 신청 접수(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참여기업 선정평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선적서류 접수 마감(선정기업) → 전시물품 집하(선정기업) → 전시회 운영(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기업) → 성과공유/성과보고표제출(선정기업/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추진 상황에 따라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사전설명회 등의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 관리기관(진흥원)은 필수 전시 품목 기업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참여기업을 발굴 및 선정할 수 있음
 - ※ 신청기업은 사업 수행 시, 참가사 및 전시회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 성과보고표 제출 시 비즈니스 매칭 건수 및 실적 제출 요함

· 평가 및 선정 방법



· 평가항목

– 출품제품의 우수성 60%, 신청기업의 적절성 30%, 전시회 파급 효과 10% 비중으로 평가

출품제품의 우수성 (60%)	· 매출 규모 및 수출 이력 · 국내 · 외 인허가 등 인증 건수 ·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운영 컨셉 간 적합성 등
신청기업의 적절성 (30%)	·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 여부 ※ 매출규모, 종업원 수, 업력 등 · 신청기업 제품(기술)의 유망성 ※ 국내 · 외 시장 진출 가능성, 기술 수준 등 · 신청기업의 국내 · 외 시장 진출 의지
전시회 파급효과 (10%)	· 통합 전시관 참여로 인한 파급효과 · 전시회 중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국내 · 외 시장진입 효과 등

■ 신청기간

· 전년 10~11월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tyhawk@khidi.or.kr)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등
–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다운로드 및 작성]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 043-713-8862

52 |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

■ 사업명

·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운영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 사업목적

- 혁신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 기술대비 부족한 마케팅 역량 등으로 해외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대상으로 해외 진출 지원
- 마케팅, 현지시장조사, 국제운송,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등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비용 지원

구분	주관기관
전체 지원규모	총 10개 기업 내외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최대 15백만원 내외

■ 신청자격

- 수출 유망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 ※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허가증 및 판매실적 증빙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제한
 - 계약 해약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신청기업 등
 - 해당 신청기업 등의 지원 내용이 정부의 다른 지원 내용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범위: 마케팅, 현지시장 조사, 국제운송 지원, 글로벌 협력,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지원
 - ※ 지원금액은 과제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하고, 관리기관(진흥원)에서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에 필요한 비용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

* 소요 경비(여비, 활동비, 외부위탁용역비 등)를 지원하며, 신청기업의 인건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 불가능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내용 예시〉

연번	분류	주요 지원 내용
1	마케팅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비(타기관 지원 전시회 지원 불가),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소요비용, 기업(제품) 홍보자료 제작 등
2	현지시장 조사	파트너 · 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 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 · 기업실태조사 등 * 진흥원 해외지사 활용 가능
3	국제운송 지원	수출제품(샘플 제품 포함) 보험, 해외운송비 등
4	글로벌 협력	글로벌 기업 협력(공동 · 위탁 연구개발), 위탁생산, 지식재산권 및 기술 사업화, 국내 · 외 판권 등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 비용의 30% 이상을 기업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 본 지원 사업에 사용
※ (예시) 정부지원금 1,500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 현금 450만원 이상 본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용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사용 불가)
- (지원금 지급 방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당해 연도 지원금 총액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 가능함. 정부지원금은 총 2회로 분할(7:3)으로 지급하며, 1차 보조금은 사업시작과 동시에 지급하며, 2차 잔금보조금은 중간보고(8월) 진행 후 지급 가능
- (사업비 집행) 정부지원금은 2회 분할(7:3) 지급하며, 1차분은 사업 시작 시(4월 예정), 2차분은 하반기 시작 시(9월 예정) 사업비 교부
 - 사업예산은 선정통보일로부터 집행가능(협약완료 이전 사용 금액 소급적용 가능)
 - ※ 예산 비목의 정의 및 사용 범위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하며,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간접비는 사업비에 편성 · 계상할 수 없음
 - ※ 기업부담금은 협약일로부터 1주 이내 주관기관으로 입금되고, 신청기업은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총사업비를 생성※ 본 과제는 정산과제로, 사업종료 즉시 회계감사를 통해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 사업추진 현황 및 결과보고 등의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이 미흡하다 판단되면 사업 중단 또는 지원금 삭감 및 환수
- 신청기업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신청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계량 · 비계량)를 증빙자료로 포함하여 제출 필(아래 표 참고)

연번	분류	주요 지원 내용
1	마케팅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제작 홍보 브로셔 및 영상 등
2	현지시장 조사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리서치 보고서, 실태조사 보고서 등
3	국제운송 지원	해외운송비용 견적서 등

연번	분류	주요 지원 내용
4	글로벌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판권 계약 체결 등

- 신청기업은 지원 사업 수행 시 추진할 상세 내용과 목표를 제시하여 사업을 수행, 사업 종료일에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 수행 중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컨설팅 1회 필수 진행
 -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정 회계 법인을 통한 정산 보고서 함께 제출(정부지원금 사용내역서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사업종료 전 지정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정부 지원금이 사용내역대로 지출되었는지 확인)
 - ※ 회계 정산 비용은 정부 지원금 계획안에 포함하여 집행
- 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향후 진흥원이 추진하는 연도별 성과 보고에 본 사업을 통한 지원 성과를 제출
- 사업 수행을 통한 국산 제품 수출 계약, 라이선스아웃, 기술 수출 등 주요 성과 홍보 시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사항을 표시

· 평가 및 선정 방법

- 1) 서류 검토(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청기업,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등 신청서류 검토(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보완기회 부여, 자료제출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탈락처리)
 - ※ 필요시 서면평가를 통해 구두평가 대상과제 또는 지원과제 선정 가능
- 2) 서면평가 및 구두평가(전문가 평가위원회): 신청기업에 관한 내용, 사업 내용 및 목표타당성, 파급 효과 등을 서면 또는 구두 평가
- 3) 종합평가: 과제별 최종 점수에 따라 지원과제
 - ※ 구두 평가 시 일시·장소는 별도 통지

· 평가 항목(평가 시 항목 변동 가능)

- 신청기업의 적절성,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파급효과로 평가

신청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의 적절성	– 맞춤형 비용 지원이 필요한 상황 여부 * 기업규모, 종업원 수, 업력 등 – 신청기업 제품(기술)의 유망성 *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기술 수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등 – 신청기업의 해외 진출 및 사업 추진 의지 – 신청기업의 경쟁력(연구개발 투자 비중 및 매출 등)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 맞춤형 비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사업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지원 금액 규모의 타당성 및 지출계획의 구체성
파급효과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 결과 활용계획 등

가산점 (10점)	1.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5점)	5. 여성기업(1점)
	2. 혁신 의료기기 지정 제품(3점)	6. 장애인기업(1점)
	3.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3점)	7. 벤처 인증기업(1점)
	4.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제품(3점)	8. 사회적 기업(1점)
	※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반영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기업: 참여기업이 의료기기 산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혁신 의료기기 지정 제품: 참여기업의 제품이 의료기기 산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서를 발급받은 제품

·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월
▼		
평가 및 선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평가위원회)	~3월 중
▼		
협약체결 및 협약금액 지급	① 협약체결(한국보건산업진흥원-신청기업 간 양자협약 체결) ② 사업계획서(선정 후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③ 정부지원금(70%) 교부	4월 중
▼		
착수보고 및 사업 수행	신청기업	4월~11월
▼		
중간점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시, 8월 중
▼		
협력 성과 공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청기업	11월 초
▼		
사업종료 (결과보고서 제출) ※ 지정된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포함	신청기업	12월

※ 중간점검 결과 사업 수행이 현저히 미비하여 사업기간 내 완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약 해지 및 지원금의 환수 가능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추진 상황에 따라 공고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등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사업 수행 시 지원금 교부조건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제출 시 회계정산보고서 제출 요함 (지원금 사용 계획(산출내역서) 시 회계정산비용 포함 의무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절차



※ (협약 체결 및 선금 지급 필요 서류)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입인지, 선금청구 공문, 선금 교부신청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전자(세금)계산서, 착수계, 사업공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잔금 지급 필요 서류) 잔금청구 공문, 잔금 교부신청서, 완료계,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정산보고서, 결과 보고서

※ 추가 서류 필요 시 별도

■ 신청기간

· 3월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우편 또는 방문 제출(1부)

※ 이메일 제출: 신청서 원본파일 및 부록서류 스캔파일 일체, 우편/방문 제출: 사업신청서 1부 및 부록서류 일체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신청기업 대표의 직인 날인 원본 1부) 및 신청서 원본파일(PDF 파일 금지)

※ 원본 전자 파일과 부록서류는 압축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제출 요망

※ 파일제목 예사: (기업명)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양식: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스프링 및 여타의 제본 금지, 반드시 사업신청서 좌측 상단에 집계 고정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부록서류는 반드시 각 사업신청서 내에 첨부

- 1) 가산점 부여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 최근 2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3) 사업자 등록증
-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사람)
- 5) 기타 신청기업의 기술력 또는 제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 043-713-8862

53 SW산업 글로벌 현지화 마케팅 진출지원

■ 사업명

· SW산업 글로벌 현지화 마케팅 진출지원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사업목적

· 국내 SW/ICT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 SW제품 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수출시장에 맞는 SW 현지 제품화전략수립 · 현지화 · 품질검증 및 수출마케팅 등을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견 SW기업 중 현지화 전략수립을 포함한 구체적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직접지원

— 현지화를 위한 전략수립/현지화개발/품질검증에 필요한 자금, 기업당 총 사업비 65백만원* 지원
* 정부지원금 55백만원/민간매칭금 10백만원

· (현지화 전략수립) 현지화 개발 전, 목표시장의 언어 · 문화 · 사회적 요소, 고객 특성 등의 파악을 위한 조사 · 분석

· (현지화 개발)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시각적 맞춤화(UI/UX, 언어 등), 기능적 맞춤화(시장별 익숙한 기능 등) 등을 통한 제품 개선

· (품질검증) 목표시장에 적용 가능한지 현지기업 · 고객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현지 적합성, 사용성 등 평가

구분		활동내용
자금지원	현지화 전략수립	- 진출 계획 국가 시장 정보조사 및 분석 컨설팅 - IP(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 법률 자문 - 현지진출 관련 규제, 법령 등 자문 - 현지화 요구사항 수집을 위한 활동
	현지화 개발	- SW제품/서비스의 현지화 설계, 구현, QA - 디자인 관련 UX, UI 개선 - 제품, SW데모버전, 세일즈 툴킷(제품 사용 매뉴얼 등) 번역 및 제작
	품질검증	- SW제품/서비스의 언어, 기능, 문화적 적합성 검증 - 현지에서의 제품 반응, 적합성 조사를 위해 수반되는 해외 ICT 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의 활동 - (필수항목) 목표시장, IT분야의 수준이 있는 SW수요자 또는 현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기업에 의한 SW제품/서비스의 적합성 평가 * 산출물 필수 제출

2) 간접지원

- 목표시장 맞춤형 기술성 · 시장성 및 경제성, 국내외 경쟁력 등 진출전략 방향제시
- (멘토링) 전담 멘토 배정, 해외진출 전략 수립 과정 밀착지원 · 관리(기업별 5회)
- (시장조사 보고서) 국가별/품목별 수출입동향, 경쟁동향, 유통구조, 진출전략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보고서 제공
- (비즈니스 매칭) 현지 잠재 고객사 · 투자사 등과의 비즈니스 매칭(기업별 5회)

■ 신청기간

· 3월

■ 신청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마트시스템(<https://smartnipakr>)을 통한 전산접수
- ※ 주의사항: 사업신청서 접수는 '전산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마감 시간 준수

■ 신청방법

- 과제접수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전산접수시
1	사업수행계획서	○
2	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협약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4	현금 출자(납입) 협약서	○

제출서류		전산접수시
5	사전 자기점검표	○
6	평가항목 참조표	○
7	사업자등록증	○
8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각 1부	○
10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 1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11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1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전산 접수해야 하며, 필수 서류 전부(일부) 누락할 경우 적정성(사전)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위의 첨부서류는 위탁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이행보증보험증권,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점령이행각서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사업문의): 043-931-5572
-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전산접수문의): 070-5151-8239, 8234, 8215

54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 사업명

·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운영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사업목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기술의 글로벌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자격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제외대상
 - － 휴·폐업 기업
 -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 단, 화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재기업)는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 지원기업이 희망 진출 지역 및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GCC, 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함. ① 해외 기술수요 · 시장 조사 → ② 현지 파트너 발굴 → ③ 기술계약 체결 지원 등 전주기 컨설팅 서비스 지원

*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GCC): 현지 지사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 글로벌기술사업화 협력센터로, 기술시장 조사 · 파트너 발굴 · 기술거래 등 지원함. 지원권역은 다음과 같음

지원 권역	동북아	일본, 중국(북경, 상해)
	동남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CIS	러시아(CIS 포함)

* 상기 권역 외에도 싱가포르 및 북미, 유럽 권역이 있음

· 지원 가능지역 및 주요 대상분야

구분	권역	지역	GCC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력센터 (GCC)	동북아	일본	한국기술벤처재단	바이오의료, 친환경
		중국(상해)	대광경영자문차이나	바이오의료, 전자(반도체), 재생에너지
		중국(북경)	제타플랜인베스트	바이오의료, 전자(반도체), 재생에너지, 친환경
	동남아	베트남	글로벌코넷	자동차, 기계, 전자, ICT
		인도네시아	글로벌코넷	바이오의료, 기계/조선, 친환경, ICT
	CIS	러시아 (CIS 포함)	(주)유라스텍	바이오의료, 부품제조, 그린에너지, ICT

※ 상기 분야는 현지 수요가 높은 산업 분야이며, 해당 분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GCC) 또는 EEN* 한국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 후, 아래와 같이 기술사업화 업무 지원

* EEN(Enterprise Europe Network):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2008년 출범한 세계 최대의 글로벌 사업협력 네트워크임. 주요 서비스로, 온라인 DB 및 오프라인 행사를 통한 글로벌 협력 파트너 발굴,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자문서비스, 혁신지원 정부지원금 연계와 혁신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해주는 혁신지원서비스 등이 있음

** EEN 한국 컨소시엄(주)이디리서치, 무역협회, 델타텍코리아: ①한-EU 기술사업화 협력지원-기술라이센스 계약, 합작투자, 기술제품계약 및 기술 협력 파트너 발굴을 위한 상담회, 전시회 참가 지원, ②한-EU 비즈니스 협력지원-무역중개, 아웃소싱 및 비즈니스 협력 파트너 발굴을 위한 상담회, 전시회 참가 지원, ③한-EU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유럽 국제공동연구 파트너 발굴 지원 및 상담회, 전시회 참가 지원

활동 구분	상세내용
① 현지 시장 조사	진출 희망 지역의 기술 시장동향 조사
② 파트너 발굴	해당 기술의 도입을 원하는 수요자 발굴 및 미팅 주선
③ 전문 컨설팅 지원	현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법률, 회계, 투자 분야 컨설팅 자문 지원

활동 구분	상세내용
④ 기술 홍보 지원	지원기업 기술 프로필 작성 및 홍보 지원
⑤ 계약 자문	지원기업-현지 수요자 간 기술 계약 자문

※ 신청기업의 희망 서비스 유형*에 따라, ①~⑤의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희망 서비스 유형: 기술이전 및 기술거래, 제품거래, 국제공동연구, 투자유치, 해외시장진출, 바이어 발굴, JV 설립, 기타(복수체크 가능)

· 사업절차

단 계	추진내용
사업광고	·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공고
신청 · 접수	· 신청기업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GCC/EEN Korea)
신청기업 평가	· 신청기업 선정평가(각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에서 진행) * 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사, 평가 * 평가일정 및 방법은 업체에 개별 통보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	· 선정기업 대상 진출전략 수립 지원 - 선정기업 개별 미팅을 통한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지원추진	· 해외 파트너기업(기술) 발굴, 계약지원 등

· 지원기업 선정 방법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진출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선정

※ 기술사업화 전문가별 평가 일정이 상이하므로, 상세사항은 각 접수처에 문의

· 선정 우대사항

- 지역별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하여 가점 5점 부여
- 접수 마감일 기준 NTB(<https://www.ntb.kr/>) 기술은행에 등록된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 3점 부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경우 가점 3점 부여
- 국제특허로 출원 · 등록되어 해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의 경우 가점 3점 부여

■ 신청기간

- (상반기) 2~3월
- (하반기) 7~8월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각 기관별 문의처로 이메일 신청
 - ※ 지원서 작성 시, 기술정보 1건당 1개 지원서를 작성하며, 복수 지원서 제출 가능

■ 신청서류

- 1) (필수) 지원서
- 2) (필수)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 3) (필수) 최근 2년간 재무제표
- 4) (선택) 우대가점 증빙자료(NTB 등록화면, R&D 최종평가 결과 공문, 국제특허 출원증 등)
- 5) (선택) 신청기술 관련 홍보자료
 - ※ 미비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55 |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 사업명

·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 주관부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운영기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기업성장실

■ 사업목적

· 국내 기상기업의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한국 기상장비 · 기술 해외 마케팅 · 홍보

■ 신청자격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시회 부스 임차료, 부스 구축비, 통역비, 공동 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

지원 내용	세부 내용
해외바이어 발굴 · 매칭 및 상담 지원	– 해외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지원기업 1:1 온라인 수출상담 지원
	– 상담회 부스 및 상담 기자재 제공
	– 상담 통역 지원 등
홍보물 제작	– 수출 기술 · 제품 소개 영문 카탈로그 및 동영상 제작 지원
사전 · 사후 마케팅	– 유관기관(해외기상청 등) 대상 홍보 지원

■ 신청기간

· 1~2월

■ 신청방법

· 1~2월 중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공고가 기상산업기술원 웹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해당 공지 사항 내 첨부된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 1) 신청공문(자율양식)
- 2)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 3)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가 계획서
-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부
- 7)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1부
- 8)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입증서류 일체 1부
- 9) 기업소개자료(자유형식) 1부
※ 사업신청일 기준 기상사업자 미등록 기업은 선정 시 사업기간 내 기상사업 등록증 제출

■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업성장실: 070-5003-5247

56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 사업명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 주관부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운영기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기업성장실

■ 사업목적

- 국내 수출유망 중소 기상기업 대상 체계적 수출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저변확대 및 전문기업 육성
- 우수 기상기술 보유 기상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 기상기후산업 시장 진출 활성화 및 기술현지화 지원

■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1)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2) 기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기술현지화 부문 지원의 경우 진출대상국의 사업기관(기관, 연구소, 기업)이 위탁사업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필수사항)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수출 마케팅)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 (기술현지화) 기업 당 최대 30백만원

· 지원분야: 수출마케팅, 기술현지화 중 1개 분야 지원가능(중복 지원불가)

-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초청,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 인증·특허 획득 등 지원
- (기술현지화) 국내 유망 기상기술을 대상국 수요 및 규제 부합하는 현지 협력기관(연구소, 기업)과 공동개발(변형·개조) 비용 지원

지원 분야		지원 내역	지원 금액
수출 마 케 팅	외국어 홍보물 제작	· 카탈로그, 홈페이지, 홍보영상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최대 10백만원
	국제 전시회 참가	· 국제 전시회 참가비용(개별 참가시)	
	해외 시장 조사	· 해외 시장 조사 비용	
	바이어 초청	·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해외 인증·특허 획득	· 해외 기술 검증, 품질 인증 및 획득, 특허 등 소요비용	
	기타 분야	· 기타 수출 마케팅 활동(통번역, 역량 강화 교육, 수출 관련 컨설팅 등)	
기술 현지화		· 해외 기술 현지화 소요비용 지원	최대 30백만원

· 사업 일정

- [신청기간]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 설명회 개최] → [중간점검] → [결과보고] → [사업비 정산 실시] → [수출실적 보고]

※ 지원 대상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수출 실적 제출 필요

□ 신청기간

· 1~2월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서류 작성방법: 사업안내서의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1)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 계획서
- 2) 주관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 간 업무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기술현지화 지원 시에만 제출
- 3) 서약서
- 4)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6)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7)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국세청제출용) 1부
- 8)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입증서류 1부(해당기업에 한함)
- 9) 기업소개자료(자유형식) 1부
- 1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부

■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업성장실: 070-5003-5246, 5248

57 K-테스트베드

■ 사업명

· K-테스트베드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 운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목적

· 국내 6개 공공·민간 기관의 인프라를 민간기업에게 개방하여, 실증지원-확인서발급-판로확대 연계를 도모하는 실증지원 사업

■ 신청자격

· 대한민국 숲 산업 분야 기업

■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시제품의 실증을 위해 공공기관의 실증인프라를 제공하고, 판로확대까지 연계하는 국가 통합 플랫폼
- 기업이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매칭되어, 공공기관의 실증인프라(시설물, 연구시설 및 부지 등)와 전문 인력의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 또는 기술·제품의 단순실증 및 성능확인 시행
- (연구·개발 지원) 공공·민간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시행 또는 기관과 공동 연구·개발 시행
- (단순실증) 공공·민간 기관의 실증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제품의 실증 또는 검증을 시행
- (기술·제품 성능확인) 실증인프라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제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행계획에 따른 실증진행 후 자체평가(참여기업 주관)와 현장평가(참여기관 주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평가시 성능확인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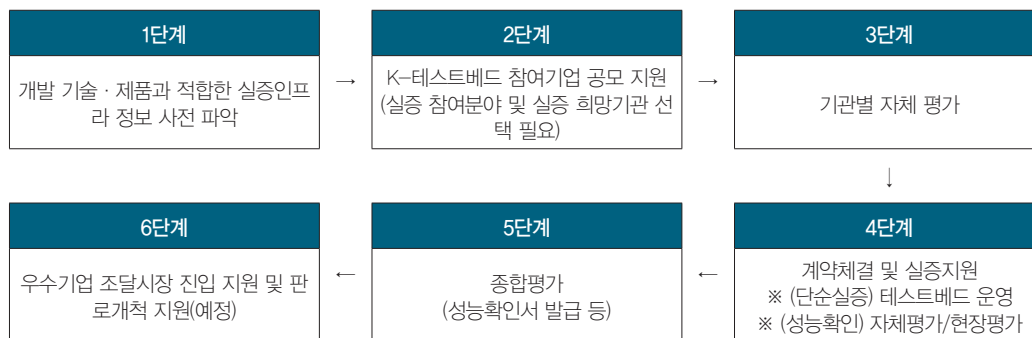
혁신조달 기업을 위한 주요 수출 지원사업

- 기관마다 지원내용이 상이하여 홈페이지 참고 요망

K 테스트베드 운영기관



· 프로세스



□ 신청기간

- (상반기) 4~5월
- (하반기) 9~10월

■ 신청방법

- 접수방법: 참여 희망 공모 분야별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K-water 물산업플랫폼(www.kwater.or.kr/wis) 접속 → [K-테스트베드] → [공고/신청]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및 제안서
 - 기관별 접수 유의 사항 참조
 - ※ 공모 분야별, 기관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니, 기관별 접수 유의 사항 참고 요망

■ 문의처

- 한국수자원공사 K-테스트베드운영부(공고 관련 문의): 042-629-2519
- 인프라 관련 문의
 - K-water 물산업플랫폼(www.kwater.or.kr/wis) 접속 → [K-테스트베드] → [사업소개] → [참여 기관] 탭에서 기관별 담당자 연락처 확인 가능

58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사업명

·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주관부처

· 신용보증기금

■ 운영기관

· 신용보증기금

※ 담당부서: 신용보증부

■ 사업목적

· 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라 '수출희망-수출진입-수출확장-수출주력'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신용 보증을 지원

■ 신청자격

· (개인기업, 법인기업, 기업단체(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도박 ·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 제한

·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 표 참고

단계		신규	우대강화		
		수출희망	수출진입	수출확장	수출주력
지원대상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을 희망 또는 준비 중인 중소기업	수출실적 연 100만 달러 미만 (서비스업 · 신성장 · 지방소재 기업은 30만 달러 미만)	수출실적 연 100만~500만 달러 (서비스업 · 신성장 · 지방소재 기업은 30만~150만 달러)	수출실적 연 500만 달러 이상 (서비스업 · 신성장 · 지방소재 기업은 150만 달러 이상)
기업당 한도	I, II 군	3억원	30억원*		
	III, IV 군	1억원			

단계		신규	우대강화		
매출액 한도	I, II 군	사정특례	매출액의 1/2~1/3	매출액의 1/2	
	III, IV 군		매출액의 1/3~1/4	매출액의 1/3	매출액의 1/2
보증료		$\Delta 0.3\%p$	$\Delta 0.2\%p$		
보증비율		100%	90% 이상		

* 무역금융인 경우 최고보증한도 70억 원 적용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웹사이트 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웹사이트 내 [주요업무] - [신용보증] - [보증이용 절차]에서 확인 가능

1. 보증신청 및 상담

-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상담 신청
- 신규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 기존 보증거래기업은 전화상담 가능(방문상담 생략)
 - ※ 상담 단계에서,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서류 제출 시 원활한 상담 가능

2.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신보 홈페이지 내 신용보증 플랫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료제출 가능
-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출장 등을 통해 신용조사

3. 보증심사 및 승인

-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
- 각종 검토표 충족여부 검토
-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
- 보증승인(영업점 또는 본부)

4. 보증서 발급

■ 신청서류

- 주민등록증 초본
- 지방세납세등명 등 행정정보(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완납) 증명 등)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
- 납부내역증명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금년, 전년)
- 재무제표(최근 3년)
-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주택) 사본
- 전자로 수집이 불가능한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38

59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사업명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주관부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담당부서: 판로지원부

■ 사업목적

·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 네트워크: 대기업 보유 해외 무형적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 인프라: 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 신청자격

· (주관기업) 중소기업(5개 이상)과 함께 동반진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동반진출 사업 신청 주체

※ 한류연계 사업유형에 한해 중소기업도 주관기업 참여 가능(연예기획사 등)

※ 해외 거점 유형: 공동수주 및 시범사업에 한하여 주관기업과 중소기업 1:1 매칭 가능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각 세부 사업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사업 모집 공고 웹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운영절차

사업유형	지원내용
한류연계	한류행사, 한류콘텐츠, 한류 스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위한 홍보, 판매, 수출상담, 상품 개발 및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활동 지원
해외홈쇼핑	국내 홈쇼핑사의 해외방송채널을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방송 및 판매 지원
해외거점	- 대기업의 업종별, 진출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제품 현지화 및 수출 안정화 지원 - 국제 개발 협력, 사회간접자본 분야 공동 수주를 위한 현지 교섭, 조사분석, 현장 실증 활동 지원

· 정부지원금

- 지원규모: 총 과제비의 60% 이내(단,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총 사업비의 70% 지원)

· 사업 절차

- 주관기업 모집공고(협력재단)-> 주관기업 신청(주관기업)-> 주관기업 과제 선정(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위원회)->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주관기업, 관리기관)-> 참여기업 온라인 등록(참여기업)-> 사업수행(주관·참여기업)

· (1. 한류 연계) 글로벌 한류 문화행사 및 한류콘텐츠 등을 활용한 문화·산업 융합 중소기업 해외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한류마케팅) 글로벌 한류행사, 미디어 콘텐츠, 한류스타 등과 연계한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 (B2C) 진출 국가별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
- (B2B) 국내외 판로·수출 유관기관 연계한 우수상품 발굴 및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지원
- (추진절차)

· 1단계: 주관기업 과제 선정(재단/주관기업)-> 2단계: 선정과제 협약(재단/주관기업)-> 3단계: 중소기업 모집/선정(재단/주관기업)-> 4단계: 선정과제 수행(주관기업/참여기업)-> 5단계: 결과보고/정산(재단/주관기업)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항목
· 한류행사, 한류콘텐츠 연계 지원 - 참여기업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스타활용 마케팅 지원 - 참여기업 당 최대 4,000만원 지원 * 연예인·인플루언서 및 콘텐츠 IP 활용	· 공간임차료 및 장치비, 제품운송, 수출상담 등 한류행사, 홍보마케팅, 콘텐츠제작, 온·오프라인 입점, 스타마케팅 제반비용 * 비목별 50~100%까지 지원 가능

· (2. 해외 홈쇼핑) 국내 홈쇼핑사가 보유한 해외채널·플랫폼(합작법인, 협력사)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 및 판매 지원

－ (홈쇼핑 방송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홈쇼핑 입점 및 판매 활성화 활동 등 지원

※ 기업(제품) 선정 → 1:1 컨설팅(방송협약) → 해외홈쇼핑 방송 → 사후관리 등 연계 지원

－ (해외 판로개척)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조사 및 현지 홈쇼핑MD·유통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지원

－ (추진절차)

· 1단계: 주관기업 과제 선정(재단/주관기업)→ 2단계: 주관기업 과제협약 체결(재단/주관기업)→ 3단계: 참여 중소기업 모집·선정(재단/주관기업)→ 4단계: 선정과제 수행(주관기업/참여기업)→ 5단계: 결과보고/정산(재단/참여기업, 재단/주관기관)

구분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지원항목
방송지원	· 해외홈쇼핑 방송 및 소요비용 지원 · 중소기업 1개사 당 최대 2회 지원 · 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중소기업 부담금 있는 경우 7:3 비율로 지원)	· 동영상제작비*, 제품현지화**, 기획전 방송 구성비용 등 * 인서트 동영상, 현지 라이브방송 제작 ** 디자인, 기능 및 성능개선 등
특별 기획전	· 해외 방송시간 PGM 소요비용 지원 · 현지 마케팅 비용 지원 · 1회 지원 시 최대 2,000만원 한도	· 방송시간 비용, 온오프라인 마케팅비용(라이브 커머스, SNS마케팅, 오프라인 매장 입점 등)

· (3. 해외 거점) 주관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업종, 진출지역별 특성을 활용하여 동반진출컨소시엄(대기업+중소기업)의 업종 및 역량에 맞는 제품 현지화, 수출 안정화 등 단계별 해외 판로개척 활동 지원

－ (사전단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능력 및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브랜드/인증, 현지화 R&D지원에 초점

－ (진출단계)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시장개척단, 현지진출 법인설립, 시범사업 등 현지 마케팅 및 수출확대 지원에 초점

－ (사후단계) 동반진출 이후 중소기업의 해외현지 안정화를 위한 기술, 품질, 생산성 향상 컨설팅, 판로지원 등의 지원에 초점

－ (추진절차)

· 1단계: 주관기업 과제 선정(재단/주관기업) → 2단계: 선정과제 협약(재단/주관기업) → 3단계: 중소기업 모집·선정(재단/주관기업) → 4단계: 선정과제 수행(주관기업/참여기업) → 5단계: 결과보고/정산(재단/주관기업)

과제유형	지원내용	신청서류
해외거점과제 (일반)	· 참여기업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간접보조금:민간부담금(6:4)(상생협력기금 7:3) · 임차비 및 장치비, 제품 개발비, 일반수용비(간담회비, 홍보비, 인쇄비, 업무위탁대가(위탁수수료, 인 · 허가비 및 통역비) 등	· 과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프로젝트 연계형 (특별)	· 참여기업 당 최대 1억원 한도 · 대기업 · 중소기업 1:1 매칭 가능 · 지원비율, 지원항목 등은 해외거점과제(일반)과 동일 * 일반과제와 별도 평가 예정	· 과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참여기업 동의서 ※ [필수제출서류] 주관 기업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에 대 한 증빙서류 (MOU, 언론보 도 자료 등)
전략과제 (시범사업)	· 참여기업 당 최대 2억원 한도(참여 기업 다수 구성 가능) · 대기업 · 중소기업 1:1 매칭 가능 · 총 사업비(간접 보조금 + 민간 부담금) 30억원 이상 구성 필요 · 지원항목 등은 해외거점과제(일반)과 동일 * 일반과제와 별도 평가 예정	

■ 신청기간

- (상반기) 2월
- (하반기) 5월

■ 신청방법

- (주관기업) 사업 공고 내 신청서식 작성 후 이메일(gw@win-win.or.kr) 접수
- (중소기업) 동반진출온라인포털(<https://www.globalwinwin.or.kr/>)을 통해 회원가입 및 공고 페이지 검색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주관기업) 아래 표 참고

구분	서식명	비고
공동서류 (필수)	사업신청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날인 필수
	과제 운영계획서	
	청렴 · 윤리 실천서약서	
	법인 · 개인 · 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예산계획 산출근거자료	비교견적서 등
	주관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민원증명 서비스

구분	서식명	비고
유형별 추가서류 (필수)	참여기업 참여 동의서(개별기업별)	해외거점 대형 프로젝트 연계형 (시범사업)전략과제
	MOU서류, 협력기관 이메일 등 수주 증빙자료	
추가서류 (선택)	수행기관 참여 동의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자료	예산계획 상 기금 출연계획, 홍보기사 스크랩 등

· (중소기업) 회사 및 상품소개자료,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명원 등
※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사업 모집 공고 웹페이지 내에서 사업별로 확인 요망

· (중소기업) 회사 및 상품소개자료,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명원 등
※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사업 모집 공고 웹페이지 내에서 사업별로 확인 요망

■ 문의처

- 판로지원부(한류 연계): 02-368-8755
- 판로지원부(해외 흡수핑): 02-368-8754
- 판로지원부(해외 거점): 02-368-8758

60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

■ 사업명

·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

■ 주관부처

· 특허청

■ 운영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사업목적

- 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바우처 지원을 통해 IP 경쟁력 강화 및 스타트업 성장 기반 구축 기여
-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IP 서비스 제공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¹⁾ 또는 도전적인 과제²⁾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³⁾이고,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

1) 공고 내 붙임으로 기재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창업일 이 사업 공고일로부터 7년 미만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20년 재무제표 기준)

※ 신청자격 확인근거

구분	확인 근거
창업일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매출액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상의 매출액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 IP나래 프로그램,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지원 불가

· 본 지원사업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혁신조달기업에 대해 2점의 가점을 부여함★

□ 지원 내용

· (지원방식)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수수료 지불

IP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기관
국내/해외 IP 권리화	특허(PCT 국제/국내단계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헤이그 포함), 상표(마드리드 포함) 출원서비스	특허법인(사무소)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기술조사·분석, 무효자료 조사·분석, 침해자료 조사·분석, 특허맵, IP 컨설팅 (특허동향파악, 핵심특허 도출·분석, 특허전략 수립) 국제분쟁 대응 컨설팅(FTO* 분석 등)	특허법인(사무소), 민간전문업체 및 공공기관
특허기술 가치평가	이전·거래, 금융, 사업화, 소송,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가치평가	발명의 평가기관 (특허청 고시)
기술이전	특허기술 판매·구매(또는 라이선싱) 중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영업비밀보호센터

* FTO(Free to Operate) 분석: 사업화 기술의 자유 실시 여부 혹은 침해 가능성 분석

· (지원 유형)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3가지 유형으로 지원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소형 20%, 중형 30%)을 포함한 금액임

구분	바우처 금액 구성(VAT 포함)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합계 금액
소형 바우처	100만원(20%)	400만원(80%)	500만원(100%)
중형A 바우처	300만원(30%)	700만원(70%)	1,000만원(100%)
중형B 바우처	510만원(30%)	1,190만원(70%)	1,700만원(100%)

□ 신청기간

· 3월

□ 신청방법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및 첨부서류 제출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http://biz.kistare.kr/ipvoucher/>)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 개시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가점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의 붙임 참조

· (신청절차) 기관등록 →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증빙서류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신청서류

· (제출서류)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1) 필수

※ 접수 마감일 기준,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면평가 제외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말소사항 포함)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 ※ 국세청에서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만 인정(회사 자체 발급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문서는 불인정)
- 스타트업 평가자료(6 page 이내)
-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주요 보유 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2) 선택(해당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증빙을 미제출한 경우 우대가점 없음

- (특허청) 'IP-R&D 전략지원 사업' 참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
-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서
- (특허청) '대학 · 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구매 관련 계약서, 바우처 사용계획서
- (특허청)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인증서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산업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 (산업부) '전문기업확인' 확인서*
-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http://www.mcnnet.org>)
- (과기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협약서, 선정통보서

3) 별도체크(해당시)

-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여부 체크
-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산업 해당 여부 체크(중복 체크 가능)

- | | | |
|---------------|------------------------|------------|
| □ 데이터(Data) | □ 네트워크(Network) | □ 인공지능(AI) |
| □ 언택트(Untact) | □ 디지털 인프라(Digital SOC) | |

■ 문의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해외사업팀: 02-3475-1352, 8520, 8586